

관세연구 12-02

무역 원활화를 위한 중국의 FTA 통관규정 연구

2012. 8

세법연구센터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진

연구책임자

정 재 호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김 미 영 관세사

류 태 현 연구원

목 차

I. 서론	7
II. 중국의 통관제도 및 비관세장벽 현황	9
1. 관세 및 통관제도	10
가. 관세제도	10
나. 통관제도	23
2. 비관세장벽	40
가. 수입규제	42
나. 기술무역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47
다. 위생 및 식품위생 조치(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56
라. 통관 관련 규제	61
3. 소결	66
III. 중국의 무역 원활화 논의	69
1. 개정교토협약	70
가. 개정교토협약	70
나. 중국의 검토사항	74
2. 국제무역의 안전과 원활화 표준에 대한 WCO Framework(SAFE Framework)	76
가. 개관	76
나. 표준의 이행	80
3. 무역 원활화에 관한 WTO 협상그룹	82
가. 무역 원활화 논의	82
나. 중국의 제안 내용	87

4. 소결	88
IV. 중국의 FTA 통관규정 비교분석	91
1. 중국의 FTA 현황 및 FTA 통관 규정	92
가. 중국의 FTA 현황	92
나. FTA 통관 규정	97
2. 한국과 중국의 기체결 FTA 통관규정 비교분석	104
가. 양국이 공통으로 체결한 FTA	104
나. 양국이 선진국과 체결한 FTA	138
다. 양국이 최근에 체결한 FTA	148
3. 소결	157
가. 산관학 FTA 공동연구 권고의견	157
나. 시사점	162
V. 결 론	174
참고문헌	179

표 목 차

〈표 II-1〉 중국의 제품별 평균관세율(2011).....	12
〈표 II-2〉 중국의 관세율 조정추이.....	13
〈표 II-3〉 중국의 지역별 협정세율 범위.....	13
〈표 II-4〉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내용.....	23
〈표 II-5〉 무역화물종류별 전기단계 준비사항.....	26
〈표 II-6〉 무역화물종류별 후속단계 조치사항.....	28
〈표 II-7〉 중국의 주요 비관세장벽 유형.....	41
〈표 II-8〉 1차 강제인증품목.....	50
〈표 II-9〉 China RoHs 적용 대상범위.....	55
〈표 II-10〉 EU REACH와 중국의 REACH 비교.....	56
〈표 II-11〉 중국의 위생검역규범과 WTO 규범의 합치성 평가.....	58
〈표 II-12〉 중국 위생검역제도와 WTO 제도의 합치성.....	58
〈표 II-13〉 가격책정 공식 대상품목.....	65
〈표 II-14〉 중국의 잠재적인 WTO 위배사례(비관세장벽 관련).....	67
〈표 III-1〉 개정교토협약의 구조표	72
〈표 III-2〉 SAFE Framework 관세당국 간 협력 표준.....	78
〈표 III-3〉 SAFE Framework 관세당국과 민간 간 협력 표준.....	79
〈표 III-4〉 무역 원활화 협상 주요 내용.....	86
〈표 IV-1〉 중국의 FTA 추진 단계별 현황(2012년 5월 기준).....	93
〈표 IV-2〉 중국의 FTA 체결 현황(2012년 3월 기준).....	96
〈표 IV-3〉 통관규정 비교 대상 FTA.....	97
〈표 IV-4〉 중국의 기체결 FTA 통관규정 유무 비교.....	103

〈표 IV-5〉 칠레 FTA 비교.....	112
〈표 IV-6〉 양국의 싱가포르 FTA 원산지 절차 규정 비교.....	117
〈표 IV-7〉 양국의 ASEAN FTA 원산지 절차 규정 비교.....	125
〈표 IV-8〉 양국의 페루 FTA 원산지 절차 규정 비교.....	133
〈표 IV-9〉 양국의 페루 FTA 통관 및 무역 원활화 규정 비교.....	138
〈표 IV-10〉 양국의 선진국 FTA 원산지 절차 규정 비교.....	144
〈표 IV-11〉 양국의 선진국 FTA 통관 및 무역 원활화 규정 비교.....	148
〈표 IV-12〉 양국의 최근 FTA 원산지 절차 규정 비교.....	153
〈표 IV-13〉 양국의 최근 FTA 통관 및 무역 원활화 규정 비교.....	157
〈표 IV-14〉 한국과 중국의 FTA 원산지증명 절차 비교.....	163
〈표 IV-15〉 한국과 중국의 FTA 원산지 검증 비교.....	165
〈표 IV-16〉 한국과 중국의 FTA 사전심사제도 비교.....	167
〈표 IV-17〉 한국과 중국의 사전심사제도 비교.....	168
〈표 IV-18〉 한국과 중국의 AEO 비교.....	173
〈표 V-1〉 중국의 기체결 FTA 통관규정 비교표.....	177

그림 목차

[그림 II-1] 해관기구 설치 모델.....	25
---------------------------	----

I. 서론

- 2011년 말 기준으로 한·중 교역규모는 약 2,200억달러이고, 약 478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2011년 현재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수입, 교역대상국임
 - 이처럼 우리나라와 중국 간 경제관계가 확대되고 심화됨에 따라 양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

- 한·중 FTA 관련 논의는 2004년 9월 ASEAN+3 경제장관회의에서 양국 연구기관의 민간 공동연구를 시작하기로 합의한 후 협상절차에 따라 추진되어 왔음
 -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2007년 3월~2010년 5월), 정부간 사전협의를(2010년 9월~2011년 7월), 공청회 개최(2012년 2월) 등 협상개시 전 절차를 추진하고 있음

- 한·중 FTA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FTA로 인한 관세철폐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비관세장벽, 원산지 규정, 원산지 절차나 무역 원활화 논의에 대한 관심은 낮은 편이며, 이는 협상의 진행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다양하고 복잡한 비관세장벽은 객관화, 수치화가 가능한 관세장벽보다 더 큰 무역장벽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무역 원활화 논의와 FTA 협상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됨
 - FTA 협정마다 상이한 원산지 규정, 원산지 절차 규정 및 무역 원활화 규정으로 인하여 불확실성, 복잡성, 그리고 차별적 적용 가능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 따라서 본 연구는 한·중 FTA 협상 전략 마련 및 FTA 효과 극대화 등을 위하여 중국의 통관제도와 비관세무역장벽을 검증하고, 중국의 무역 원활화 논의에 대해 살펴봄

고, 우리나라와 중국의 기체결 FTA 협정문을 비교분석하여 한·중 FTA 통관협상의 기본모델 및 항목별 협상전략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제Ⅱ장에서는 중국의 관세제도 및 통관제도를 살펴보고, 비관세장벽을 기술무역장벽, 위생 및 검역조치, 통관관련 비관세장벽 등으로 나누어 검증하였으며,
- 제Ⅲ장에서는 개정교토협약과 중국의 입장 및 중국의 무역 원활화 논의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 제Ⅳ장에서는 중국의 FTA현황 및 FTA 통관규정에 대하여 살펴보고, 한국과 중국의 기체결 FTA 협정문을 양국이 공통으로 체결한 FTA, 양국이 선진국과 체결한 FTA, 양국이 최근에 체결한 FTA로 나누어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II. 중국의 통관제도 및 비관세장벽 현황

- 무역자유화의 진전에 따라 관세장벽은 덜 중요해지는 반면 국가간 경쟁구조의 변화와 건강, 환경 등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라 비관세장벽은 그 중요성이 증대되는 동시에 효과적인 교역 통제수단으로 부각되어 왔음¹⁾
 - GATT/WTO에서도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주요 비관세장벽인 기술무역장벽(TBT) 규정, 위생 및 식품위생 조치(SPS) 규정, 무역관련 투자 조치(TRIMs), 수입허가 관련 협정을 논의해 왔으며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체결하였음

- 중국의 경우 WTO 가입 이후 관세 인하 조치가 지속적으로 추진된 결과, 관세가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크게 줄어든 반면 각종 비관세 조치를 통한 수입규제는 중요한 정책수단임과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어 왔음

- 한·중 FTA 협상에서도 비관세장벽은 관세철폐와 함께 가장 중요하면서도 양국간의 입장 차이가 큰 분야로, 농수산물 협상과 더불어 향후 협상의 진행에 가장 민감한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됨

- 이 장에서는 중국의 일반적인 관세 제도 및 통관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고, 협상의 주요 쟁점인 중국의 비관세장벽의 현황에 대하여 수입규제, 기술무역장벽, 위생 및 식품위생 조치, 통관관련 규제조치 등으로 크게 구분하여 검증하였음

1) 정환우, 『중국의 비관세 수입장벽 현황과 한·중 협력방안』,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10

1. 관세 및 통관제도²⁾

가. 관세제도

1) 관세제도 일반

- 중국의 관세제도를 제정, 심의, 시행하는 정부기구는 국무원 산하의 관세세칙위원회로 재정부, 상무부, 공업정보화부, 국토자원부, 농업부, 해관총서, 세무국, 질검총국, 국가법제판 등의 책임자로 구성됨
 - 관세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구상은 국무원에서 담당하며 구체적인 세율 조정은 관세세칙위원회가 담당함
 - 관세세칙위원회는 매 분기마다 한차례 이상의 회의를 소집하며 관세세칙을 수정해야 할 경우 국내의 생산부문과 사용부문 또는 대외무역부문이 수정안을 제출하면 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한 후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결정됨
 - 생산부문에서는 국산품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세세칙위원회는 검증·심의하여 타당성이 입증되면 이를 국무원에 제출하여 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중국의 관세 관련 주요 법규로는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 「중화인민공화국 관세조례」 등이 있으며, 이를 기초로 기본원칙을 가지고 관세제도를 운영함
 - 국가경제와 국민경제에 꼭 필요하나 국내에서 생산 불가능한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거나 저율의 관세를 적용함
 - 국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품질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기계설비 및 계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각종 부품의 관세율은 완제품보다 낮게 책정함
 - 국내에서 생산, 공급이 가능하고 자국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제품은 관세율을 보다 높게 책정함
 - 원자재의 관세율은 반제품 또는 완제품보다 낮게 책정하고, 수출을 증대하기 위하

2) 한국조세연구원,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연구: 중국』, 2011에서 발췌

여 대부분의 수출상품에 대하여 수출 관세를 면제함

- 수출입화물의 과세가격은 세관이 동 화물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심사 및 확정하며 거래가격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 세관에서 법에 의해 결정함³⁾
 - 거래가격은 실제 지급금액을 원칙으로 WTO관세평가협약에서 정하는 6가지 과세 가격결정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함

- 중국의 관세는 WTO 가입 이전에는 우대관세율과 일반관세율 두 가지뿐이었으나, 가입 이후 최혜국대우 원칙에 따라 2002년 우대관세율을 세분화하여 최혜국세율, 협정세율, 특혜세율, 일반세율 등 네 가지로 나누었음⁴⁾
 - 최혜국세율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이하 “세칙”) 제10조에서 규정한 WTO 회원국 및 지역의 수입화물, 원산지 그리고 중국과 관세 호혜협정을 맺은 국가 및 지역에 적용함
 - 협정세율은 세칙 제10조에 규정한 중국과 특정 국가, 국제기구와의 조약 또는 협정을 맺은 경우에 적용함
 - 특혜세율은 세칙 제10조에서 규정한 중국과 특혜관세협정을 맺은 국가 또는 지역의 수입화물에 적용함
 - 일반세율은 세칙 제10조에서 규정한 상기 우대세율과 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 또는 지역에 적용하고 상기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함

- 중국은 WTO 가입에 따른 회원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세를 인하하여왔으며, 평균 관세율은 2001년 15.3%에서 2005년 9.9%로 인하되었고, 2006년부터 현재까지는 9.8%의 평균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음⁵⁾
 - 1992년부터 중국은 WTO에 가입하기 위해 WTO가 요구하는 수준의 관세인하, 각종 비관세 무역장벽의 해소, 관련 법규의 정비 등을 진행하였음

3) 중국 「해관법」 제55조 및 「수출입관세조례」 제3장

4) 종 염(2010), 『WTO 가입 이후 중국 관세정책의 변화』, pp. 35~36

5) 외교통상부(2010), 『외국의 통상환경(중국)』, pp. 243~246

- 이후 대폭적인 관세인하를 시작하여 몇 차례에 걸친 수입관세 조정을 통해 2001년 WTO 가입 당시 평균관세율을 15.3%로 인하하였음
- 2011년 기준 관세 총수준은 9.8%이며, 그 가운데 농산품 평균세율이 15.2%, 공업품 평균세율이 8.9%임

〈표 II-1〉 중국의 제품별 평균관세율(2011)

(단위: %)

품목	관세율	품목	관세율
화공재료	5.9	자동차	25.0
농산품	15.2	자동차 부품	10.0
공산품	8.9	화장품	12.8
IT제품	0.0	콩기름, 팜유, 유채씨기름	9.0
전자제품	9.0		

자료: 외교통상부

- 중국은 최혜국세율 이외에도 ‘중국-ASEAN FTA’ 조기 정착을 위한 특혜 세율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6,800여 개의 품목에 평균관세율 0.1%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99%의 특혜 적용폭을 유지하고 있음
- 홍콩, 마카오 지역의 품목(각각 1,587개, 1,209개)에 대해 영세율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에 라오스, 에티오피아 등 41개 지역의 일부 품목에 대해 특혜 세율을 실시하고 그 가운데 대부분의 품목은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중국은 수입물품에 대해 별도의 수입부과금은 부과하지 않으나, 수입 시 관세 이외에 17% 또는 13%(일부 농산물 등)의 증치세(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음

〈표 II-2〉 중국의 관세율 조정추이

(단위: %, 개)

연 도	평균관세율	평균인하	조정대상품목
1992	43.2	-	2,898
1993	35.9	16.8	3,371
1996	23	35.9	4,900
1997	17.1	26	4,874
1999	16.7	2.4	-
2000	16.4	1.7	-
2001	15.3	6.6	3,462
2002	12	21.5	5,332
2003	11	8.3	3,000
2004	10.4	5.4	2,414
2005	9.9	4.8	900
2006	9.8	0	143
2007	9.8	0	47
2008	9.8	0	45
2009	9.8	0	16
2010	9.8	0	6
2011	9.8	0	8

자료: 외교통상부

〈표 II-3〉 중국의 지역별 협정세율 범위

(단위: 개, %)

원산지	적용세율	품목수량	평균세율	평균 특혜폭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아태무역협정(APTA)세율	1,767	8.9	23.3
칠레	자유무역협정세율	7,029	1.3	87.7
파키스탄	중국-파키스탄 자유무역협정세율	6,240	5.3	43.0
뉴질랜드	중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세율	7,040	4.0	61.6
싱가포르	중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세율	2,753	0.0	100

자료: 재정부, KOTRA

2) 품목분류제도 및 사전가격심사제도

- 중국은 HS 협약 가입국으로서 HS코드 분류 체계에 의거 8단위 상품분류를 운영하고 있으며, 품목분류의 기본원칙은 수입신고 시 화물상태 기준임
 - 해관에 자료요구 권한이 있어 상업비밀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
 - 품목분류 전, 담보를 제공하면 화물의 사전 반출이 가능
 - 수출입 45일 전 직속해관에 신청하여 사전품목분류가 가능
 - 해관총서는 품목분류의 최종결정과 실효시 대외공포 등의 권한을 가짐

- HS코드 분류에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省급 해관 상품분류중심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분류 가능
 - 성(省)급 해관 상품분류중심에서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의문이 있거나 쟁의가 있어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관총서에 보고하여 해관총서에서 수리 여부를 결정
 - 사전분류신청이 수리되면 신청인에서 '수출입상품 사전분류 결정서'를 교부
 - 분류 결정서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결정서의 유효기간 내에 결정을 내린 해관에 이의신청 가능
 - 결정서는 신청인만이 사용이 가능하고, 유효기간(1년)내에 수출입할 지역해관에 제출해야 하며, 성(省)급 해관 관할구역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

- 세계관세기구(WCO)의 품목분류제도 개정에 따라 중국은 WCO에서 발표한 수정목록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중국해관총서 2012년 〈新 HS체계〉를 시행함
 - 신품목분류제도(HS)의 시행으로 품목분류 전체 소호(HS 6단위)수가 5,052개에서 5,216개로 증가하였음

- 신품목분류제도 중 농산물은 분류가 더욱 세분화되어 2012년 수정된 농산물 품목의 비중은 총 수정품목의 43.6%로 최대 비중을 차지함
 - 1-16류 상품의 HS코드를 대부분 변경하여 특히 민물고기, 식용 조류, 야채, 견과류 등의 HS코드가 더욱 상세하게 분류됨

- 환경관련 품목으로는 주로 오존층 파괴물질 통제를 위해 관련 품목이 삭제, 추가 및 변경되어 환경관련 품목은 총 수정품목에서 2.7%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마약류 제조 원료 등에 대한 통제 목적으로 관련 물질 품목분류를 세분화하였음

- 중국 특산물로는 백합화, 보이차, 공항용 탑승 브릿지 등이 신규품목으로 추가됨

- 사전가격심사란 수입신고 전에 기업의 신청에 의해 수입지 세관에서 수입물품의 가격심사를 하여 과세가격을 확정하는 제도를 말함
 - 기업분류기준 A급 이상기업으로서 수입물품 시장가격 변동이 큰 물품, 수입물품 가격자료가 부족한 물품 등 수입당시 가격 확정이 어려운 물품에 대하여 적용됨
 - 수입신고 10일 전에 서면으로 수입물품 통관 세관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세관이 신청 후 10일 이내에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사전가격심사 결정서를 발급함

3) 감면세 제도⁶⁾

- 감면제도는 세관법, 수출입관세조례 및 2009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출입화물 감면세 관리방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 중국의 관세감면제도는 「세관법」 제56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의해 법정감면, 특정 감면, 임시감면, 일시 수출입화물 및 보세화물에 대한 일시적인 관세납부 면제로 나누어짐⁷⁾
 - 법정감면이란 다음의 물품에 대해 감면세 혜택을 직접 부여하여 별도의 감면세 신청 및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않는 무조건 감면을 말함
 - － 수출입 건당 징수세액이 인민폐 50위안 이하인 물품, 상업가치가 없는 광고용품과 견본품, 국제기구의 무상기증물자, 통관 전에 손상 또는 손실된 물품, 선용품, 기용품, 차량용품, 일시반출입물품,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등

6) 중국세관 감면세 방안 발표 자료, 2009. 1.

7) 김원석, 『중국의 관세감면제도에 관한 연구』, 2009

- 특정감면이란 특정지역, 특정기업 또는 특정용도의 다음 물품에 대해 감면세 혜택을 직접 부여하여 별도의 감면세 신청에 대해 세관의 심사 및 사후관리가 요구되는 조건부 감면을 말함
 - 과학교육용품, 장애인용품, 가공무역물자, 보세구물자, 투자용 수입설비 등
 - 임시감면이란 국무원이 특수 상황과 수요에 근거하여 임시적, 개별적으로 부여하는 감면을 말함
- 수출입품목의 감면세 신청인은 반드시 소재지 세관에 감면세 등록, 심사비준 수속을 신청해야 함
 - 세관은 기업의 감면세 신청을 받은 후 사전에 신청인 자격이나 해당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심사비준에 앞서 우선 감면세 관련 등록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세관은 반드시 신청접수일로부터 10일(근무일 기준)내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함
 - 신청인은 반드시 품목수출입 신고 전에 주관 세관에 해당 품목의 감면세 심사비준 수속을 신청해야 함
 - 감면세 등록이 필요한 건에 있어서 업체 신청 후 반드시 서류심사와 동시에 등록 여부도 확인해야 함
 - 세관은 감면세 심사비준 신청을 접수한 일자부터 10일(근무일 기준) 내에 반드시 감면세 심사비준 결정을 해야 함
 - 신청인은 수출입통관 신청 전 주관세관에 감면세 대상품목의 세금액 담보로 우선 통관을 신청할 수 있음
 - 아래의 세 가지 경우에 한정함
 - 주관세관이 감면세 등록 또는 심사비준건을 이미 접수했으나 미완료상태인 경우
 - 관련 수출입 세수혜택정책이 이미 국무원 비준을 받았으나 구체 실시조치가 명확하지 않고 해당 신청인은 세관총서로부터 혜택정책 향유가능범위에 포함됐

음을 확인받은 경우

- 기타 세관총서의 허가를 받은 경우
- 주관세관은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근무일 기준)내 담보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수출입지역 세관은 주관세관에서 발급한 ‘감면세화물 세금액담보 허가증명서’를 근거로 품목의 세금액 담보 및 통관수속을 처리하도록 요구함
- 절차:
 - 주관세관 : 신청 → 서류심사 → 접수 → ‘중국세관의 감면세화물 세금액담보 허가증명서’ 발급
 - 통관지 세관 : 담보수속 및 통관수속

- 신청인은 감면세 세관의 허가 없이 세관감독 기한 내 감면세 수입대상 품목의 양도, 담보, 저당, 이전사용(移作他用) 기타 처리가 불가함
- 감면세 수입대상 품목의 세관감독 관리기한은 품목별로 상이하며 선박과 항공기는 8년, 자동차는 6년, 기타 품목은 5년 등임
 - 세관감독 관리기한 내 감면세 신청인은 반드시 수입통관일부로 매년 1분기에 주 관세관에 ‘감면세품목 사용상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감면세 세관의 허가없이 세관감독 기한 내 감면세 수입대상 품목의 양도, 담보, 저당, 이전사용(移作他用) 기타 처리가 불가함

4) 수출입 담보제도

- 수출입 담보란 수출입활동에 종사하는 개인, 법인, 조직이 특수 수출입무역 혹은 해 관 사무 등의 실행을 위해 해관에 현금, 담보서 등을 제공함으로써 관련행위의 합법 성 혹은 일정기간 내 약정의무의 이행을 보장하는 것을 말함⁸⁾
 - 신고인은 규정기간 내에 해관수속 보완 등 약정의무를 이행해야 함
 - 신고인이 담보관련 약정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해관법규에 따라 처리하는 동시

8) KOTRA(2010), 국가정보(중국)

에 일정한 법률적 책임을 추궁함

- 화물의 종류 및 가격의 확정, 각종 증빙서류의 제출 및 기타 해관수속 종료 전에 화물을 통관하는 경우 등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함
 - 화물의 종류 및 가격이 불명확하여 통관수속이 지체된 상황에서 신고인이 화물의 통과(放行: 통과나 통행을 해관에서 허락)를 신청한 경우
 - 통관 수속 시 관련 증빙서류(송장, 계약서, P/L 등)를 제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입화물의 지급 반입 혹은 수출화물의 지급 반출이 필요한 경우
 - 화물의 감면세 수속 신고과정에서 화물이 이미 개항지에 도착하여 지급 반입 혹은 지급 선적이 필요한 경우
 - 화물의 신고인이 관세의 추후납부를 신고한 경우
 - 임시 수출입화물(ATA 까르네 제도⁹⁾ 관련화물 포함
 - 통과(放行)하지 못한 화물을 임시로 해관감독 외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 가공무역방식의 보세수입화물
 - 위법혐의가 있는 수출입화물(혹은 물품)의 통과(放行)

- 단, 국가 법률, 법규의 별도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수출입관리 법률, 법규가 담보 관련 별도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관의 담보제도를 적용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납세의무 수출입화물을 규정기간 내 이전 혹은 은폐하는 경우
 - 지적재산권 침해혐의의 수출입화물의 압류 혹은 통과
 - 수입화물의 덤핑(혹은 보조금)이 임시 관정으로 외경무부가 동종 제품의 수입 관련 담보제공을 요구한 경우
 - 위법혐의가 있으나 몰수하지 않은 수출입화물

9) 일시수입통관증서. 불어의 Admission Temporaire와 영어의 Temporary Admission의 두 문자를 합친 것으로, 1961년 관세협력이사회가 물품의 일시수입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에 따라 발급한 국제적 통관증서로서 전시회, 박람회 등에 전시 또는 사용되는 일시반입물품, 촬영기, 사진기 등의 작업용구, 상품견본, 예술품 등의 일시 수입이나 보세운송에 있어 관세의 면제와 통관절차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무역용어사전)

- 중국 내 영구거주지가 없는 해관의 행정처벌 대상자가 처벌에 불복하거나 출국 전 벌금 혹은 위법소득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 담보인의 담보책임은 주로 피담보인이 규정기한 내에 모든 해관수속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며, 상황에 따라 담보책임 범위에 담보뿐 아니라 이자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담보기한은 통일기준이 없으며 담보범위별 해관규정에 따라 별도 제정하고, 규정 기간 내에 담보책임을 이행하면 피담보인의 해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담보인의 담보책임은 종료됨
 - 피담보인이 규정기한 내에 증빙서류의 보완 및 관세 혹은 벌금을 추가납부한 경우 담보책임은 해제되며 해관은 안건 철폐 및 보증금을 반환함

- 수출입 담보 방식에는 인민폐 및 자유태환화폐, 어음, 수표, 채권 및 예금증서, 은행 혹은 비은행금융기구가 제시한 보증서, 기타 해관의 인가를 취득한 재산 혹은 권리가 있음
 - 보증금은 현금 방식의 담보이며 담보액은 관세 및 기타 비용의 합계와 같으며 보증금 방식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음
 - 감면세 수속 과정의 수입화물의 통과(放行)
 - 담보방식의 미확정 상태에서 신용도가 낮은 통관업체 혹은 민감성 제품인 경우
 - 담보인이 보증금 담보를 자원 신청한 경우
 - 보증금 방식 외의 모든 경우는 보증서 방식이 적용되나, 그 보증인 자격이 규정요구에 부합되어야 함

- 해관의 담보 신청조건에 부합되는 화물은 담보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관은 상황에 따라 담보방식을 확정함
 - 보증금 방식의 경우 담보인은 관세액 및 기타 비용의 해당액을 납부한 후 ‘해관보증금 영수증’을 수령함
 - 보증서 방식의 경우 해관의 규정 양식에 따라 2부의 보증서를 작성하며, 해관과

담보인이 각각 1부씩 보관함

- 일반 수출입 화물의 담보기한은 통상 20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특수상황 발생시 담보기한 내 해관에 연기신청을 하여 비준을 받아야함
 - 임시 수출입 화물은 통상 화물의 수입일부터 6개월임

5) 수출품 증치세 환급제도

- 증치세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같은 개념으로 생산, 유통과정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수입단계의 부가가치세는 화물·물품이 수입될 시에 해관에서 징수하는 일종의 가치증가분에 대한 세금임
 - 수입단계에서의 부가가치세 조성이격은 관세과세가격에 관세액을 더한 가격으로 하며, 소비세 납부 대상 품목인 경우에는 여기에 추가로 소비세액을 더한 가격으로 함
 - 증치세 기본세율은 17%이며, 이는 납세의무자가 판매 또는 수입하는 저세율 적용 품목 이외의 화물 및 가공, 수리조립노무 등이 포함됨
 - 저세율(13%) 적용 품목은 다음과 같음
 - 양식, 식용식물유
 - 상수도, 증기, 냉기, 열기, 석탄가스, 석유액화가스, 천연가스, 메탄가스, 주민용 메탄제품
 - 도서, 신문, 잡지
 - 사료, 화학비료, 농약, 농기계, 농업용 비닐
 - 국무원에서 규정한 기타 화물
- 수출품 증치세 환급제도란, 수출입 경영권을 가진 기업에 대하여 수출판매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을 통해 증치세를 면세하고, 그 수출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매입한 원재료 부품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공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의 환급률에 의해 매입세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임¹⁰⁾

-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기업이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증치세를 면세하고, 매입세액을 환급함
 - 수출입경영권을 가진 내자제조기업의 직접 수출 또는 외국무역기업에 위탁하여 대리 수출하는 재화
 - 수출입경영권을 가진 외국무역기업이 직접 매입하여 직접 수출하거나 기타의 외국무역기업에 위탁하여 수출하는 재화
 - 제조기업이 외국무역기업에 위탁하여 대리 수출하는 자산(自産) 재화
 - 기타 특정기업(수출입경영권을 가진 기업에 한정되지 않은)이 수출하는 재화

- 환급대상기업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제조기업이 원부재료를 직접 구매하여 당해 기업이 직접 가공 생산하거나 위탁 가공한 제품이어야 하고, 증치세 또는 소비세의 과세대상에 속하는 재화이어야 함
 - 이러한 수출제품은 반드시 통관절차를 거쳐 중국경내를 떠나야 하며 회계장부에 수출로 계산하여 야 함

- 제조기업에 속하는 소규모 납세자, 연간 매출액이 180만위안에 미달하는 도소매 사업자, 연간 매출이 30만위안 이상 100만위안 이하이고 기장을 하는 제조업자, 과세용역사업자 및 제조 또는 과세용역을 주업으로 도소매사업을 겸업으로 하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사용할 수 없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 직접 수출하거나 외국무역기업에 위탁하여 대리 수출하는 재화, 외국무역기업이 소규모 납세자로부터 또는 일반계산서에 의하여 매입하여 수출하는 재화, 외국무역기업이 직접 매입하여 수출하는 국가규정 면세품에 대해서는 수출에 대해 면세하지만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환급하지 않음

- 중국은 수출을 조절하는 정책수단으로서 관세 이외에도 수출에 대한 환급제도를 이용하고 있음

10) 박경매, 「중국의 수출입관세정책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0

- 수출환급제도는 수출품에 대해 매입단계의 각종 세금을 환급해주는 제도로서 1985년에 도입되었으며, 1994년 증치세 도입 이후 수출에 대한 매입 단계의 증치세 환급제도로 변경되었음
- 중국의 증치세는 수출 재화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환급률이라는 독특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음¹¹⁾
 - 매입세액을 완전히 공제하여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완전히 면세해줌으로써 소비자국 과세원칙이라는 국경세를 시행함
 - 이후, 수출장려 목적으로 도입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재화의 증치세 환급률을 국내외의 환경변화와 경제정책의 방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면서 운영해 왔음
- 중국의 수출에 대한 증치세 환급은 수출 보조와 동일한 효과를 가짐으로써 중국의 수출을 확대시켜 왔음
 - 수출이 급격히 확대되는 경우에는 환급률을 낮추고, 수출이 부진할 경우에는 환급률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수출과 수입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함
- 2006년부터 2008년 초까지 무역흑자 과잉문제를 해결하고, 수출 지향 경제성장에서 질적성장 방식으로 중국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수출 제품에 대한 환급률을 인하하거나 취소 조치를 취함¹²⁾
 - 노동집약형 산업품목에 대한 가공무역 제한조치로 인하여 가공무역 제한류에 포함되면 원자재 수입 시 관세와 증치세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하고, 수출 확인 후 반환신청을 하게 되므로 관련기업들에는 자금압박으로 작용함
- 이후,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경기침체와 수출부진이 심각하게 나타나자 중국 정부는 자국의 수출산업 부양을 위해 2008년 8월 이래 7번이나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인상하였음

11) 박경매(2010)

12) 외교통상부(2010), 『외국의 통상환경(중국)』

〈표 II-4〉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내용

시행일	환급율 인상내용
2008. 08. 01	방직품, 의류 품목 등 11%→13%로 인상
2008. 11. 01	방직품, 완구, 가구 등 3,486개 품목 9~13%→11~14%로 인상
2008. 12. 01	노동집약형 제품 3,770개 품목 5~13%→9~14%로 인상
2009. 01. 01	기계전자제품 553개 품목 11~14%→13~17%로 인상
2009. 02. 01	방직품 및 의류 품목 14%→15%로 인상
2009. 04. 01	경공업, 강철 및 IT제품 등 3,802개 품목 5%~17%로 인상
2009. 06. 01	노동집약형, 기계전자 등 2,600개 품목 5%~17%로 인상

자료: 외교통상부 (2010)

- 2009년 하반기부터 수출이 증가하고 경제가 안정화되면서 과세당국은 2010년 7월 15일자로 일부 고에너지 사용 및 고오염물질 배출 제품 등 406개 품목에 대해 수출환급세를 취소하였음
 - 이는 2008년 하반기부터 7차례 수출환급률을 상향조정한 이래 역으로 수출환급세를 취소하는 첫 조치로 향후 중국의 세수정책개혁이 자원절약, 에너지절약,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환경보호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강화해나갈 것임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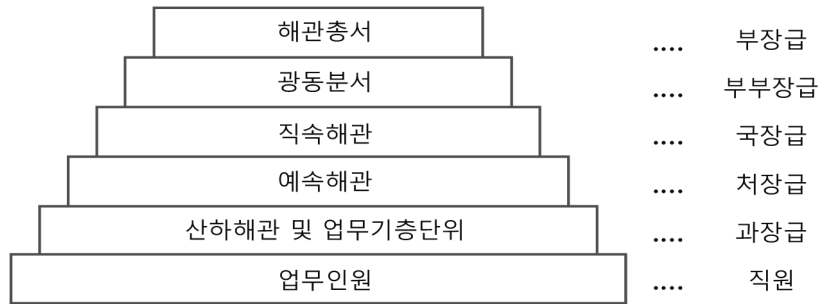
나. 통관제도

1) 통관행정조직

- 중국 해관은 전국 267개 공항만 및 내륙철로 개항지를 관리하며, 15개의 보세구, 8개의 보세물류원구, 12개의 보세항구, 59개의 수출가공구, 4개의 종합보세구 등 총 98개의 감시구역을 운영함
- 중국의 통관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은 중국해관총서(General Administration of China Customs)이며, 1980년 2월 대외경제무역부에서 분리 독립하여 국무원 직속의 장관급(部級)기관이 됨

- 해관기구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해관총서 및 직속해관과 예속해관 등 3단계로 하며, 예속해관은 직속해관의 지휘를 받으며, 직속해관은 해관총서의 지휘를 받음
- 해관총서는 국무원의 직속기구로 국무원의 지휘 아래 전국의 해관기구, 인원편제, 경비물자와 각종 해관업무를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해관시스템의 최고 지휘부문이며, 밑으로 광주분서(廣州分署)를 두어 광동성 내의 해관 관리를 보좌하게 함
- 중국 해관총서의 주요기능은 국경을 출입하는 운송수단, 화물, 여행자휴대품, 우편물품과 기타 물품을 관리감독, 관세 및 기타 세금의 징수, 밀수단속, 해관통계의 작성 및 기타 해관업무를 처리 등임
- 해관총서는 총서장 1명과 6명의 부서장을 두고 각각 2~3개의 사(司, Department) 또는 국(局, Bureau)을 총괄하며, 정원 251명(총서장 1명, 부서장 6명)에 1청(廳) 1국(局) 12사(司) 3실(室)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해관총서의 지방조직은 1분서, 46개 직속해관, 580여개 예속해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0,000여명(밀수범죄검증국 직원 10,000명 포함)의 인원이 포함됨
 - 중국해관총서 계급제도는 5등급 13급으로 분류하며, 1등급(해관총감, 해관부총감), 2등급(관무감독1급~3급), 3등급(관무독찰1급~3급), 4등급(관무독판1급~3급), 5등급(관무원1급~2급)으로 구분됨

[그림 II-1] 해관기구 설치 모델



자료: 관세무역연구회(2011)

- 직속해관은 해관총서의 직접 지휘를 받으며 일정구역범위 내의 해관업무를 책임·관리함
 - 직속해관은 관내 해관 각종 업무 및 관내 중점 심사업무, 해관의 각종 정책, 법률·법규, 관리 제도를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함
 - 현재 직속해관은 모두 41개로 홍콩, 마카오, 대만을 제외하고 전국의 31개 성, 직할시, 자치구에 분포되어 있음
 - 직속해관은 관할구역 내의 해관사무를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해관총서에 책임을 지게 됨

- 예속해관은 직속해관의 지휘를 받으며, 구체적인 해관업무를 처리하는 해관으로서 해관 수출입감관 직능의 기본 집행단위이며, 일반적으로 모두 공항만 및 해관 업무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설치되어 있음
 - 예속해관은 전국에 580여 개로 해관업무 상황에 따라 약간의 과(科), 실(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인원은 적게는 십 여명에서 많게는 200~300명 정도 되는 곳도 있음

2) 통관절차 및 절차별 특징

- 일반적으로 화물의 수출입은 수출입신고, 검사협조, 세비(관세 및 검사비용 등)납부, 화물 수령 또는 운송 등의 수속을 거쳐야 하나, 이러한 절차만으로는 해관의 모든 수

출입화물에 대한 실질적인 감관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음

- 가공무역의 원재료 수입의 경우, 해관은 신고와 서류심사단계에서 위에서 언급한 통관수속 외에 사전 준비(備案)를 요구하고 있음
- 또한 상술한 수입원재료로 완성품을 가공한 후 수출하게 된다면 반드시 정산종결(核銷結案)한 후에야만 가능함

- 위의 내용을 고려하여 해관이 수출입화물에 대하여 감관을 실시하는 전 과정을 살펴볼 때, 통관절차는 시간의 전후에 따라 전기단계와 수출입단계 그리고 후속(사후)단계 등 3단계로 나눌 수 있음
- 전기단계란 수출입화물의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해관의 수출입화물에 대한 감관요구에 따라 화물이 수출입하기 전에 해관에 준비수속을 하는 과정을 말함

〈표 II-5〉 무역화물종류별 전기단계 준비사항

무역화물종류	준비사항
보세가공화물	가공무역전자장부와 전자화수책 개설 또는 가공무역 종이수책 신청 및 수령
특정감면세화물	화물의 감면세 준비와 심사비준 수속, 감면세 증명 신청
임시수출입화물	화물 임시 수출입 준비신청 수속
기타수출입화물	출료가공 ¹⁾ 화물의 경우, 출료가공 준비수속

주: 1) 출료가공(出料加工): 원료를 국외에 수출하여 국외에서 가공한 후 중국에 수입하는 형태
 자료: 관세무역연구회(2011)에서 요약·재구성

- 수출입 단계에서의 통관은 일반적으로 ‘신고 → 화물검사 → 관세징수 → 통관·반출입’ 등의 4단계를 거치게 됨
- 가공무역방식의 수출입화물 및 관세의 감면 혹은 추후 납부대상 수출입화물 및 화물인출 후 일정기간 내 해관의 감독이 필요한 수출입 화물은 신고 → 화물검사 → 관세징수 → 통관·반출입 → 통관종료 등 5단계를 거치게 됨

- 신고는 수출입화물 통관절차의 첫 단계로, 현재 중국해관이 실시하는 통관신고방식은 구두신고, 서면신고, EDI 등 3가지로 구성됨
 - 해관에 등록된 통관전문회사, 통관대행회사, 자체적으로 통관업무를 수속하는 회사의 통관인원만이 통관신고를 할 수 있음
 - 수입물품에 관해서는 운송수단의 입항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신고기한 초과시 신고연체료(도착가격의 5/1,000)가 부과됨
 - 수출물품은 보세구역 등에 도착 후 적재 전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3개월까지 해관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임의로 매각함

- 검사는 통관신고업체의 신고접수 후 수출입화물의 성질, 원산지, 화물의 상태, 수량, 금액 등의 신고내역과의 일치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 진행하는 해관절차를 말함¹³⁾
 - 수출입화물의 실제상황과 통관신고서 등 서류신고내역의 일치성에 대한 검사확인을 통해 서류심사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누락, 허위, 사기 등 밀수, 위법행위 및 기타문제를 실질적으로 확인함
 - 화물검사를 통해 서류심사과정에서 제출된 의문사항을 재확인하여 세금징수, 통계 및 사후관리를 위한 감독근거를 제공함
 - 수입화물의 HS 코드, 적용세율, 도착항 인도가격 등은 검사결과를 통해 최종결정함

- 해관법 및 수출입관세조례에 근거하여 국가의 별도 규정 외에 모든 수출입화물은 관세징수대상이며 관세율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을 기준으로 함
 - 이 밖에도 수입과정에서 증치세를 징수하며 일부 상품은 소비세가 부과됨

- 통관은 수입지 해관의 현장감독 업무의 마지막 단계로 해관담당자는 서류신고, 화물검사, 관세징수 등의 통관절차를 재확인한 후, 확인 인장을 찍고 수출입화물을 반출시키며 일반 수출입화물의 경우 이로써 모든 절차가 종료됨
 - 보세가공무역방식의 수입화물 및 관세의 감면 혹은 추후납부 수입화물, 임시수출입화물, 중계운송화물 및 기타 미납세 수입화물의 경우 개항지 해관은 신고서류의

13) KOTRA(2002), 『최신 중국 통관제도 해설』

심사확인 후 화물을 통과시키며 수출입화물은 후속관리로 전환

- 후속단계란 수출입화물의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해관의 수출입화물에 대한 감관요구에 따라 화물을 수출입할 때, 장치, 가공, 조립, 사용, 유지보수 후에 규정된 기한 내에 규정된 요구에 따라 해관에 상술한 수출입화물의 정산(核销), 종결(销案), 감관의 해제 등을 신청하는 과정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 단계의 업무를 포함함

〈표 II-6〉 무역화물종류별 후속단계 조치사항

무역화물종류	조치사항
보세가공화물	규정된 기한 내에 정산 신청
특정감면세화물	해관감관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해관감관기간 내에 해관의 비준을 받아 판매, 양도, 반송, 폐기한 경우에는 해관에 감관해제 신청
임시수출입화물	임시수입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만기 전 재수출하거나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종결 신청
기타수출입화물	출료가공화물과 수리화물, 일부 임대화물 등은 규정된 기한 내에 종결처리

자료: 관세무역연구회(2011)에서 요약·재구성

- 중국 해관규정에 근거, 통관자격대상은 해관에 등록된 전문(대행)통관업체 혹은 수출입 경영자격이 있는 기업이며, 해관은 통관신고 수리 시 우선 통관업체 및 통관원의 신고자격을 확인함
 - 해관규정에 따른 통관업체 및 통관원의 조건은 수출입화물의 송수하인은 수출입 경영자격이 있는 기업으로 제한하고, 자체적으로 통관업무를 수속하는 회사는 해관에 등록하여야 함
 - (대행)통관업체는 해관에 등록된 기업이며 위탁인은 수출입 경영자격이 있어야 하고, 통관인원은 해관의 연수 및 승인을 거친 통관업체의 지정 담당자이어야 함
- 통관기한은 수출입화물의 개항지 도착 후 송수하인 혹은 그 대리인이 해관통관에 필요한 기간을 말하고, 수입화물의 통관기한은 운송수단의 입항신고일부터 14일 이내

이며, 중계운송은 운송수단의 입항신고일 혹은 지정도착지에 운송된 후 14일 이내임

- 수입화물의 수하인 혹은 그 대리인이 규정 신고기한을 초과하면 일정액의 체납금을 납부해야 함
 - 해운, 항공운수, 도로운송 방식의 수입화물의 체납금 징수기간은 운송수단의 입항 신고일부터 15일이 되는 시점에서 수입통관의 종료일까지임
 - 중계운송화물은 운송수단의 입항신고일 혹은 화물의 지정도착지 도착일부터 15일이 되는 시점에서 수입통관의 종료일까지임
 - 체납금은 통관신고일도 포함하여 일단위로 계산하고, 체납금의 징수액은 1일당 수입화물 도착항인도가격(CIF)의 0.5%이며 최저액은 10위엔임

- 중국은 통관 개혁 조치¹⁴⁾로 2011년 개정된 기업분류관리방법에 따라 차등통관을 실시하며, 성실기업에 검사면제 등의 통관편의를 제공하고 불성실기업의 화물에 대해서 집중관리함¹⁵⁾
 - 법을 지키면 편리하게, 법을 위반하면 엄하게 징계한다는 기업관리원칙하에 ‘서류와 인력위주의 심사’에서 ‘전자자동화와 중점심사’로 변모함
 - 성실기업에 대하여 1분 통관을 실현하여 개혁 전 통관소요시간보다 수입시 43%, 수출시 16% 소요시간이 절감됨

- 해관최적화통관 감관제도를 실시하여 사전신고, 집중신고, 예약통관 등이 가능하게 함
 - 사전신고제도를 통해 세관의 사전승인하에 도착 전 3일 내에 통관 및 서류제출 가능함
 - 집중신고제도란 세관의 사전승인하에 송수하인이 동일한 항만에서 신속한 통관이 요구되고, 부패하기 쉬운 화물 또는 반복적으로 수출입되는 보세화물에 대하여 화물목록신고 후 1개월 이내에 월단위로 일괄적으로 일반 수출입통관절차를 거치

14) 중국 『법제일보』, 2011. 11. 28.

15) 수출부문에서 30개 지방관세청의 전체차등, 10개 지방관세청의 일부차등, 수입부문에서 4개 지방관세청의 전체차등, 22개 지방관세청의 일부차등통관 실시

게 하는 제도임

- 성실기업에 대해 수입지 세관외 기업의 소재지 세관에서 신고 및 납부하고 수입지 세관에서 화물반출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보세운송 관리절차 배제가 가능하게 함
- 세관 업무시간 외 및 공휴일에도 사전예약을 통해 통관수속이 가능하게 함

3) 보세심사 및 가공무역제도

가) 보세심사제도

- 보세화물이란 일반 수출입화물과는 달리 해관의 감관하에서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외국으로 재수출되는 화물을 말함¹⁶⁾
 - 「중화인민공화국해관법」에서는 보세화물에 대하여 “해관비준을 받고 납세 수속을 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하여 국내에서 장치·가공·조립후 재수출하는 화물”이라고 정의함
 - 보세화물이 세금납부 없이 국내에 반입되었다는 것은 납부가 일시 면제되었다는 뜻이지 면세를 해준다는 것은 아니며, 화물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기다렸다가 해관이 과세와 면세 여부를 결정하게 됨
 - 재수출은 보세화물을 이루는 중요한 전제가 되며, 보세화물은 일반화물과 같이 수입하고 납세수속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원상태 또는 가공 후에 제품을 재수출하여야 함
- 보세화물과 기타 목적을 위해 일시 수입되는 화물(예: 공사시공, 과학실험, 문화체육 활동 등)과는 차이가 있음
- 중국은 대외개방 확대 및 해외자금, 기술의 유치를 위해 일련의 수입우대정책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그 중 보세화물과 감면세 대상화물은 수입 시 관세를 납부하

16) 중국관세무역연구회(2011), 중국관세무역신보, 제2011-1호

지 않기 때문에 혼동하기 쉬우나 다른 목적과 특성을 가지고 있음¹⁷⁾

- 보세화물은 중국내 사용 및 소비자가 최종목적이 아닌 재수출을 장려하는 목적으로 실시하는 보세우대정책임
- 감면세 화물은 중국정부가 특정 지역, 기업, 용도의 수입화물에 대해 중국내 사용 및 소비를 장려하는 목적으로 부여한 세수우대정책임
 -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입설비, 기업의 기술개조를 위한 선진기술장비의 수입 등이 감면세 대상에 해당됨
- 감면세 화물의 범위는 주로 고정자산투자부분으로 기계장비, 계측기기 등이며 보세화물은 주로 유동자산부분으로 원자재, 부품, 조립품 등이 해당됨

□ 보세화물의 통관절차는 ‘계약등록 → 화물수입 → 장치 또는 가공 → 재수출 → 계약말소 종결’의 순서대로 진행됨¹⁸⁾

- 계약등록은 보세화물 경영회사가 허가서·계약서·기타 관련 증빙서류를 가지고 관할해관에서 계약등록을 신청하는 절차로 해관심사가 끝나고 등록을 마치면 등기수첩을 발급받게 됨
- 해관에 기(既) 등록된 계약상의 보세화물이 실제로 반입되었을 경우, 경영회사 또는 그 대리인이 해관이 발급한 ‘등기수첩’과 기타 증빙자료를 가지고 입항지 해관에 가서 신고하고 수입절차를 진행함
- 보세화물이 국내에 반입되면 해관에서 지정한 장소에 장치하거나 또는 해관에서 허가한 가공생산기업에 교부하여 제도가공을 진행함
 - 장치기간 만료 또는 제품 가공 후 재수출하였을 경우에는 경영회사 또는 그 대리인은 동 보세화물 ‘등기수첩’과 기타 증빙서류를 가지고 출항지해관에 가서 신고하고 수출절차를 진행함
- 계약등록 만료 또는 가공제품 수출 후에는 일정기한 내에 경영회사가 가공무역 등기수첩과 수출입화물신고서 그리고 관련 자료를 가지고 계약등록해관에 가서 등록말소 수속을 해야 함

17) KOTRA(2002)

18) 중국관세무역연구회(2011), 제2011-1호

- 해관은 보세화물의 수입과 장치·가공·사용과 수출사항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면세 여부를 결정한 후 동 등록계약을 말소종결 처리함
- 이는 보세화물 전체 통관절차의 마무리로서 해관과 경영회사 간의 감독관리 법률관계가 최종적으로 해제됨을 의미함

- 보세심사는 해관이 보세기업의 경영행위를 검사·관리 및 감독하는 것으로 보세가공, 보세물류 화물검사 및 장부대조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함¹⁹⁾
 - 대상기업은 장부 등에 재무상황 및 관련 보세화물 반출입, 사용 등을 기록하고 합법, 유효한 증명서에 의거하여 당해 장부를 정산할 의무가 있음
 - 보세심사시기는 가공기업은 보세가공수책 정산 완료시점까지이며, 물류기업은 보세화물 감시장소 반출시점까지임
 - 심사대상은 보세수입원재료, 수출완제품, 내수판매물품 등의 처리현황 및 보세물류화물 등의 반출입, 판매, 양도 등의 처분현황을 포함함
 - 심사완료 후 15근무일 내에 결과가 보고되고, 이 내용이 대상기업에 통보되며, 이에따른 시정조치를 시행함

나) 가공무역제도²⁰⁾

- 가공무역이란 내료가공과 진료가공을 포함하여 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전부 또는 일부의 원재료 및 보조재료, 부속품, 소재와 부품, 포장물품 등을 국내기업이 가공 또는 조립한 후 완제품을 재수출하는 경영활동을 말함
 - 내료가공(來料加工)은 국외에 있는 외국기업이 원료를 제공하고 경영기업은 수입대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이 외국기업의 요구에 따라 가공 또는 조립한 후 가공비만 받고 완제품은 외국기업이 판매하는 경우를 말함
 - 진료가공(進料加工)은 경영기업이 수입대금을 지불하고 원료를 수입하여 완제품을 제조한 후에 다시 이를 수출하는 경영활동을 말함

19) 삼성전자(2009), 『중국 관세제도』

20) 중국관세무역연구회(2011), 2011-3호, 2011-16호

- 중국은 가공무역을 수출을 확대하고 외화를 획득하는 주요수단으로 삼아 왔으며, 이를 촉진하기 위해 가공무역 수입원재료에 대하여 보세정책을 실시함
 - 극소수의 민감한 상품을 제외하고는 쿼터제한을 실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쿼터하가증 관리도 실시하지 않음
 - 국가에서 면세불허를 규정한 소수 상품을 제외하고는 외상(外商)투자기업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가공무역 수입설비에 대해서는 관세와 수입단계의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면제함
 - 중국정부는 가공무역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가공무역 상품에 대한 분류관리(금지류, 제한류, 허가류)를 실시하고, 가공무역 기업에 대한 분류관리(A, B, C, D류)를 실시함²¹⁾

- 경영회사가 가공무역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의 심사비준을 받아야 하고, 국가에서 가공무역 실시를 금지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상품종류별로 분급관리와 분급심사를 실행함
 - 수입원자재가 국가에서 가공무역 수입에 대해 총량평형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상품인 경우에는 대외경제무역국을 경유하여 성(省)대외경제무역청의 심사비준을 받아야 함
 - 이에 해당하는 물품은 면화, 설탕, 식용유, 양모, 천연아교, 원유, 제풍유 등임
 - 기타 상품에 대해서는 성(省) 직속기업은 성(省) 대외경제무역청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시와 현성(縣)의 각 기업은 등록지 대외경제무역국의 심사비준을 받아야 함

- 가공무역물품은 금지물품, 제한물품 및 비제한물품의 3종으로 구분하여 차등 관리함
 - 금지물품은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에 규정한 수입을 금지하는 물품 및 해관이 감독·관리할 수 없는 품목임
 -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입을 금지하는 물품(헌옷, 음란서적, 유해물질 및 방사선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산업폐기물)
 - 분해·수선용 중고자동차, 오토바이 및 주요 부품

21) 중국관세무역연구회(2011), 2011-3호

- 재배·양식 등 수출상품에 사용되는 종자, 종묘, 화학비료, 사료, 첨가제 및 항생제 등
 - 제한물품은 수입 물품의 가격변화가 크고 해관이 감독·관리하기 쉽지 않은 민감한 품목임
 - 주요물품으로는 플라스틱 원료, 폴리에스테르 절편, 화섬원료, 면사, 면화, 당류, 식물성 유지, 천연고무, 양모 등
 - A류 기업을 제외하고 가공무역용 원자재수입 시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상당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하고 가공제품의 수출 후 환급함
 - 비제한물품은 금지물품과 제한물품을 제외한 기타물품으로 C류기업을 제외한 기타업체가 가공무역을 위해 수입 시 보증금 예치 불필요 및 관세 등을 면제함
- 중국정부는 국제금융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대외무역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기존의 가공무역금지 및 제한물품의 목록을 조정하여 관리함²²⁾
- 가공무역 금지물품은 2010년 11월 1일 기준으로 에너지 절감 등 목적, 고오염 배출 및 고에너지 소모품목 등의 가공무역을 계속 금지함
 - 종전 금지목록에서 규소, 도자제품, 유리제품 등 44개 품목이 추가되었으며, 조정 후 가공무역 금지품목은 총 1,803개 HS 10단위 세목의 품목임
 - 가공무역 수출금지품목: 식용염, 폐규소 등 1,286개 품목
 - 가공무역 수입금지품목: 생석회 등 336개 품목
 - 가공무역 수출입금지품목: 화학조미료, 폐주철 등 181개 품목
 - 가공무역 제한물품은 종전의 제한물품 중에서 플라스틱원료 및 제품, 목제품 및 방직품 등 총 1,730개 품목이 삭제되었으며, 이는 전체 제한품목(2,247개)의 77%를 차지함
 - 조정 후 가공무역 제한품목은 총 500개이며, 그중 수출제한품목은 선형저밀도 폴리에틸렌 등 106개이고, 수입제한물품은 냉동닭 등 394개임
- 중국해관은 가공무역의 지원조치로 가공무역대장의 전산관리를 확대해서 실시하고

22) 관세청(2011), 「2011년 수출기업 해외통관업무 협의회 발표자료」

- 있으며, 은행보증금 납부 및 정산 등 전산네트워크 관리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실시함
- 전산관리 대상기업은 각 해관이 관할구역의 상황에 따라 기업의 범위를 설정하며, 대상은행은 각 해관 관할구역의 중국은행 및 공상은행의 산하분점임
 - 내수판매절차(월별신고 등) 및 무역관리 제한요구 간소화 등을 지원하여 가공무역상품의 내수판매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음

- 가공수출용 원자재는 면세통관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면세신청 등 통관 절차가 복잡하여 통관이 지연되고 추가인력이 소요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됨²³⁾
 - 일부 지역의 경우 면세신청과 실제통관 해관이 이원화되어 있어 불편을 초래함
 - 가공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할 때 가공계약 건별로 원자재의 수입사용 및 제품수출을 기록·관리하는 대장(해관등기수첩)을 해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이 3~7일이 소요되어 원자재 수입이 지연됨

- 가공무역 경영기업은 <가공무역업무비준서> 규정에 따라 기한 내 가공 후 완제품을 재수출하는 한편, 수출상황을 보고하여야 하고, 수입자재는 수입일부터 1년 내에 완제품을 가공 생산하여 수출해야 함
 - 이 중 설탕, 면화, 식물유, 양모 및 천연고무의 가공무역 완성품은 수입, 가공 후 6개월 이내 반출해야 함

4) 기업분류 관리제도²⁴⁾

- 수출입 무역의 안전과 원활화를 보장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준법정신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분류 관리제도를 시행함
 - 세계관세기구의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기업분류 관리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통관기업과 가공무역기업도 포함함
 - 기업의 경영관리상황, 수출입신고현황, 해관법령의 성실준수 여부에 따라 AA, A,

23) 외교통상부(2010), 『외국의 통상환경(중국)』, pp. 326-330

24) 관세청, 「관세관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자료」, 2012

- B, C, D류의 5등급으로 분류하여 차등관리함
- AA류 및 A류기업은 통관편의 부여, B류기업은 일상적인 관리, C류 및 D류기업에 대하여는 엄격한 관리·감독 실시
- 2011년 6월 현재 전국의 AA류 기업은 1,825개, A류 기업은 23,149개, B류 기업은 456,627개, C류 기업은 936개, D류 기업은 175개임
- 참고로 우리나라의 AEO제도는 관세당국이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하는 제도로 관세행정상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2009년 4월 도입 이후 2012년 5월 312개 업체를 공인하여 세계 6위 수준의 공인업체를 보유하고 있음
- 미국은 10,190개, EU는 8,827, 중국은 1,825개, 일본은 459개의 공인업체를 보유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뉴질랜드 등 5개국과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²⁵⁾을 체결하여 2위의 다체결국가임
 - 현재 전 세계 17개의 MRA가 체결되었음
- AA류기업은 A류 관리조건에 부합하고, A류 관리를 1년 이상 적용하고 있어야 하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전년도 1년간 수출입신고오류율이 3% 이하일 것(종전 A류 조건)
 - 해관의 심사를 거쳐 해관관리에 부합되고, 기업경영관리 및 무역 안전 요구사항에 부합할 것
 - 매년 기업경영관리 상황평가보고 및 회계사무소 발행 전년도 회계심사 보고와 매 반년 수출입업무상황표를 송부하여 보고할 것
- AA류 기업에 대하여는 다음의 편의조치가 제공됨
- 해관절차 종료전에 담보제공 후 화물 우선 반출 가능
 - 통관현장 검사 제외

25)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관세청이 외국 관세당국과 체결하는 협정으로 이를 통해 공인업체는 외국에서도 통관절차상의 동등한 혜택을 부여받음

- 해관 전문직원파견 기업의 해관관련 문제 해결지원
- 기타 A류 기업에 대한 모든 편의 조치

- A류기업은 B류관리를 1년 이상 적용하고 있어야 하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연속 1년간 밀수죄 및 지재권 침해 수출입으로 처벌받지 않을 것
 - 전년도 수출입총액이 50만달러 이상일 것
 - 전년도 수출입신고오류율이 5% 이하일 것
 - 연속해서 1년간 상무, 은행, 공상, 세무, 질검, 외환 등에서 불량기록이 없을 것

- A류기업에 대하여는 다음의 편의조치가 제공됨
 - 기업신청에 의거 내륙지신고-개항지통관 등 신속통관방식 실시
 - 기업신청에 의거 해관직원을 파견하여 생산과정 등에서 검사 실시
 - 근무외시간 및 공휴일 통관절차 우선 예약
 - 수출입상품 품목분류 및 분석절차 우선 처리
 - 가공무역등록, 변경, 정산 신고 우선처리 등

- B류기업은 C, D류 기업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이 최초로 등록 시 분류됨
 - AA,A류 기업이 동 요건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는 B류기업으로 분류됨
 - 밀수행위 또는 50만위안 이하의 세금 등을 체납한 경우, 1년내 3회 이상 해관감시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로 인한 처벌받은 벌금의 누계액이 100만위안 이상인 경우, 1년내 2회 지재권침해화물 수출입으로 해관의 행정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C류기업으로 분류됨
 - 밀수죄 또는 50만위안 이상 세금 등을 체납한 경우에는 D류기업으로 분류됨

- B류기업에 대하여 해관은 일상적인 관리조치를 실시하며, C류 및 D류기업에 대하여는 일상적인 관리조치에 더하여 특별관리 조치를 실시함
 - C류기업에 대한 해관의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음
 - 과세가격, 품목분류, 원산지, 세율 등 세수요소에 대한 중점심사

- 수출입화물에 대해 중점적인 실지검사 실시
- 가공무역 정산시 공장검사 실시 등
- D류기업에 대한 해관의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음
 - 수출입화물은 모두 개장검사, 가공무역 화물등록 갱신처리 불허
 - 가공무역화물에 대한 검사율 상향 조정 및 정산시 공장실지검사 실시
 - 경영기업의 가공무역업무 위탁불허
 - 기타 C류기업에 대한 모든 해관조치 등

5) 원산지제도

- 무역협정에 의한 협정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특혜원산지제도는 세관법, 수출입관세 조례, 수출입화물 원산지조례 및 특혜원산지 관리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음
 - 특혜무역협정의 수출입화물 원산지확정에는 원산지조례를 적용하지 않고 각 조약과 협정의 관련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름
 - 아태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관리는 아태무역협정하의 수출화물 원산지관리방법 및 아태무역협정 원산지증명 발급 및 검증절차로 운영함
- 최혜국대우, 반덤핑과 반보고, 원산지 표기관리, 수량제한, 관세쿼터 및 정부구매 등의 확인목적의 비특혜원산지제도는 수출입상품검사법 및 그 실시조례, 수출입화물 원산지조례 및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리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음
- 기관발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특혜무역협정의 경우 각 협정에서 규정하는 증명 발급기관, 비특혜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출입국검사검역기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및 그 지방분회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함
 - 수출화물의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발급기관에 등록수속을 하여야 함
- 수입하기 전 수입화물의 수하인이나 기타 관련 당사자는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세관은 모든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원산지결정을 하고 대외에 공포함
- 판정을 내린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물품이 사전심사 대상 물품과 동일하고 원산지 규정에 변화가 없는 경우 수입화물의 원산지결정을 배제함

6) 전자통관시스템

- 전자통관은 수출입화물의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컴퓨터시스템을 통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수출입화물신고서 작성방법」의 요구에 맞춰 해관에 신고서 내용의 전자자료를 전송하고 붙임증명서(随附单证)를 모두 갖추는(备齐) 신고방식임
- 해관 전산시스템에 전자자료 신고서를 전송하고, 해관 전산시스템으로부터 신고내용을 접수하였다는 회신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해관에 제출할 종이신고서를 출력함과 동시에 필요한 첨부서류도 준비해야 함
 - 특수한 경우에는 해관의 동의나 허가를 거쳐 먼저 종이신고서 형식으로 신고하고 전자자료는 사후에 보완할 수 있음
 - 또한 해관의 정보화관리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할 때는 종이신고서 형식으로 신고할 수 있음
 - 특정한 조건하에서는 종이신고서 및 첨부서류는 보관하고 전자자료 신고만 사용할 수도 있음
- 전자통관시스템이란 중국해관이 수출입화물 통관작업에 있어 전면적으로 컴퓨터를 활용한 정보화관리 시스템을 말하며, 해관은 성공적으로 다양한 전자통관시스템을 개발 활용하고 있음
- H883/EDI 통관시스템이란 ‘중국해관통관자동화시스템’의 약칭이며, 컴퓨터를 활용하여 수출입화물에 대해 전면적인 정보화관리를 실시하는 감관 실시와 부과징수 및 통계 등 3대 해관업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정보화시스템임

- 해관 H2000 통관시스템은 H883/EDI 통관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한 새로운 시스템이며, 중앙집중식 데이터베이스 방식으로 개발된 전국통일 해관정보플랫폼으로서 해관관리의 전체 효능을 제고하게 됨
 - 수출입기업은 자기 사무실 내에서 가공무역의 등기준비를 할 수 있으며, 특정감면세증명서를 신청, 수령할 수도 있고 수출입신고 등 각종 해관절차를 수행할 수 있어 간소화된 통관절차의 편리성을 누릴 수 있게 함

- 중국전자개항(口岸)시스템은 또한 전자개항(电子口岸)이라고 하며, 컴퓨터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수출입무역관리와 관련된 정부기관이 수출입업무와 관련된 정보전자데이터를 공공데이터센터에서 집중관리하여 관리부처와 기업들에 각종 수출입업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국가정보시스템임
 - 전자개항시스템과 H2000 통관시스템은 서로 연계되어 전국의 수출입무역서비스와 정보관리 네트워크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음
 - 수출입기업은 자기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해관 및 기타 관련 국가관리기관에 수출입무역과 관련된 각종 절차를 처리할 수가 있음
 - 수출입무역과 관련된 통관 및 기타 관련 국가관리기관도 인터넷을 통하여 수출입 무역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2. 비관세장벽

- 비관세장벽이란 관세 이외의 수단을 통해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및 수단을 통칭하며, 그 종류로는 수입허가제, 기술무역장벽, 위생 및 검역조치, 통관 관련 규제, 원산지 규정 및 무역구제 등이 있음²⁶⁾
 - 한·중 FTA에 있어서 비관세장벽은 관세철폐와 함께 가장 중요한 분야임과 동시에 양국간 입장 차이가 가장 큰 분야임

26) 정환우, 「한·중 FTA 비관세장벽 분야 쟁점과 시사점」, 국제무역연구원 지역연구실, 2012. 2.

〈표 II-7〉 중국의 주요 비관세장벽 유형

유형	주요 내용
수입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허가제도 / 허가증 관리 · 자동 수입허가증 관리 · 쿼터 관리 (설탕, 섬유, 밀, 옥수수, 벼와 쌀, 면화, 화학비료 등) · 중고제품 수입금지 (기계, 전기전자, 의류) · 수입상품 분류관리제도 · 수입허가증 발급시 민감한 기업정보 요구
기술무역장벽 (TB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제인증제도(CCC) · 자발적 인증제도 · 전자정보제품 오염관리방지법(China RoHS) · 신화학물질 환경관리제도(China REACH) · 자동차용 타이어 인증제도 · 가전제품 에너지효율성 표기 부착 · 수입전자제품 전자수용강제검사 실시 · 수입계량구기구 형식 검증 제도 · 목재포장재 열처리 증명 요구
위생 및 식품위생 조치 (SP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관련 규제(수입식품 중문 라벨 부착 등) · 의약품관련 규제(의약품 허가심사시 중국 자체규정 약전 사용 등) · 의료기기에 대한 수입허가제 · 화장품 수입절차(강제성표준 규정)
통관관련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의약품 통관지 제한 · 수입신고 지체금 부과 · 환급규정관련 정보 획득의 어려움 · 이중 세관검사(발체 검사 후 전량 검사) · 관세부과 기준가격 비공개 · 보세운송 불허 · 관세분류의 자의성 및 화물에 대한 상세정보의 기밀보호 미흡 · 통관절차의 복잡성과 불투명성 · 과도한 통관심사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7)에서 발췌 및 수정

- 무역 자유화의 진전에 따라 관세장벽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반면 비관세장벽은 복잡성, 불확실성, 계량화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효과적인 교역통제수단으로 부각되었음
- 비관세장벽은 각국의 상이한 문화와 제도, 지리·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WTO도 각국간의 이러한 차이점을 권리로 인정하고 있어 불공정 무역에 대한 제소가 쉽지 않은 상황임

- 중국의 다양하고 복잡한 비관세조치들을 명확하게 유형화하기는 어려우나, 크게 수입규제, 기술무역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위생 및 식품위생 조치 (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통관관련 규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가. 수입규제

- 중국은 2001년 12월 10일 「중화인민공화국 화물수출입 관리조례」를 발표하고, 수입 화물을 수입금지화물, 수입제한화물, 수입자유화물, 관세쿼터관리화물 등 4가지로 분류하여 관리함
 - 수입금지화물은 각종 무기, 탄약 및 폭발물품, 위조통화, 위조 유가증권, 각종 열성 독극물 및 마약류를 포함함
 - 수입제한화물은 수량제한이 있는 품목은 쿼터관리제도로, 수량제한이 없는 품목은 허가증 관리제도를 통하여 관리함
 - 수입자유화물은 수입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정부 부문의 화물수입 감축현황에 근거하여 일부 수입자유화물은 자동수입 허가관리를 실시함
 - 관세쿼터관리화물은 매년 상무부가 통일적으로 대외공표하며 국가정책 및 대외경제무역 발전의 수요 및 국내외 시장 변화에 따라 쿼터허가증관리 품목을 조정함
- 중국은 WTO 가입을 계기로 2005. 1. 1일까지 단계적으로 400여개의 수입제품 관련 비관세조치(쿼터, 허가증, 가전제품 특정입찰)를 폐지하였음
 - 중국은 이미 농산물 수입에 있어서도 소맥, 양식, 면화 등 대부분의 농산품에 대해 과거 쿼터 관리제도에서 관세쿼터관리제도로 변경, 실시하고 있음
 - 2006년 1월 1일부로 콩유, 팜유, 유채씨유에 대한 수입관세쿼터관리제를 폐지하였음
 - 장기적으로 중국은 쿼터 및 허가증 등 직접적인 관리제도 조치를 큰 폭으로 줄일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1) 수입 허가제도 / 허가증 관리

- 수출입 허가제도는 국가의 법률, 정책, 대외무역계획 및 국내시장 수요에 근거하여 수출입 경영자격, 경영범위, 교역국가별 정책, 수출입 상품 종류, 수량 등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제도를 가리킴²⁷⁾
 - 주로 수출입 경영자격 및 경영범위의 심사비준, 수출입제한상품의 쿼터 허가증 관리, 수출입 상품의 분류관리, 교역국가별 정책 등의 내용을 포함함
 - 수출입 경영자격은 중국기업의 대외 상담 및 수출입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을 가리킴

- 허가증 관리제도는 특정상품에 대한 허가증명으로서 대외무역 경영업체가 국가의 수출입제한 상품을 수입 혹은 수출하기 전 우선 국가의 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제도임
 - 자국산업의 보호와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한 외화지출을 억제하고 대외교역의 거시적 관리를 통해 무역수지를 방어하기 위해 화물수입허가증관리방법(2002. 1. 1. 시행)을 발표하였으며, 1993년 이후 매년 수입허가 대상품목을 축소하고 있음
 - 수입허가증 발급기관은 수입허가증 대상품목의 수입규제 강도에 따라 상무부, 각 성(省)의 대외경제 무역청, 각 항만에 설치된 상무부 특파원 판사처에서 구분 발급함
 - 수입허가증 신청 가능업체는 국가가 승인한 수출입 경영권을 가진 대외무역공사, 공업무역공사, 국제경제기술합작공사 및 그 소유의 생산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임

- 수입허가품목을 점차 축소하여 현재 중국의 수입허가증 관리대상 품목은 감시화학품, 독성화학품, 오존층 파괴물질 등 3종에 국한되어 있음²⁸⁾
 - 탄화수소의 할로겐화 유도체(CFC12 등), 염화불화탄소(CFCs)를 함유한 화합물 등 57개(HS 8단위 및 10단위 기준, 이하 동일) 품목의 오존층 파괴물질, 82개 감시대 상 화학품, 22개 독성물질 제조용 화학품 등 3가지 화물에 대하여 수입허가증관리

27) 삼성전자, 『중국 관세제도』, 2009

28) 한국무역협회(2011)

를 실시하고 있음

- 또한 중국은 국제무역 관련조례에 따라 64개 화학무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화학원료, 18개 방사성 화학물, 41개 독성물질 제조가 용이한 화학품 등 113개 세목에 대해 이중사용물질 및 기술 수입허가증 관리를 시행하고 있음
- 합자/합작 기업의 내부용으로 수입한 기계장비 및 물자가 국가의 수입허가증 관리 대상품목이면 우선 상무부(상무부처)문의 수입화학허가증을 취득해야 함²⁹⁾
 - 외국인투자기업 및 홍콩, 마카오, 대만 투자기업의 내부용도의 기계장비 및 물자 등 수입품은 수입허가증 관리대상에서 제외됨
 - 설탕, 면화, 식물유, 양모, 천연고무 등 5종 상품을 원료로 하는 가공무역의 수입자재는 우선 수입허가증을 취득해야 함
- 자체 사용기계, 설비, 원자재가 국가에서 시행하는 수입허가증 관리상품에 속하는 경우에는 대외경제무역 주무부서로부터 수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함³⁰⁾
 - 수입허가증의 중앙관리기관은 상무부이며, 수입허가증 발급기관은 상무부 각 지역 출장소나 각 성, 직할시 상무청임
 - 수입허가증은 일반적으로 한 곳의 세관에서만 사용하며(一關一證), 유효기간 내에 한 번만 통관 신고를 할 수 있음(一批一證)
- 수입허가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그 기간 내에만 유효하고, 특별한 사유로 인해 1년을 넘겨야 하는 경우에 유효기간은 이듬해 3월 31일을 넘지 못함
 - 수입허가증 발행 후 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며,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입업체는 허가증의 유효기간 내에 수정 신청을 하고 허가증을 발행기관에 반납해야 함
- 외상투자기업의 수출을 위한 자재(원자재, 부품, 조립품, 포장재 등)의 수입은 수입화학 허가증을 면제하며 해관이 보세화학물규정에 따라 감독함³¹⁾

29) KOTRA, 『국가정보(중국)』, 2010

30) 한국무역협회(2011)

- 수입품이 수입쿼터 허가증 관리품목이면 우선 수입허가증을 취득해야 함
- 외상투자기업이 내수 상품의 생산을 위해 수입한 자재가 국가의 수입허가증 관리 품목인 경우 수입허가증을 취득해야 함

- 외상투자기업의 수출제품이 국가의 수출허가증 관리품목인 경우 수출화물허가증을 취득해야 하고, 외상투자기업의 수출제품 범위는 영업범위 내 자체 생산가공한 제품이며 중국 내 구매제품은 제외됨³²⁾
 - 현재 중국의 수출허가증 관리상품으로는 총52종의 338개(HS 8코드 단위기준)의 제품에 대해 지정하고 있음
 - 국민생활과 관계되는 자원성 수출제품
 - 중국의 수출에서 주요 위치를 점유하는 전통수출상품
 - 세계시장 혹은 특정시장에서 주요 위치를 점유하는 제품
 - 외국의 쿼터제한 혹은 수출제한 제품
 - 수출량이 많으며 경영질서 혼란을 일으키기 쉬운 상품
 - 중국의 중요 특산품 혹은 특수한 요구가 있는 제품
 - 다음 상품은 수출허가증을 면제하나, 국가의 쿼터입찰관리 제품은 무역방식을 막론하고 수출허가증을 취득해야 함
 - 상계무역 수출제품(국가 쿼터입찰관리 제품 외의 기타 수출허가증 관리상품)
 - 가공조립무역의 재수출상품
 - 해외전시회의 재반입 전시품
 - 경제기술교류 등 목적의 해외에 제공한 테스트용 견본품
 - 대외경제기술원조 목적의 수출물자 일부제품 등에 해당되는 허가증 관리제품

- 국가에서 쿼터 또는 허가증 관리를 실시하는 상품의 수출입통관시 반드시 해관에 ‘수입화물허가증’ 또는 ‘수출화물허가증’을 제출해야 하며, 허가증이 없을 경우에는 수출입통관수속을 할 수 없음³³⁾

31) KOTRA, 『국가정보(중국)』, 2010

32) KOTRA, 『국가정보(중국)』, 2010

- 중국에서 피동쿼터관리³⁴⁾를 실시하는 방직품에 대해서 해관은 ‘방직품수출허가증’에 근거하여 면허하며, 쿼터를 실시하는 17종 상품 중 하나인 방직품에 속할 경우 해관은 ‘수출화물허가증’을 추가로 징구하여 이를 근거로 검사, 면허함
- 수출입허가증 관리상품이 만약 상품검사, 무선전파관리, 동식물검역 등 국가에서 기타 수출입관리를 실시하는 대상에 속할 경우, 수출입 통관 시 수권 받은 기관에서 발급하는 기타 수출입 증명서도 함께 해관에 제출해야 함

2) 자동수입허가증 관리³⁵⁾

- 중국은 주요 수입상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위해 635개 기계 및 전기전자제품과 421개 기타 공산품에 대해 자동수입허가증(自動輸入許可證)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자동수입허가목록에 포함된 품목으로 가금류, 식용유, 담배, 화학비료, 석탄, 원목, 철광석, 원유 및 정제유, 철강류, 기계류, 자동차 부품, 선박 등이 있음
 - 자동수입허가목록의 품목은 수입허가 신청 즉시 허가증이 자동적으로 발급됨
- 일반 무역, 외국 정부 및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관, 위탁판매, 임대, 보상무역, 국제입찰, 노무보상, 기증, 변경 소액무역, 외국인투자기업이 중국내수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수입하는 자동 허가관리 상품에 대해 세관은 ‘자동 수입허가증’에 의해서 검사, 통관함
- 품목에 따라 상무부, 환경보호부가 수입허가 여부를 심사하며, 수입허가증은 1년간 유효하고, 1회 연장(3개월)이 가능함

33) 중국관세무역연구회, 『중국관세무역신보』, 제2011-9호, 2011, p.12

34) 중국은 중국과 방직품 쌍무협정을 맺은 국가의 방직품에 대해서는 피동쿼터관리를 실시한다. 현재 중국과 방직품 쌍무협정을 맺은 국가로는 미국, EC, 캐나다, 노르웨이 등이 있으며, 면, 모, 인조섬유, 기타 식물섬유와 사혼방직품 및 기타 제품등 상품에 대하여 중국은 수출수량을 자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품은 상무부 및 그 수권기관에서 발급한 ‘방직품수출허가증’에 근거하여 수출하여야 한다(『중국관세무역신보』, 제2011-9호).

35) 한국무역협회(2011)에서 발췌

- 샘플, 광고 물품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액 범위 내에서 수입한 자동허가관리 자기 회사용 상품에 대해 '자동 수입허가증'을 면제함
- 매년 자동수입허가목록에서 제외되는 품목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 현재까지 약 800여 개 품목의 무역 자유화가 이뤄짐

3) 수입상품의 분류(分級)관리제도³⁶⁾

- 수입상품을 성격에 따라 1, 2, 3류 상품으로 분류하여 수입업자를 제한하는 수입상품 분급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1류 상품은 '국영수입무역관리화물'에 의한 양곡, 식용유, 설탕, 담배, 원유, 정제유, 화학비료, 면화 등 시급한 공급이 요구되는 다량의 공업용 원자재, 농업용 물자, 생필품 8개 품목이며, 지정된 국영무역전업공사가 일괄적으로 수입하도록 되어 있음
 - 2류 상품은 '수입지정경영관리화물'에 의한 총 5종 상품(천연고무, 합판, 양모, 아크릴섬유, 강재 등)은 국제시장에서 공급원이 제한되어 가격변동이 심하고 국내 공급이 부족하여 국제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이가 큰 품목으로 상무부 산하의 지정 무역업체들이 수입을 독점하고 있음
 - 3류 상품은 1류 및 2류 이외의 품목으로 수입권을 확보한 모든 무역기업이 수입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복잡한 수입관리제도는 시급히 정비될 필요가 있으며, 일시에 철폐하지 못할지라도 품목별로 철폐시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나. 기술무역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기술무역장벽이란,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 등이 국가 간의 교역에 불필

36) 외교통상부, 『2011 외국의 통상환경: 아시아대양주』, 2012

요한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현상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며 자유화 진전에 따른 관세장벽 완화에 따라 중요성이 제고되고 있음³⁷⁾

- 국가표준은 전기전자제품에 폭넓게 적용되는 추세이며 강제성 국가표준의 경우, 기준에 미달하면 대(對)중국 수출과 현지 생산 등이 금지되고 있으며, 표준은 수입 물량 및 절차 제한, 정부조달 제한 등과 함께 비관세 기술장벽으로도 작용하고 있음
 - 중국은 기술표준, 포장, 라벨링, 안전 규정 등에 있어 자국기업들에 유리한 조건을 우선 적용하는 특성을 보임
 - 최근 몇 년간 중국 내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에 대한 정책이 강화되고 있어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에 관한 법제화를 숙지하고 이를 제품 생산, 개발에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함
 - 2006년부터 중국정부가 환경보호를 정책기조로 내걸었고, 2008년 4월 1일부로 시행되는 수정판 에너지절약 정책 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국책기조로 삼고 있음

1) 강제인증제도(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³⁸⁾

- 강제인증제도란, 「강제성제품 인증 관리규정」에 따라 2002년 5월 1일부터 중국 내에서 유통되거나 중국으로 수입되는 제품 중 ‘CCC’ 인증 대상 품목은 반드시 동 인증을 취득하여 인증마크를 부착해야만 중국 내 수입, 유통,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임³⁹⁾
- 과거 중국의 제품안전 인증제도로써 국내 상품에 적용되던 CCEE 마크와 수입상품에 적용되던 CCIB 마크가 WTO의 내국민대우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아 국무원이 강제인증제도 업무를 정비하고 규범화를 도모하기 위해 하나로 통합된 CCC 마크로

37) 정환우(2012)

38) 한국조세연구원(2011)에서 발췌

39) 전군중, 「한·중 FTA 협상의 주요 이슈와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비관세장벽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0

변경함

- 「제품품질법」, 「표준화법」, 「상품검사법」, 「소비자 권익보호법」 및 「제품인증관리조례」에 기초하여 검사대상 리스트, 기술관련 법규, 마크, 비용 등을 일원화한다는 목표 아래 2002년 5월 1일부로 시행함
 - 강제인증 시행품목은 반드시 관련기관 또는 관련기관이 인정하는 인증기관에서 중국강제인증을 취득하여야 하고, 인증을 취득한 상품은 강제인증마크를 구입, 부착한 다음에야 중국 내에서의 판매와 중국으로의 수입이 가능함
- 중국정부는 2003년 8월 1일부터 자동차, 전기제품 등 19개 1차 대상품목, 132개 품종을 CCC인증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였고, 2004년 4월에 건축용 인테리어 품목, 2006년 12월에는 일부 자동차 부품에 대해 추가실시하여 CCC인증 대상품목은 22개분야 159개 품목에 달함
- CCC인증 신청절차는 '① 신청 및 접수 → ② 서류심사 → ③ 제품검사 → ④ 공장심사 → ⑤ 공장시료 채취 검사 → ⑥ 평가'의 순서로 진행되며,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없을 경우 90일 이내에 인증서를 발급함
- 강제인증 대상품목이라고 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인증인가 감독관 리위원회에 강제인증 면제신청을 하여 강제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음(免CCC, 免3C)
- 연구용 또는 시험용으로 수입된 물품
 - 완제품 가공 후 수출을 위한 부품
 - 제3국 무역을 위해 중국을 경유만 하는 제품
 - 기술검토를 위해 수입되는 제품
 - A/S 혹은 생산이 중단된 제품의 수리를 위해 수입되는 제품
 - 기타 특수상황으로 수입되는 제품
- 주중 외국 공관 및 사절단이 공적 및 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개인물품, 외국의 무상구호물품, 중국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전시하기 위해 수입되는 물품, 기타

중국정부가 인정하는 특수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강제인증 비대상품목임

〈표 II-8〉 1차 강제인증품목

(단위: 개)

연번	분 류	품목수
1	전선 및 케이블	5
2	전기스위치 및 보호장비, 전기접속장치	6
3	저압형 전기장비	9
4	저공률 전동기	1
5	전동공구	16
6	전기용접기	15
7	생활용 전기제품	18
8	음향제품(단, 라디오방송 및 자동차용 음향설비 제외)	16
9	정보기술장비	12
10	조명장비	2
11	정보통신 단말기 설비	9
12	자동차 및 안전부품	4
13	자동차 타이어	3
14	안전용 유리	3
15	농기계 제품	1
16	라텍스 제품	1
17	의료기기	7
18	소방기기	3
19	기술안전보호제품	1
20	용제형 목기도료	27
21	자기타일	
22	시멘트 동결방지제	
합계		159

자료: 외교통상부, 『외국의 통상환경』, 2010

- 동일한 HS코드상에서 일부 규격품목만이 CCC인증 대상으로 규정된 경우 기타 규격 품목에 대해서는 CCC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중국 해관의 이해부족으로 해당제품이 인증 대상으로 간주되어 통관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⁴⁰⁾

40) 전군중(2010)

- 중앙정부와 해관 당국 간 강제인증 대상품목에 대한 기준 불일치로 통관에 장애를 겪고 있으며, CCC 인증 마크 취득시 중국 내 현지인을 통한 인증신청을 의무화하고 있어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음⁴¹⁾

- 외국 정부의 검사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거의 모든 제품에 대해 자국 심사기관에 의한 직접 공장 실사를 실시하고 있어 CCC인증을 받는 데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⁴²⁾
 - 통상 CCC마크를 얻는 데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는데, 그 원인 중 하나는 중국이 외국 적합성 평가기관(CAB, Conformity Assessment Body)의 공장 실사 결과 적용을 허가하지 않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음

2) 자발적 인증제도

- 중국 정부는 2011년 상반기 「중화인민공화국 인증기관 관리방법」을 공포하여 인증기관 및 인증활동을 종합적으로 규범화하여 중국내 자발적 인증 관련 규범 강화를 시도함
 - 인증기관 관리방법이란 중국 내 모든 인증 행위는 중국정부에서 허가한 인증기관에 위탁하거나 별도의 인증법인을 중국에 설립하여 인증을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임
 - 인증기관 및 인증인력의 업무상 행위를 규범화하고, 인증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며, 각급 인증감독부처가 동일한 척도를 가지고 법에 근거한 행정, 엄격한 관리를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힘

- 인증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등록자본이 300만 위안(약 5억원)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10인 이상의 전문 인증인력이 필요하며, CNCA(중국 국가인증인정 감독관리위원회)의 기준을 거쳐 인증기관 비준서를 획득해야만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인증 활동을 할 수 있음

41) 전군중(2010)

42) 정환우(2012)

- 제품 인증을 하는 인증기관은 관련 제품인증에 적합한 테스트, 검사 등 기술력도 갖추어야 함
- 외자(外資) 인증기관을 설립하려면, 외국 투자자가 국외에서 3년 이상 관련 분야 인증경력을 갖고 있어야 하며 불량기독이 없어야 하고, 인증기관은 인증교육 및 인증자문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종사해서는 안됨
- 인증기관은 공정, 독립, 객관적으로 인증을 해야 하며 품질시스템, 위험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공개, 심사결정, 정보파일링, 인증인력관리 등 업무를 제도화해야 함
 - 인증범위, 인증규정, 비용기준, 인증서 현황 등을 적시에 대중에게 공개하고 인증과정과 인증결과의 객관성, 진실성을 담보해야 하고, 인증기관 및 인증인력은 인증결과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됨
- 동 제도의 실시로 인하여 중국 진출 한국 인증기관의 사업 제한 및 자격 요건 강화로 중국 내 인증활동이 어려워지고 운영비용도 늘어날 가능성이 큼⁴³⁾
 - 중국 내에 인증기관을 설립해야만 KC 등 인증의 중국 내 공장 실사, 사후관리 등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일부 중국 진출 한국 심사기관에 대해 KC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타격이 예상됨
 - 중국 내에 인증기관 설립을 위해서는 10명 이상의 전담인력 고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인력을 고용, 유지할 수 있는 한국의 인증기관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2011년 기준, 중국에 CNCA 비준을 받은 인증기관은 174곳이며, 각종 제품, 관리시스템, 서비스 인증과 관련하여 발행된 증서는 총 177만개, 인증획득기관은 61만 곳임

43) 정환우(2012)

3) 전자정보제품 오염관리방지법(China RoHS)⁴⁴⁾

- RoHS는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의 약어로 유럽연합(EU)이 2006년 7월 1일부터 EU에 출시되는 모든 전기 전자제품에 6대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제정한 지침임⁴⁵⁾
 - 6대 유해물질이란 납(Pb), 카드뮴(Cd), 수은(Hg), 6가크롬(Cr+6), 폴리브롬화 비페닐(PBB),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PBDE) 등을 말함
 - 동 지침은 2003년 2월에 제정되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 EU의 RoHS 지침을 모태로 하여 중국에서 생산, 판매 및 수입하는 전자정보제품에 유해물질 사용을 규제하고 전자정보제품 폐기후 유발되는 환경오염을 통제 및 감소를 위해 전자정보제품 오염관리방지법(China RoHS)을 제정함
 - China RoHS의 근거법률인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관리방법」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상무부, 해관총서, 국가공상행정 관리국, 국가질량 감독검험검역총국, 국가환경 보호총국 등 7개 부서가 공동으로 2006년 2월 28일 발표하고 2007년 3월 1일 시행기로 결정하였음

- China RoHS는 전자정보제품 회수 처리와 재활용 업무에 대한 기초로 활용하여 ‘오염 방지와 예방우선’이라는 환경보호 원칙을 구체화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전자정보제품에 함유된 6대 유해물질인 납(Pb), 수은(Hg), 카드뮴(Cd), 6가크롬(Cr+6) 등 중금속물질과 폴리브롬화 비페닐(PBB),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PBDE) 등 난연제 사용을 통제하는 것이 주요목표임
 - 제품 연구 개발과 설계, 생산, 판매, 수입에서부터 이러한 유해물질에 대한 통제를 함으로써 환경오염 물질을 점차적으로 친환경 물질로 대체 및 감량하게 됨
 - 폐기 전자정보제품의 회수, 해체, 처리와 재이용에 대한 기초를 다짐으로써 생산

44) 한국조세연구원(2011)에서 발췌

45) KOTRA, 『국가정보(중국)』, 「주요인증제도」, 2010

자로 하여금 ‘오염자 부담’이라는 원칙을 실천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함

□ 2007년 3월 1일부터는 1차적으로 모든 전자정보제품에 대해 라벨 부착 및 정보 공개를 하도록 요구하고, 적용 대상 전자정보제품은 중국의 공업정보화부의 ‘전자정보산업업종분류표’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11종(1,400여 개의 세부 품목으로 구성)으로 구분됨

- ① 전자레이더 제품
- ② 통신설비 제품
- ③ 라디오 TV 설비업종 제품
- ④ 컴퓨터 관련 제품
- ⑤ 가정용 전자제품
- ⑥ 전자측량·계측기제품
- ⑦ 전자공업 전용 설비제품
- ⑧ 전자조립부품(元件)
- ⑨ 전자 핵심부품 업종(器件)
- ⑩ 전자응용제품
- ⑪ 전자 전용재료제품 등

□ China RoHS 적용 대상범위는 중국 역내에서 전자정보제품 생산, 판매 및 수입되는 전자정보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수출 제품 생산행위는 제외됨

□ 동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EU 규칙에 비해 누락된 품목이 있고, 국제 기술수준에 비해 불투명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 중국의 통제 방법은 EU의 RoHS와 유사하지만, EU의 RoHS 대상품목에는 있으나 누락된 품목⁴⁶⁾이 있고 구체적인 산업표준이나 국가표준이 없는 것으로 지적됨
-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제품을 수입하거나 인증을 받을 때, SAIQ⁴⁷⁾의 검사를 받아

46) 예를 들면, 전자레이더, 전자측정장비, 전자재료, 전자 유닛과 부품, 소프트웨어 등

47) SAIQ: 중국 수출입상품 검험국 China Quality Certification Centre for Import and Export

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기준과 방법이 특정화되어 있지 않고, 국제 기준이나 국제 기술수준에 비해 불투명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표 II-9〉 China RoHS 적용 대상범위

구 분	China RoHS 적용 여부
제품, 부품 수입 시	적용
부품수입 → 중국내 조립 → 중국내수	적용
제품, 부품 수출 시	미적용
부품수입 → 중국내 조립 → 제품수출	미적용

자료: KOTRA(2010)

4) China REACH(신화학물질 환경관리제도)⁴⁸⁾

- 중국은 EU가 신화학물질 관리제도⁴⁹⁾(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of Chemicals)를 실시하여 환경기준을 강화하자 의견수렴과 개정을 거쳐 2010년 1월 「신화학물질 환경관리제도(REACH)」를 국무원에서 통과시켰음
- 중국의 REACH는 운영 및 관리 면에서 EU의 REACH와 유사하여 역내 기업을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하고 미등록 시 역내시장의 진입이 금지됨
 - 신고 화학물질이 환경과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정보를 담은 위해성 평가보고서와 시험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Commodities

48) 정환우(2012)에서 발췌

49) 유럽연합 내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제조·수입량과 위해성에 따라 등록·평가·허가 및 제한을 받도록 하는 화학물질 관리규정으로,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법령과 22개의 지침서로 구성됨

〈표 II-10〉 EU REACH와 중국의 REACH 비교

구분	EU REACH	중국 REACH
시행일	- 2007년 6월 1일	- 2010년 10월 15일
대상물질	- 기존 화학물질, 신규 화학물질	- 신규 화학물질
의무자	- 역내 제조자, 수입자, 유일 대리인	- 제조자, 수입자
시험기관	- 국제공인분석기관 자료 인정	- 환경보호부 지정 중국 내 시험기관 - 국외의 경우 GLP 인증기관
분류톤수	- 1, 10, 100, 1000톤 이상	- 1톤 미만, 1톤 이상, 100kg 미만
위해성 대책관리	- 10톤 이상 등록 시 화학물질안전성 보고서(CSR) 제출	- 1톤 이상 등록자, 가공자, 사용자는 등록증 규정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 의 위해성관리대책 수립 의무
벌금/제재	- 등록되지 않으면 EU 역내에서 제조 또는 시장 출시 불가	-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만 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 벌금 부과 - 신고/등록되지 않으면 중국 역내에 서 제조, 수입, 가공, 사용 금지
기타	- 화학물질의 양과 위해성에 따라 등 록, 신고, 평가, 허가, 제한으로 구분	- 일반신규, 위험신규, 중점환경관리 위험신규화학물질로 구분 - 취급량 1톤 미만일 경우 간이신고, 특별간이신고 가능 - 공동신고 가능

자료: 장현숙(2010), 정환우(2012)에서 재인용

- 중국의 REACH는 EU의 REACH와 달리 신규 화학물질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되나 추가비용 발생으로 인한 원가상승 압박이 예상된다
- 전 세계적으로 화학 관련 규제들이 강화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하는 원료나 제품의 산업에 타격이 예상된다
 - 신규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모든 제품에 대한 신고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이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으로 원가상승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 위생 및 식품위생 조치(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란 인간 위생을 위한 보호조치 및 이러한 조치의 무역에 대한 영향 관련 국제규범을 통칭하는 것으로, 동식물 병해충, 식품, 음료, 사료 첨가제, 오염물질, 독소 등의 위협에서 보고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함⁵⁰⁾
 - 기존의 GATT체제하에서도 자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를 위해 GATT 규범의 예외로 인정되었으나, 통보 의무가 없었으므로 각국은 이 예외조항을 농산물 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음
 - 이후 UR협상에 따라 농수산물 무역이 확대되면서 이 제도가 비관세장벽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위생검역을 GATT 다자간 무역체제 내로 편입시킬 필요성이 증대되었음
 - 이에 WTO/SPS 협정이 1995년 체결되었으며, 이 협정에서 각국의 위생검역조치는 자의적이거나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되어서는 안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서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음

1) 중국의 SPS 정책⁵¹⁾

- 중국에서 건강 및 안전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은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AQSIQ, the State General Administration of the PRC for Quality Supervision and Inspection and Quarantine)과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 the 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Administration of the PRC) 2곳이며, 근거법률은 「상품검사법」과 「검역법」임
- 중국의 SPS 규제는 법규 미비, 국제표준과의 불일치, 위협평가, 투명성 등 규범상의 한계와 규제시스템, 설비, 인적 여건 등의 미비 등 제도·집행상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50) 정환우(2012)

51) 정환우(2012)에서 발췌

〈표 II-11〉 중국의 위생검역규범과 WTO 규범의 합치성 평가

분 야	내 용
위생검역 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정부의 조치에 따른 국제무역 제한 가능성의 다양한 상황에 대한 명문 규정 부재(수출입동식물검역법) - 표준, 지침 및 권고(SPS 제3조) 근거 규정 부재 및 적절한 위생보호수준(SPS 제5조)에 대해서도 미 규정(수출입동식물검역법) - SPS 제5조 7항의 예방적 조치 미규정(수출입동식물검역법) - 기타 WTO 가입 이후 실질적 위생검역규범 개정 미미 등
국제표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검사표준 미 통일(즉, 중국내 검역요건이 수출입검역 요건보다 덜 까다로움) - 동물방역 박멸과 제어 분야에 관련 표준문건 부재 - 역병 상황보고, 유행병학 감시와 측량분석 분야에서 중국 규정과 국제적 수준간 상당한 격차 - 동물사육, 운송, 도살, 동물제품가공 및 운성 분야에서 체계적이고 통일된 규정 부재 - 역병 진단방식, 수의실험실 관리 등 분야에서 이미 반포한 표준도 불충분한 경우 다수
위험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평가와 관련된 입법 부재 - 심도 있는 연구 부재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법규 다수가 내부적인 법률로 투명도가 낮음 - 관련 법규 및 조례도 상당부분 불완전 예)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 「중화인민공화국출입국동물검역법」, 「수의약품관리조례」(국무원), 「사료 및 사료첨가제 관리조례」(국무원) 등

자료: 이양기(2009), 정환우(2012)에서 재인용

〈표 II-12〉 중국 위생검역제도와 WTO 제도의 합치성

구 분	내 용
규제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이한 정부기관에 규제 권한 분산 (규제 참여기관) 위생부, 농업부,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AQSIQ),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상무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등 → (결과) ①식품안전 정보의 흐름을 감소시키고 기관간 협력 방해, ②기관별 규정과 표준간에 부조화 발생, ③책임 회피와 전가 사유
자금· 검사검역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위생검역자금 투입액 191개국 중 188위(02년) - 검역검사 설비 낙후, 모니터링 기술 능력 낮은 수준 - 많은 항구에서 포장 해체 검사 및 관능검사 방법에 의존
전문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역요원 부족 - 연령 과다, 직무재교육 부족, 지식 갱신 지연

자료: 이양기(2009), 정환우(2012)에서 재인용

2) 식품관련 규제

- 중국은 특수영양식품과 보건(기능)식품의 경우 의약품의 경우와 같이 매 품목마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SFDA, Stat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 위생허가를 받아야 하고, 구비서류가 복잡하고 수속 중인 서류의 수정 시에도 별도의 요금이 부과되는 등 과도한 비용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⁵²⁾

- 보건식품의 경우 국가가 정하여 고시한 27가지 효능을 가진 제품에 한하여 위생허가증을 발급하여 주고 있으며, 이러한 위생허가는 심사·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고 안전성 평가자료 등 구비서류가 복잡하며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수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 대개 1~2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검사비용은 연구검사기관이 검사항목에 따라 자체적으로 지방정부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몇 배의 추가비용이 들 수도 있음

- 중국 위생표준의 경우, 우리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존재하며, 첨가물의 경우는 각국마다 사용기준이 달라 해당제품의 유형에 따른 첨가물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식품 기준은 각국의 식문화와 습관 등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설정되는 관계로 기준에 대한 합의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은 「수입식품표시관리법」의 개정을 통하여 수입제품의 포장에 표기된 원제조국의 모든 외국어 표기를 중문으로 표기하도록 함

52) 외교통상부(2012)

3) 의약품 관련 규제⁵³⁾

- 중국은 전 세계 원료의약품의 80%를 공급하는 의약품 생산대국이고 향후 10년 이내에 세계 5대 의약품 생산국을 목표로 각종 제도의 정비와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음
- 최근 SFDA가 자국의 의약품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수약품제조관리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의 강제 적용, 임상시험 기준, 판매유통 관리 강화 등 시장진입의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각종 규정을 제·개정 공포하고 있음
- 중국 수입약품의 심사·허가 업무의 주요 관리규정으로는 「수입약품관리방법」을 들 수 있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수입약품은 반드시 SFDA가 발급하는 ‘수입의약품등록증’을 취득해야 함
 - 수입 시마다 SFDA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수입항 의약품검사소가 발급한 ‘수입약품통관증’ 및 기타 증명을 해당 수입항을 관할하는 세관에 제출하여야 통관할 수 있음
- 의약품 등록시 요구하는 규격이 중국약전(CP; 中國藥典)이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데, 수입의약품 심사 시 타 국가의 인증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서화된 규정은 없으나 관행적으로 중국 자체규격 약전을 적용함
 - 또한 의약품 등록 신청 시 수입약품은 반드시 중국에서 실시한 임상시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함
 - 의약품 등록 시, 3개월 정도 소요되는 타국과 달리, 중국에서 임상실험 결과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됨
- SFDA는 국내 동류약품의 포화 정도에 따라 약품수입허가를 결정하며, 중국 내 동류약품이 포화상태인 경우 수입관련 규정에 적합한 약품도 수입허가를 취득하지 못하

53) 외교통상부(2012)에서 발췌

는 경우가 있음

- 수입약품등록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등록증 기한만료 6개월 전에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 재신청하여야 하며, 재등록신청 유효기간을 초과한 품목은 새로운 등록절차를 거쳐야 함
 - 등록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갱신할 경우, 동 제품을 자국에서 생산하게 되면 허가 연장을 불허하고 있음
 - 또한 수입 시 엄격히 적용하는 부가가치세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함

라. 통관 관련 규제

1) 의약품 수입통관지 제한⁵⁴⁾

- 중국 「수입약품관리방법」은 수입약품의 심사·허가 업무의 주요 관리규정이며 동 규정 제3조에 따라 약품은 반드시 국무원(State Council)이 약품수입을 허가한 항구를 통해서만 수입하도록 함
- 수입약품은 반드시 국가약품감독관리국(State Food Administration)이 발급하는 수입의약품등록증을 취득해야 하고, 수입 시마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SFDA)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수입항의 약품검사소가 발급한 수입약품통관증 및 기타 증명을 해당 수입항을 관할하는 세관에 제출하여야 통관 가능함
- 수입업체와 구매계약을 맺은 경우, 화물의 도착지는 약품수입이 허가된 항구에서만 가능하며, 중국 내 처음 수입되는 약품과 SFDA가 규정하는 생물제품은 국가의 특별 승인을 받은 항구로 수입이 가능함

54) 외교통상부(2012), KOTRA(2011)에서 발췌

2) 수입신고 지체금 부과

- 통관기한은 수출입화물의 개항지 도착 후 송수하인 혹은 그 대리인이 해관통관에 필요한 기간을 말하고, 수입화물의 통관기한은 운송수단의 입항신고일부터 14일 이내이며, 중계운송은 운송수단의 입항신고일 혹은 지정도착지에 운송된 후 14일 이내임
- 수입화물의 수하인 혹은 그 대리인이 규정 신고기한을 초과하면 일정액의 체납금을 납부해야 함
 - 해운, 항공운수, 도로운송 방식의 수입화물의 체납금 징수기간은 운송수단의 입항 신고일부터 15일이 되는 시점에서 수입통관의 종료일까지임
 - 중계운송화물은 운송수단의 입항신고일 혹은 화물의 지정도착지 도착일부터 15일이 되는 시점에서 수입통관의 종료일까지임
 - 체납금은 통과신고일도 포함하여 일단위로 계산하고, 체납금의 징수액은 1일당 수입화물 도착항인도가격(CIF)의 0.5%이며 최저액은 10위안임

3) 환급규정관련 정보 획득의 어려움⁵⁵⁾

- 환급규정과 절차에 관한 정보는 현지어로만 제공되고, 변경사항에 대한 통보가 없어 업체들이 혼란을 겪음
 - 외국투자기업의 수출규모가 중국 전체 수출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증치세 환급규정 및 절차가 모두 현지어로 되어 있음
- 이와 같은 수출환급률 정책조정에 따라 기업의 해당수출품목 환급률이 폐지되는 경우, 동일 HS 4단위하의 8단위 코드의 전체 품목에 대한 환급률이 동일하기 때문에 수출물품의 실제분류코드와 다른 코드로 계속 수출신고를 하던 기업들은 피해를 입게 됨

55) 한국조세연구원(2011), KOTRA(2011)에서 발췌

- 자주 변경되는 수출증치세 환급률 정책에 대비하여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수출입 업체는 해관에 수출입 신고 시 해당 제품을 정확한 HS 코드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수시로 환급률의 변화를 모니터링해야 함

- 이미 수입관세를 납부한 화물이 품질이나 또는 규격상이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원상대로 화물을 재반출할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 서면형식으로 해관에 사유를 설명하고 세금납부증명서와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함

4) 이중 세관검사⁵⁶⁾

- 발취 검사를 실시한 물품에 대해 추후 전량검사를 재실시하는 이중세관 검사로 인해 납기 지연 및 비용 상승문제가 발생함

- 검사는 통관신고업체의 신고접수 후 수출입화물의 성질, 원산지, 화물의 상태, 수량, 금액 등의 신고내역과의 일치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 진행하는 해관절차를 말함⁵⁷⁾
 - 수출입화물의 실제상황과 통관신고서 등 서류신고내역의 일치성에 대한 검사확인을 통해 서류심사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누락, 허위, 사기 등 밀수, 위법행위 및 기타 문제를 실질적으로 확인함
 - 화물검사를 통해 서류심사과정에서 제출된 의문사항을 재확인하여 세금징수, 통계 및 사후관리를 위한 감독근거를 제공함

- 해관은 실제 경험 및 현장감독에 소요되는 인력, 물자, 장소 등 조건에 근거하여 전수 검증, 추출검사, 외형검사 등의 검사방식을 채택함⁵⁸⁾
 - 화물검사는 일반적으로 해관의 감독지역 내 항만, 기차역, 공항, 우체국 혹은 기타

56) KOTRA(2008)

57) KOTRA, 『최신 중국 통관제도 해설』, 2002

58) KOTRA, 『국가정보(중국)』, 2010

해관감독장소에서 진행됨

- 하지만, 검사와 관련된 공식적인 규정이 없이 세관원 자체 판단하에 임의로 정하기 때문에 발취검사를 한 물품에 대해서도 전량검사를 재실시하는 등 이중검사의 애로 사항이 발생함
 - 이런 경우는 비싼 원자재 통관시 흔히 발생하며, 세관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 필요 자재량보다 많이 수입됐다고 생각할 때에도 검사 강도를 다르게 적용함
 - 원자재의 경우 5~10%만 검사하는 데 반해, 설비는 100% 검사하고 통관수속이 완료된 후에도 각 공장의 관할지 세관에서 재통관 수속이 진행됨
 - 지역과 세관원에 따라 검사기준이 다름

5) 관세부과 기준가격 비공개⁵⁹⁾

- 일부 제품의 경우, 과소평가(under value) 및 덤핑 방지를 위해 세관이 정한 가격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함
- 중국 해관은 「공식가격에 따른 수입화물 과세가격 심사결정에 공포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고 시행함
 - 중국은 최근 몇 년간 텐진항을 통해 수입된 원유, 석유화학 제품, 야금원료, 대두 등에 대해 공식가격을 책정해 관세를 부과한 바 있음
- 수입화물이 규정에서 지정한 ‘수입화물 가격책정 공식 상품리스트’ 내의 제품일 경우 공식가격 계약을 체결한 후 10일 이내에 반드시 수입지역 직속해관에 계약문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해관은 화물 수입신고 시 결산가격이 가격책정 공식에 따라 확정됐을 경우 결산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심사한다고 발표함
 - 결산가격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납세의무자는 해관에 세금담보금을 납부한 후

59) KOTRA(2008)

화물을 수취할 수 있으며, 결산가격이 확정된 후 해관에서 결산가격에 기초해 과세가격 심사를 시행함

〈표 II-13〉 가격책정 공식 대상품목

순서	품목	HS CODE
1	대두	12010091
2	철광사 및 철광사 정광	26011110, 26011120, 26011190 26011200
3	구리광사 및 구리광사 정광	26030000
4	석유원유 및 아스팔트 광물의 원유	27090000
5	기타 디젤유 및 기타 연료유	27101929
6	5-7호 연료유	27101922
7	액화 프로판	27111200
8	액화 부탄	27111390
9	액화 프로판, 액화 부탄 혼합물	27111200 혹은 27111390
10	산화알루미늄(제련급)	28182000
11	벤젠	29022000
12	메틸벤젠	29023000
13	파라자일렌(P-Xylene)	29024300
14	스티렌(Styrene)	29025000
15	Isooctyl Alcohol	29051600
16	1, 2-에틸렌글리콜(1, 2-Ethylene Glycol)	29053100
17	테레프탈 산	29173610
18	아크릴로니트린	29261000
19	순MDI(메틸렌 디 이소시아네이트)	29291030
20	중합MDI	38249040
21	전해정련동	74031100
22	비합금알루미늄	76011010, 76011090

자료: KOTRA(2008)

기준가격제란 세관에서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가격을 중심으로 과세가격을 평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세관이 임의로 정한 가격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상업송장이나 실거래가격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도 일체 인정을 해주지 않음

- 기준가격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세 산정기준을 질의해도 이에 응하는 경우는 없으며, 세관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통관 물품의 억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됨

6) 보세운송 불허

- 일부 품목의 경우 보세운송을 불허하고 도착 항구에서 통관을 강요해 상당한 경비 및 시간이 소요됨
 - 관련 분야(품목) 및 종류는 자동차, 폐기물(동물 폐기물, 야금·제련 폐기물, 나무·나무제품 폐기물, 방직품 폐기물, 금속 및 금속제품 폐기물, 각종 폐금속·폐전기제품, 폐운송설비, 특수용도 수입폐기물, 폐플라스틱 부스러기 등), 화공품(화학무기 제조가능 감시대상 화학품, 오존층 파괴물질, 화학무기 주요성분, 화학무기원료, 독성물질 제조용 화학품, 염화나트륨 등) 등임
- 위의 품목의 보세운송이 불가능해 상당한 비용과 시간 소요되며, 자동차는 보세운송을 불허하고 대련항, 천진신항, 상해항, 황포항, 만주리항, 심천항(深圳皇崗), 아라산구(阿拉山口) 등 7개 도착 항구에서 직접 통관하게 함

3. 소결

- 중국은 자국 산업과 기업의 보호를 위해 수입규제, 기술무역장벽, 위생 및 식품위생 조치, 통관관련 규제 등 높은 비관세장벽을 유지하여 왔음
 - 중국은 한·중 FTA 논의에서 자국의 농산업과 범용 제품의 비교우위를 이용하여 수출증대효과를 기대하면서도 한국에 비해 비교열위 부문인 서비스·투자·지재권 부문에서 자유화 수준이 높은 FTA가 발효될 경우 자국 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음⁶⁰⁾

- KOTRA(2011)⁶¹⁾는 중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사례를 검증 분석하면서 비관세장벽 관련 국제무역규범 위반 사례로 다음과 같이 검증하여 발표하였음
 - 이는 중국의 다양한 비관세 조치들이 국제규범 상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한·중 FTA 협상 과정에서도 이러한 비관세 조치들은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로 인식됨

〈표 II-14〉 중국의 잠재적인 WTO 위배사례(비관세장벽 관련)

순서	산업	국제무역규범 위반 사례
수입 및 수출금지	자원	광물 자원에 대한 수출 금지 및 제한조치
	농업	락파토민이 포함된 돼지고기 수입 금지 조치
	농업	수입 육류 및 가금류 내에 살모넬라균·리스테리아균 및 다른 병원균 검출에 대해 허용치 제로(Zero Tolerance Ban)를 부과
수입허가제	의료	의료 기기에 대한 수입허가 장기간 소요
	전기전자	CD복제용 생산설비 수입 모니터링 제도 실시
	기계	중고 기계, 전자 설비의 수입금지 조치
기타 비관세조치	의료	수입의약품 심사에서 중국 자체규정 약전(藥典)만 적용
	화학	신규 화학대체물질 규제
	화학	화장품 수입절차(라벨심사·제품검역포함)에 따른 어려움
	자동차	수입자동차의 통관지 제한
	의료	수입약품의 통관지 제한
	산업전반	수입품에 대한 라벨링 부착규정에 따른 어려움
	임업	목재포장재의 열처리 증명서에 대한 과도한 요구조건

자료: KOTRA(2011)에서 발췌 및 재구성

- 이와 같은 비관세장벽은 무역정책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환경이나 건강·의료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한·중 FTA 논의의 진전을 위해서는 양국간 규제의 차이점과 극복방안에 대

60) 최병일 외, 「한·중 FTA 협정, 정교하고 치밀하게 접근해야」, KERI 정책제언, 2012

61) KOTRA, 『주요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사례 검증(미국, 인도, 중국)』, 2011

해 심도 있는 검증과 논의가 필요함

- 수입규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비관세장벽을 유지하고자 하는 입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협상 시 이러한 중국의 상황에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절충시키는 것이 필요함
- 기술무역장벽과 관련해서는 대중(對中)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고, 대중국 시장진입 철폐 및 완화를 한·중 FTA의 핵심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각종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등이 무역 및 시장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함⁶²⁾
- 위생 및 식품위생 조치와 관련해서는 양국간 현안의 차이를 감안하여 한·중 FTA에 서는 조화, 투명성, 위험평가 등의 원칙을 강조한 WTO의 SPS 원칙을 준용할 필요가 있음⁶³⁾
- 통관 관련 규제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국제규범상에서도 문제가 있는 조치들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향후 협상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의견을 개진하여 이 분야의 협상 의제를 선점하여 이끌어 가는 것이 필요함

62) 정환우(2012)

63) 정환우(2012)

Ⅲ. 중국의 무역 원활화 논의

- 이 장에서는 통관절차의 간소화와 국제적 조화에 관한 국제표준을 중심으로 중국의 관세행정 개혁 방향과 국제 규범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고자 함
 - 양국이 FTA 협정문에 규정한 통관절차와 관련된 공통된 국제규범을 살펴보고 향후 행정협력의 공통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하고 「세관법」 개정을 통해 사실상 관세행정의 개방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앞 장에서 살펴본 비관세무역장벽을 상쇄할 수 있는 양국의 공통 기준이 필요함
 - 통관관련 국제규범에 따라 관세기구의 통폐합, 물류흐름과 관련된 각종 제도의 개선,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 구축 등 통관물류체제 개혁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⁶⁴⁾

- 양국이 FTA에서 규정하고 공통으로 참여하고 있는 다음의 국제규범 또는 협상안을 기준으로 검토하였음
 - 개정교토협약: 주로 WTO 무역 원활화 논의 시작 이후 체결된 FTA에서 포함되고 있는 무역 원활화(Trade Facilitation) 장(Chapter)에서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 SAFE Framework: 한·중·일 FTA공동연구에서 위험관리 기준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AEO 체제를 명시한 협약
 - WTO 무역 원활화 논의: 양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FTA 무역 원활화 장의 항목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음

64) 김석민, 『WTO무역 원활화 논의에 따른 중국의 통관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 2007

1. 개정교토협약

가. 개정교토협약⁶⁵⁾

1) 개요

- 세관절차의 단순화와 조화를 통한 무역확대를 위하여 교토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이 1973년 교토에서 개최되었던 관세협력이사회(CCC; Customs Cooperation Council) 총회에서 채택되었음
- 21세기의 현대화된 효율적인 세관절차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WCO는 1994년부터 교토협약의 전면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1999년 6월 ‘개정교토협약(Revised Kyoto Convention)’을 마련함⁶⁶⁾
 -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물품신고서·부속서류의 표준화 및 간소화,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에 대한 특별통관절차, 정보기술의 최대 활용, 위험관리 및 최소 세관통제, 심사통제 및 합동검사, 무역업계와 협력을 기본원칙으로 함
 - 전자방식에 의한 물품신고서 제출, 소액 물품에 대한 면세, 업무시간외 통관 허용 등을 도입함으로써 신속한 세관검사 및 통관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함
 - 위험관리 및 심사통제와 같은 현대적 기법의 채택과 정보기술의 사용 극대화를 도모
- 개정교토협약은 개정의정서, 기존협약, 일반부속서 및 10개의 특별부속서로 구성됨
 - 개정교토협약은 특별부속서에 대해서만 유보가 가능하고, 일반부속서에 대해서는 유보가 불가능하도록 규정함
 - 개정의정서(Protocol of Amendment)에는 개정취지, 의정서 수락 및 발효조건 등에 관해 규정

65) 한국조세연구원, 『주요국의 통관제도 및 개정교토협약 유보사항 검증』, 2009 일부 발췌

66) 2006. 2. 3. 발효, 2012년 6월 현재 79개국 가입

- 협약본문(Body of The Convention)은 의무적 수락사항으로 협약의 가입과 운영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함
 - 일반부속서는 모든 가입국이 반드시 수용해야 할 핵심적인 사항을 담고 있음
 - 특별부속서는 특별한 세관절차만을 한정적으로 규정하며, 10개의 각 특별부속서는 다시 1~5개씩의 장으로 된 총 25개의 장(chapter)으로 구성되어 장별로 수락이 가능함
 - 이행지침(Guideline)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협약의 구성 부분은 아니지만, 협약 각 조문에 대한 해설과 대표적 적용사례 등을 제시함으로써 협약의 해석과 적용을 위한 중요한 협약해석의 근거가 될 수 있음
- 개정교토협약에 가입하기 위해 협약본문과 일반부속서 전부를 반드시 수락해야 하며 특별부속서는 장(chapter)별로 가입국의 필요에 의해 가입할 수 있는 선택적 수락사항임
- 일반부속서의 표준(standards)에 대해 유보가 허용되지 않으며, 특별부속서의 권고관행(recommended practice)은 유보가 허용됨
 - 개정교토협약 체약국은 매 3년마다 유보조항을 재검토하여 그 결과를 관세협력이사회(CCC) 사무국에 통지해야 함
 - 중국은 2000년 6월에 가입하였고, 우리나라는 2003년 2월 19일 14번째로 가입하여⁶⁷⁾ 가입 당시 개정 교토협약의 주요 내용을 국내법령에 반영하였음

67) 우리나라는 10개 특별부속서 25개 장 중 8개 부속서 14개 장에 가입

〈표 Ⅲ-1〉 개정교토협약의 구조표

협약의 구성	구조 및 주요내용	비고
【개정의정서】	- 개정이유, 발효 및 개정요건 규정 (협약 내용을 부록 1, 2로 규정)	- 9개 조항
부록 1. 【협약본문】	- 용어의 정의, 협약의 범위와 구조, 협약의 관리, 체 약당사국 등 규정	- 20개 조항
부록 2. 【일반부속서】	- 통관절차의 일반원칙 제1장. 일반원칙 제2장. 정의 제3장. 통관 및 기타 세관절차 제4장. 관세 및 제세 제5장. 담보 제6장. 세관통제 제7장. 정보기술의 적용 제8장. 세관과 제3자의 관계 제9장. 관세당국이 제공하는 정보, 처분 및 재결 제10장. 관세문제에 관한 이의신청	- 가입의무 사항 - 총 121개 조문 (36개월 내 이행해야 하는 107개 표준과 60개월 내 이행해야 하는 14개 과도기적 표준)
부록 3. 【특별부속서】	- 통관절차의 세부사항 규정 특별 A. 물품의 관세영역 도착(도착절차, 물품장치) 특별 B. 수입(내수용, 재수입, 면세) 특별 C. 수출(완전수출) 특별 D. 보세창고 및 자유지역 특별 E. 운송(보세운송, 환적, 연안운송) 특별 F. 가공(국내/국외가공, 환적) 특별 G. 일시수입 특별 H. 범칙행위(관세사범) 특별 J. 특별절차(여행자, 우편물, 상업용 운송수단, 선박용품, 구호물품) 특별 K. 원산지(원산지규정, 증명, 서류의 통제)	- 선택적 가입사항 - 총 393개 조항, 가입 시 36개월 내 이행
【이행지침 ⁶⁸⁾ 】	- 교토협약 해설지침으로 협약의 구성 부분이 아니 며, 구속력은 없음 - 협약 이행의 통일성과 해석의 신축성을 부여	- 실질적인 해석기준이 될 수 있음

자료: 이상협, 「개정교토협약 발효에 따른 WCO 개정교토협약의 주요내용 해설과 향후 영향 분석」,
『관세와무역』 2006. 1월호, p. 57, 일부 수정

68) WCO는 향후 협약개정 대신 이행지침의 개정으로 협약의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통관절차의 간소화
 - 세관은 최소한의 신고사항만을 요구
 - 외국 세관의 봉인 인정
 - 여행자 휴대물품에 대한 구두신고 허용

- 통관절차의 신속화
 - 담보제공에 의한 물품반출 허용
 - 업무시간외 통관 허용
 - 일반적인 우편물에 대한 세관통제 금지
 - 구호용 탁송품에 대한 우선적 통관

- 통관절차의 국제표준화
 - 표준화된 신고양식의 사용
 -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을 사용하는 컴퓨터 응용프로그램의 도입
 - 여행자 통관 시 특수통관제도 도입
 - 원산지 결정 시 실질변형 기준 채택
 - 통관 관련 분쟁발생 시 독립기관에 대한 불복청구권 허용

- 관세의 감면
 - 이사물품, 선물용품, 상업용 견본 등
 - 일정수량 이하의 담배, 술, 향수 등
 - 일시수입물품 등

- 최혜국 대우
 - 물품의 원산지국·행선지국에 상관없이 동일한 세관절차의 적용

- 정보기술의 이용
 - 전자적 수단에 의한 물품신고 허용
 - 전자이체에 의한 관세 납부

나. 중국의 검토사항

- 중국은 특별부속서 총 25개 장 중에서 2개를 수락함⁶⁹⁾
 - D1 보세창고 수락 및 권고관행 제9조에 대해 유보함
 - G1 일시수입 수락 및 권고관행 제16조 및 제21조에 대해 유보함

가) D1 보세창고 수락 및 유보사항

- 보세창고 절차라 함은 수입관세 및 제세의 납부 없이 세관통제하에 수입물품을 지정된 장소(보세창고)에 장치하는 세관절차를 의미함
- 중국은 가공무역수입화물, 보세화물 등을 세관 비준을 거쳐 1년의 기간 동안 보세창고에 보관할 수 있음
 - 가공수출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원재료 등 국가 규정상 면세하는 보세창고화물을 창고로부터 출고하는 경우 관세와 수입단계에 징수하는 세금을 면제함⁷⁰⁾
- 개정교토협약 권고관행 제9조: 내국세 등의 부과대상 또는 이미 납부한 물품으로서 수출이 예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동 제세의 면세 또는 환급이 가능하도록 추후에 수출될 것을 조건으로 보세창고에 반입을 허용함
- 보세창고에 반입되는 보세창고화물 등 다음의 화물은 세관 비준을 거쳐 출고수속을 처리할 수 있으며,⁷¹⁾ 재수출하는 경우에 출고수속을 통해 면제 또는 환급이 이루어짐

69) 한국은 D1 수락 및 권고관행 제7조 내지 제9조에 대해 유보, G1 수락 및 권고관행 제9, 19, 21, 22, 23조에 대해 유보함

70) 동 규정 제23조

-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
- 경내 보세구·수출가공구 또는 기타 보세창고로 조달하여 계속하여 보세감시관리를 실시해야 할 경우
- 가공무역수입으로 전환할 경우
- 국내시장 매출로 전환할 경우
- 세관에서 규정한 기타 상황

나) G1 일시수입 수락 및 유보사항

- ‘일시수입’이란 조건부로 수입관세 및 제세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고 일정한 물품을 관세영역에 반입할 수 있는 세관절차를 의미하며, 그러한 물품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수입되고 그 사용에 의한 정상적인 가치하락을 제외한 어떠한 변경도 없이 일정기간 내에 재수출이 예정된 것이어야 함
- 중국은 세관의 승인을 받아 일시 반입하여 6월 이내에 재반출하는 견품, 전시품, 공사차량 등으로 세관에 납부할 세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기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관세납부를 면제함⁷²⁾
 - 일시수입물품에 대한 면세는 법정감면에 해당함
- 권고관행 제16조: 요청이 있는 경우 제3자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고 일시수입으로 인한 제1수익자의 의무를 수락하는 조건하에 제3자에게 일시수입의 이익이전을 승인하도록 함
- 사후관리 기간 내에 감면세 신청인의 변경상황이 발생한 경우 권리의무의 승계인은 기존 감면세 신청인의 관할세관에 관련 상황을 보고하고 추가납부 또는 이전수속을 하여야 하나, 법정감면의 경우 감면세 신청 및 사후관리 절차가 요구되지 않음

71) 동 규정 제25조

72)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조례 제42조

- 권고관행 제21조: 일시수입 물품에 대한 현금담보는 재수출하는 경우 당초 수입세관이 아닌 다른 수출세관에서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 일시수입화물을 재수출하는 경우, 수출지 세관이 날인 교부한 수출신고서를 당초 수입지 세관에 제출하여 등록말소(核銷)해야 함

2. 국제무역의 안전과 원활화 표준에 대한 WCO Framework(SAFE Framework)

가. 개관

1) 개요

- 2005년 6월 WCO총회에서 표준규범으로 국제무역의 안전과 원활화 표준에 대한 WCO Framework(Framework of Standards to Secure and Facilitate Global Trade; 이하 'SAFE Framework'라 함)를 승인함⁷³⁾
 - 2001년 미국 9·11 테러 이후, WCO에서 국경안전에 대한 세관의 노력을 위해 2002년 6월 '무역공급망 안전과 원활화'에 관한 결의안(Resolution on Security and Facilitation of the International Trade Supply Chain)을 채택함
- 2005년 우리나라를 비롯한 157개국 회원국이 본 규범에 가입 후 36개월 이내(개도국은 60개월 이내, 최빈국은 84개월 이내)에 관련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의향서(Letter of Intent)를 제출함

73) 2007년 AEO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통합하고 2010년 공급망관리 가이드라인, AEO 이행지침, AEO Compendium 등을 통합한 SAFE Package를 구성, 2011년 6월 위험평가를 위한 데이터 항목을 부속서로 포함시켰음

- 이는 관세당국⁷⁴⁾의 자동화된 위험관리기법을 이용하는 국제규범으로서 최소한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 행정기관의 이행능력과 입법 권한에 따라 다음의 4가지 필수요소를 고려하여 이행함
 - 수출입 및 환적화물의 사전 전자신고 항목 통일
 - 보안 위협을 식별하기 위한 지속적인 위험관리
 - 고위험 화물 검사에 대한 세관당국 간 협력
 - 세관이 민간업체에 제공할 최소한의 공급망 안전 표준과 모범에 부응하는 이익을 정의

2) 주요 내용

- 국제무역의 안전 및 원활화를 위한 통합표준의 정립, 세관과 세관, 세관과 민간기업 간 협력강화를 추진, 민간 자율심사를 위한 AEO제도 등을 내용으로 함
 - 서문, 이익(Benefits-국가/정부, 관세당국(Customs) 및 민간업체(Business)), Pillar 1 세관간 협력 표준, Pillar 2 세관과 민간 간 협력표준, AEO 조건, 의무사항 및 혜택, 관세협력위원회의 결의안 등 총 6개 부문으로 구성됨
 - 각 표준은 이행을 위한 기술적 세부사항을 포함함

- Pillar 1 관세당국 간 협력표준은 고위험화물을 식별하기 위한 사전 전자정보를 이용하는 것으로 최신기술을 이용하여 화물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 요소로 아래와 같이 11개의 표준으로 구성됨
 - 화물을 선적하는 시점 또는 그 이전에 위험성 식별이 자동으로 이루어져야 함
 - 자동화된 정보교환을 위한 규정이 있어야 하며 시스템의 상호 운용이 가능해야 함

74) 관세당국(Customs)이라 함은 관세법령의 운영과 관세 및 제세의 징수에 대한 책임을 지고 또한 물품의 수입, 수출, 이동 또는 장치와 관련된 다른 법 및 규정의 적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정부기관을 의미함

〈표 III-2〉 SAFE Framework 관세당국 간 협력 표준

구분	내용
표준1	통합공급망관리(ISCM)의 적용
표준2	화물검사 권한의 부여
표준3	최신 검사장비의 구비
표준4	위험관리시스템의 확립
표준5	고위험화물 또는 고위험 컨테이너의 정의
표준6	사전전자정보 요구시 시스템 구비
표준7	합동 표적화 구축과 의사소통 메커니즘 제공
표준8	세관통제 ¹⁾ 이행조치의 통계화
표준9	안전평가를 위한 다른 관련기관과의 협력
표준10	고용인의 청렴성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구축
표준11	구출화물에 대한 수입국의 보안검사 요구

주: 1) 관세법령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관세당국이 적용하는 조치

- 각 관세당국은 개정교토협약, 통합공급망관리(ISCM; Integrated Supply Chain Management)⁷⁵⁾ 및 자국의 프로그램에 기초하여 Pillar 1을 표준화함⁷⁶⁾
- 개정교토협약은 일반부속서 6.7 표준에서 관세당국은 다른 관세당국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세관통제를 촉진시키는 상호행정지원협정(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agreements)의 체결을 모색하여야 함을 기본 원칙으로 제시함
 - 통합공급망관리의 이행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컨테이너에 적입하기 전 또는 운송수단에 적재되기 전에 수출지 세관에 전자정보 제출
 - AEO, 검사 등 상호인정 및 화물의 무결성 감독 절차에 대한 관세당국 간 협력
 - 세관의 통제를 벗어날 때까지 컨테이너 화물 봉인의 무결성 프로그램(Seal Integrity Program)을 적용

75) 국제적인 테러 및 범죄조직의 증가로 인한 위협의 증가에 대비해서 효과적이고 선진적인 세관과 민간의 협력, 국제무역의 원활화를 유지하고 안전확보를 달성하기 위해 결정한 WCO가입 관세당국을 위한 가이드라인

76) 송선욱, 「국제공급망 안전을 위한 세관간 협력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2권 제5호, 2007

- 모든 무역거래과정에서 수출입물품에 대한 총체적인 심사추적 관리를 가능하게 고안된 UCR(Unique Cargo Reference)의 적용
- 관세당국 간 정보 교환에 대한 법적 장치 마련
- 개정교토협약의 체약당사국에게 표준화된 필수 요구정보와 절차, 요구정보를 간소화하고 전자서류제출 등을 지원하는 CDM(Customs Data Model) 적용
- 무역에 관련된 다른 정부기관과 관세당국과의 상호협력 협정을 개발하여 무역 정보를 통합하기 위한 Single Window 구축

□ 개정교토협약의 일반부속서 표준 7.1, 6.9, 3.21, 3.18은 세관활동을 위해 전자상거래 기술의 이용을 포함한 정보교환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세관이 적용하도록 규정함

□ Pillar 2 관세당국과 민간 간의 협력 표준은 세관의 공급망관리에 민간부문을 참여시켜 자발적으로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를 보장하는 업체에 신속한 통관 및 실질적 이익을 부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6개 항목으로 구분

〈표 Ⅲ-3〉 SAFE Framework 관세당국과 민간 간 협력 표준

구분	내용
표준1	세관과 AEO업체는 적절한 보안기준의 결정, 문서화, 사후관리 등을 실행
표준2	물리적 접근통제 및 보안기준 마련 및 통제절차 수립
표준3	AEO업체의 혜택에 대한 인증 및 적합성을 부여하는 절차 구축
표준4	첨단장비를 사용하여 화물의 무결정 보장
표준5	긴급연락망 구축 및 의견교환
표준6	무역의 원활화 및 수출입관리의 보안을 극대화하기 위한 협력을 도모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자국 관세당국 또는 WCO 및 그에 상응하는 기관의 수출입공급망관리 기준에 따라 승인받은 국제무역 당사자를 말함

○ 우리나라는 관세당국이 수출입물류업체의 법규준수, 재무안전성, 내부통제, 안전

관리능력을 심사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하는 제도로 관세검증 제외, 수출입검사 생략 등 관세행정상의 혜택을 제공

나. 표준의 이행

- 중국세관은 1998년부터 세관 현대화를 위한 통관시스템 개혁 및 위험관리시스템 강화 전략을 추진하여 세관의 기능이 무역 원활화에 집중되고 있음⁷⁷⁾
 - 개정교토협약을 국내법에 수용하면서 세관감독과 원활한 운영 간의 조화, 관세담보, 사후심사 및 정보교환기술(ICT)을 적용하여 전반적인 관세 법적 체계를 현대 세관에 맞도록 개편함
 - 도착전 신고 및 통관, 무서류 통관, 품목분류 및 원산지에 대한 사전심사, 세관 변경 시스템의 도입, 위험관리에 기반한 선별검사 등의 국제적인 무역 흐름에 맞추어 새로운 통관절차를 시도함

- 중국은 SAFE Framework 관세당국 간 협력 표준 가운데 CDM의 적용, 싱글 윈도우 구축 등 통합공급망관리(ISCM)를 적용하고 있으며 사전전자정보 제출, 최신 검사장비 등 대부분을 이행하고 있음

- 중국은 미국과 CSI협정을 체결하여 수입하는 화물에 대해서도 '24 hour rule'을 적용하고 있음⁷⁸⁾
 - CSI(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컨테이너 안전 협정)는 미국이 자국으로 대량살상무기 등이 밀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2002년부터 미국행 수출화물의 적하목록 정보를 분석하여 우범 컨테이너화물을 선별하고 검사를 수행하는 제도임
 - 우리나라는 2003년 8월 부산항에 CSI사무실을 개설, 중국은 2005년 상하이 및 선전항에 개설함

77) Zhang Shujie and Zhao Shilu, The implication of customs modernization on export competitiveness in China, 2008

78) 이일재, 『AEO제도 확립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2010. 6.

- CSI를 체결한 국가의 세관당국은 제출받은 적하목록 정보를 자국에 파견된 미국 CSI팀에 전송하고 미국 CSI팀의 선별 절차를 거쳐 수출국 세관직원과 공동으로 화물검사를 실시함
- 해상 컨테이너화물은 적재 24시간 전까지 제출하는 등 사전 제출시기가 최소 24시간 전인 '24 hour rule'을 적용하며 이를 보다 강화한 것이 선적전 24시간 전까지 적하목록에 없는 추가항목을 미국 세관에 전송해야 하는 10+2 rule임

- 중국세관은 ICT 및 기타 현대 기술을 적용하여 3가지 'Es'로 구성되는 'e-customs'를 확립함
 - E-port⁷⁹⁾(싱글윈도우 시스템), E-processing(H2000 통관시스템), e-headquarters(HB2004 세관 국제행정시스템)

- 2005년 4월 EC-China Agreement on Customs Co-operation and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가 발효함에 따라 안전 표준, 세관감독 결과 및 AEO 상호 인정, 공급망관리의 최신 기술 사용, 물품의 인수시기 예측가능성 증대 등 부문에 대한 협력을 도모함

- 2006년 9월 EU와 최초로 대륙간 시범사업(China-EU Secure and Smart Trade Lane Pilot Project; SSTL)에 착수하여 전자통관정보의 교환을 공식적으로 시행하고 컨테이너에 포장 및 적재하기 24시간 전에 통관정보를 수취하기로 합의하여 사전정보교환을 수행하고 있음

- 세관 간의 효율적이고 영향력 있는 협력에 의한 무역 원활화를 위해 중국 세관은 다음의 '3M 프로그램'을 관세행정의 주요 기조로 하여 이행 중임
 - Mutual Recognition of Control Results: 양 관세당국은 세관감독의 중복을 피하고 행정 및 영업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독 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 중국과

79) 자료교환, 통관절차 이행, 제출서류 보관 및 생성, 표준 변경, 문의 및 통계 제공, 전자납부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우리나라 관세청의 Uni-pass와 같은 중국의 싱글윈도우시스템

EU 시범사업 및 AEO MRA체결이 그 예임

-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양 관세당국이 관세법령 제정, 무역 질서 및 수출입관리 우수업체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호 협력을 제공함
- Mutual Information Exchange: 주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관세법령을 웹사이트에 공표하여 정부기관 및 수출입업체에 국제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를 미리 인지하고 사전에 통관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

- 2005년 159개국⁸⁰⁾이 의향서를 제출하여 48개국⁸⁰⁾이 AEO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한국은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제도를 2009년 4월 관세법에 수용하였고, 중국은 2008년 4월 CACC(Customs Administration Classified Companies; 기업분류관리방법) 제도를 세관법에 도입하여 법규준수 및 안전관리 공인기준을 운영 중임
- 우리나라는 2012년 5월 세계 6위 수준의, 중국은 세계 3위 수준의 공인업체를 보유하고 있음
 - 미국 10,190개, EU 8,827, 중국 1,825개, 일본 459개

3. 무역 원활화에 관한 WTO 협상그룹

가. 무역 원활화 논의

1) 개요

- WTO(World Trade Organization)에서의 정의하는 무역 원활화란 국제무역 절차의 간소화와 조화를 말함
 - WTO체제와 국가, 지역 간 무역협정의 확장추세로 인해 관세장벽이 낮아지면서 물품이 한 국가로 반입되는 때에 요구되는 형식적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입수하는 것, 즉 상대국의 통관절차를 이해하고 접근하기 쉽도

80) 관세청, 「AEO공인업체 간담회」, 2011. 6.

록 하여 국제무역을 확산시키는 것

- 비관세장벽의 철폐가 수입허가, 관세평가, 원산지규정 등에 관한 협정에 준하여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소극적인 의미인 반면 무역 원활화는 무역에 관련된 모든 절차, 관행 및 인프라를 각국이 서로 간소화하고 일치 내지 조화를 이룸으로써 무역을 촉진하자는 적극적이고 호혜적인 의미라 할 수 있음⁸¹⁾

□ 무역 원활화에 관한 WTO협상은 주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는 수출입 관련 행정을 체계화, 투명화, 예측 가능화, 동조화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을 지향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강구함⁸²⁾

- GATT 규정 제5조(통과의 자유), 제8조(수출입 절차 및 수수료), 제10조(무역규정의 공표 및 시행)을 명확히 하고 발전시켜 상품의 이동·출하·통관이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협정을 만들고, 국가의 세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함
- 또한 개발도상국에 완화된 의무 또는 단계적인 이행방안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개도국 우대(S&D: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와 개도국들의 제한된 자원을 보충하기 위한 공여국의 지원(TA/CB: Technical Assistance and capacity building)을 포함함

□ 2004년 8월 1일 무역 원활화 협상을 공식적으로 출범한 이래 현재까지 최종 협정을 위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⁸³⁾

- 중국은 남은 협상안의 신속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적극 참여하되,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입장임
 - 2008년 7월 각료회의에서 모든 회원국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회원국 간의 의견

81) 서백현, 「자유무역지대내 무역 원활화를 위한 전자무역의 역할과 과제」, 『관세학회지』 제6권 제3호, 2006

82) 이호열, 『무역 원활화 협상』, 2009

83) 1996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WTO 제1차 각료회의에서 상품이사회가 무역 원활화 논의를 개시한 이후 2004년 7월 홍콩에서 소위 'July Package'의 부속서 D에서 협상의 기본 방향을 정하고 본격적으로 DDA(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에 공식적으로 합류함. 2005년 12월 홍콩 제6차 WTO 각료회의에서 협상 추진방향을 확정하였고, 집약문서(Compilation document) 회람, 회원국 제안서의 회람, 설명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재검토 및 논의를 통하여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차이를 조정하는 데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고 의견 단일화를 무리하게 주도하지
않음

- 협상은 실패로 끝났으나 모든 회원국들은 중국의 역할을 매우 잘 인지함
- 2009년 말 제7차 각료회의에서 다자간 무역 시스템의 발전과 강화를 요구하며
모든 회원국들에게 ‘규제완화, 진보 및 개혁’을 위한 긍정의 메시지를 장려함⁸⁴⁾
- 우리나라는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 물품통관시간(time release study), 위
험관리(risk management) 등 3개 분야 제안서 제출 및 제안서 통합작업에 주도적
으로 참여하고 있음⁸⁵⁾

2) 무역 원활화 논의의 주요 내용

- 무역 원활화 협상의 내용은 크게 1) GATT 제5조, 제8조 및 제10조의 개선과 명료화
및 세관 간 협력, 2) 개도국 지원 등의 수평적인 논의 두 분야로 나뉨
 - 최근 통합협정문 초안(Draft Consolidated Negotiating Text; TN/TF/W/165, 7
October 2011)은 Section I 15개 조항 및 Section II 10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음
- GATT 제10조 무역규정의 공표 및 시행(Publication and Administration of Trade
Regulations): 공표 및 정보접근성, 사전공표 및 협의, 사전심사 불복절차 및 공정하
고 투명한 무역을 위한 기타 수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상세히 논의 중임
 - 무역 관계법령, 사법상의 판결 및 행정상의 결정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공표하여
야 함
 - 무역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공표하는 정보의 내
용, 공표 방법, 공표 대상, 문의처(제1조)
 - 행정조치는 위의 정보가 공표된 후에 시행되어야 함
 - 행정조치의 공표일과 발효일 간의 기간, 입안예고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 및 협의(제2조)

84) WTO, "Trade Policy Review Report by China," 26 April 2010(WT/TPR/G/230)

85) <http://www.wtodda.net>

- 관세 관련 행정조치를 즉시 검토하고 시정하기 위해 관련 중재기관의 절차를 확립하고 요구된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사전심사의 대상 및 절차, 불복청구권, 불복절차, 동식물검역에 관한 경보시스템, 검증대상 물품 유치, 검증 절차(제3조 내지 제5조)

- GATT 제8조 수출입 관련 수수료 및 절차(Fees and Formalities connected with Importation and Exportation): 수출입 관련⁸⁶⁾ 수수료 및 과징금은 통관절차에 필요한 정부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금액, 수와 종류를 제한하고 수출입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서류 요건을 간소화하는 필요성을 인정함
 - 수수료 및 과징금의 산정기준, 공표 및 정기적 검토 의무와 벌칙의 양벌규정 배제, 부과기준, 감경조치, 기산일 명시 등(제6조)
 - 도착 전 절차의 확립, 과세확정, 제세납부와 물품 반출의 분리, 공통의 위험관리시스템, 수입신고수리후심사, 평균반출시간 측정절차 확립 및 공표, 공인업체지정 요건, 긴급반출 신청 요건 및 긴급반출 절차(제7조)
 - 영사관 거래 요구 금지(제8조)
 - 수출입 및 통과화물에 관한 국경기관 간 협력의 범위, 환적 또는 수송중 물품의 통관 절차(제9조)
 - 수출입 통관 절차와 서류요건 검토 범위, 절차와 서류요건 간소화, 국제표준 적용, 단일 서류 접수 창구 도입, 선적 전 검사 폐지, 관세사 이용의무 폐지, 공통된 통관 절차, 통관절차와 제출서류 단일화, 반송 및 폐기 절차, 일시수입/보세가공 허가 및 승인(제10조)

- GATT 제5조 통과 자유(Freedom of Transit): 통과운송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수수료 및 과징금 부과를 제한하여야 함
 - 통과운송의 요건, 통과운송에 부과되는 수수료 및 과징금의 범위, 통과운송 절차, 국경 기관 간 협력(제11조)

86) 영사사무, 수량제한, 허가, 외환관리, 통계사무, 서류작성 및 증명, 분석 및 검사, 검역, 위생검사 및 소독(GATT 제8조 4항)

- 기타 수출입 관련 국경기관의 행정조치를 원활히 하기 위한 협력방안 및 위원회 설립을 의무화 함
-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정보요청 및 교환 절차, 정보 요구 내용, 비밀유지, 관세 위원회 통지, 권리 구제 절차(제12조)
 - 무역 원활화위원회의 설립요건 및 의무, 무역 원활화에 관한 국내위원회 설립의 무, 개발도상회원국의 지역 간 협력, 기타 관련 쟁점 인지(제13조 내지 제15조)

〈표 Ⅲ-4〉 무역 원활화 협상 주요 내용

구분	조항
무역규정의 공표 및 시행	1. 통관 관련 규정 공표(Publication and Availability of Information)
	2. 사전 공표 및 협의(Prior publication and consultation)
	3. 사전심사(Advance Rulings)
	4. 불복 절차(Appeal [REVIEW] Procedures)
	5. 공정성·비차별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타 조치(Other Measures to Enhance Impartiality, Non-discrimination and Transparency)
수출입 관련 수수료 및 절차	6. 수입·수출 관련 수수료 및 비용 disciplines on Fees and Charges Imposed on or in connection with Importation and Exportation)
	7. 물품 통관·반출(Release and Clearance of Goods)
	8. 영사확인절차(Consularization)
	9. 국경기관간 협력(Border Agency Cooperation)
	10. 수출·수입 관련 형식절차 (Formalities Connected with Importation and Exportation)
통과의 자유	11. 물품 통과 관련 사항(Freedom of Transit)
기타	12. 세관 간 협력([Customs Cooperation Mechanism for Trade Facilitation and Compliance][Customs Cooperation])
	13. 무역원활화위원회의 요건(Institutional Arrangements)
	14. 무역 원활화에 관한 국내위원회 (National Committee on Trade Facilitation)
	15. 전문/기타 관련 쟁점(Preamble/Cross-cutting Matters)

자료: 통합협정문 초안(Draft Consolidated Negotiating Text; TN/TF/W/165, 7 October 2011), http://www.wto.org/english/tratop_e/tradfa_e/tradfa_negoti_docs_e.htm,

나. 중국의 제안 내용

- 무역규정의 공표 및 시행, 무역 원활화, 위험관리에 대한 제안을 제기하였음⁸⁷⁾
 - 2005년 GATT 제10조 무역규정의 공표 및 시행의 명확화 및 개선에 관한 제안 (PROPOSAL ON CLARIFICATION AND IMPROVEMENT OF GATT ARTICLE X; TN/TF/W/26, 21 March 2005)
 - 2005년 무역 원활화의 요구사항 및 우선순위 확인에 관한 제안(A PROPOSAL ON IDENTIFYING TRADE FACILITATION NEEDS AND PRIORITIES OF MEMBERS; TN/TF/W/148, 28 April 2005)
 - 2006년 무역 원활화 절차에 관한 제안(A PROPOSAL ON THE PROCESS OF TRADE FACILITATION; TN/TF/W/82, 31 March 2006)
 - 2009년 위험관리에 관한 제안(PROPOSAL ON RISK MANAGEMENT; TN/TF/W/164, 11 November 2009)

- 공표해야 하는 무역 규정(Trade Regulations)은 물품의 무역거래에 적용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 법령 및 기타 처분과 국경 간의 거래에 관련된 절차, 수수료 및 과징금에 관한 기타 정보를 포함해야 함

- 공표의 방법은 공식적으로 지정되고 관보, 신문, 인터넷 등과 같이 접근이 용이한 매체를 통하여 공표되어야 하며 인터넷을 통한 공표가 최우선임

- 개인, 기업 또는 WTO 회원국이 무역정책 관련 법령 및 행정조치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하나 이상의 문의처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함
 - 요청 접수 후 30일 이내, 늦어도 45일 이내에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개발도상국의 일원으로서 인터넷 등 정보기술의 현대화가 뒤쳐진 개발도상국에

87) 중국이 WTO에 제출한 제안공보(communication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가운데 문구 수정에 관한 제안은 배제함

문의처 지정에 필요한 경험을 공유하고자 함

- 법령 및 행정조치가 공표된 이후 회원국이 서면으로 권고의견을 제시하고 검토할 합리적인 기간이 필요함
 - 법령 및 행정조치가 공표되고 시행되기 전까지 수출국이 적절한 준비를 취하도록 적어도 30일 이상의 기간이 필요함

- 무역 원활화 현황, 요구사항 및 우선순위의 평가수단은 지역 경제발전 단계의 다양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무역 원활화 규정 수립, 개도국우대 및 개도국들의 제한된 자원을 보충하기 위한 공여국의 지원에 반영되어야 함

- 개도국의 이행능력과 이행불가 수준에 따른 과도기의 적용, 기술 및 자원 지원을 위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무역 원활화위원회에서 협의 또는 중재절차를 마련해야 함

- 위험관리가 무역 원활화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임
 - 고위험 물품의 서류심사 및 물품검사를 강화하고 저위험 물품의 통관을 촉진하여야 함
 - 수출입 및 환적에 대하여 도착 전 신고, 사후 심사, AEO, 과세가격, 품목분류, 원산지 위험관리의 적용범위로 함
 - 회원국 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개정교토협약 및 WCO 위험관리가이드라인(WCO Risk Management Guideline)과 같은 국제표준 및 관행을 참조하여야 함

4. 소결

- 중국은 개정교토협약 가입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달리 특별부속서의 일부만 수용하고 있음
 - 개정교토협약의 강제규정 일반부속서에 따라 국제적 수준의 법적 공조체제를 마

련하였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세관절차의 간소화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한 특별부속서는 거의 수락하지 않음⁸⁸⁾에 따라 국제표준을 기준으로 한 통관절차가 우리나라와 많은 부분에서 상이하다고 할 수 있음

□ 중국은 위험관리를 무역 원활화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보고, 관세행정의 변화는 이를 중심으로 하고 있음

- 중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세관법에 따라 세관이 통관심사를 통한 과세확정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관세행정에서 위험관리가 위주가 되고 있음
- 중국은 미국과 CSI협정 체결, EU와 세관상호지원협정의 시범사업 이행 등 SAFE Framework의 관세당국 간 표준을 비교적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음
- 또한 통합공급망 관리의 적용으로 세관의 위험관리의 자동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중국은 전자무역 인프라에 대한 이행능력은 갖추었으나 원산지 절차의 이행에 있어 통관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정보수집, 저장방법, 전송절차 등의 관세당국 간 협력이 반영되어야 함

- WTO 무역 원활화 논의에서 개발도상국이 전산화 및 자동화의 이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인프라 지원 없이는 양허이행은 요구되지 않음
- WTO 무역 원활화 협상에서 중국은 개발도상국으로서 기술지원, 이행 능력 개발 및 특별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입장임

□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제도가 일찍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MRA체결국은 없는 상태임

- 우리나라는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뉴질랜드(5개국)와 MRA⁸⁹⁾를 체결하여

88) 개정교토협약 가입국 가운데 개발도상국들은 대부분 특별부속서를 수락하지 않거나 미미한 수의 장을 수락한 상태임

89)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체결한 양 당사국의 AEO 공인업체는 체결국간 통관절차상의 동등한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2012년 현재 전 세계 17개의 MRA가 체결되었음

세계 2위의 다체결국가이며 중국은 2012년 5월 현재 AEO MRA체결국이 없는 상태임

– 우리나라는 중국 이외에 EU, 브라질, 아르헨티나, 인도, 러시아, 터키 등과 체결을 연구하고 있음

- 중국은 우리나라 외에 EU,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상대국과 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EU와 2012년 MRA 체결이 전망됨

IV. 중국의 FTA 통관규정 비교분석

- 이 장에서는 양국이 체결한 FTA의 통관규정을 비교의 방법으로 분석하고 향후 FTA 원산지 절차의 원활한 이행에 필요한 FTA 통관규정안에 대한 권고사항을 도출하고자 함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이 무역 원활화를 위한 국제협약의 가입국임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고 다양한 수출입관리 비관세장벽으로 인하여 협정관세 관련 절차의 지연 및 원활하지 않은 행정협력에 기인한 위험과 비용으로 한·중FTA의 관세철폐효과가 감소될 우려가 있음

- FTA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제반 절차와 행정협력의 이행에 관한 양국의 기존 규정을 분석하여 중국과의 협상 포인트를 찾아볼 필요가 있음

- 비교대상 FTA를 선정하고 통관절차를 규정한 각 FTA의 상품무역협정문 원산지 절차(Origin related Procedures), 통관 및 무역 원활화(Customs Procedures and Facilitation) 장(Chapter) 또는 의정서(Protocol)상의 각 조항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였음
 - 공통된 FTA 통관규정을 중심으로 비교하고 자국의 내국법령에 따른 관련 제도를 검토하였음

1. 중국의 FTA 현황 및 FTA 통관 규정

가. 중국의 FTA 현황

1) 중국의 FTA 체결 현황

-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경제적 안정성 확보와 2001년 WTO 가입 이후 개방 확대 요구로 인해 FTA에 대해 보다 적극적 입장으로 전환
 - 동아시아에서 이상적인 지역적 통합모델로 ASEAN+3(한국, 중국, 일본)을 기본 틀로 하고 있음⁹⁰⁾
 - WTO 가입 후 29개 국가와 16개 지역의 FTA를 체결한 국가와의 무역액이 이미 대외무역총액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⁹¹⁾
- 2012년 5월 현재 중국은 10건의 FTA(CEPA⁹²⁾, ECFA⁹³⁾포함)를 체결하고 발효한 상태임
- FTA 추진 단계별 현황은 다음과 같음⁹⁴⁾

90) 중국관세무역연구회, 『중국 FTA 추진현황 및 시사점』, 2010. 6. 11.

91) 중앙인민방송TV, 『해관총서』 최신통계, 2011년 4월

92)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93) 경제협력기본협정(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94) 송기찬, 「중국의 FTA 추진전략과 우리의 대응방안」, 2010. 6., 중국 FTA 영문 홈페이지 (<http://fta.mofcom.gov.cn/english/index.shtml>)

〈표 IV-1〉 중국의 FTA 추진 단계별 현황(2012년 5월 기준)

추진 단계	FTA 체결 상대국
발효	홍콩, 마카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¹⁾), 칠레, 파키스탄, 뉴질랜드, 싱가포르, 페루, 코스타리카, 대만
협상중	걸프협력회의(GCC ²⁾), 호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남아프리카 관세동맹(SACU ³⁾), 스위스, 한국
공동연구	인도, 한·중·일

주: 1)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싱가포르,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10개국)
 2) 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방,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6개국)
 3) 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 보츠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나미비아, 레소토, 스와질랜드(5개국)

자료: 외교통상부 한·중 FTA 홈페이지(<http://www.fta.go.kr/china/policy/china.asp>), http://fta.mofcom.gov.cn/channel/fta_kfchaxun.shtml

□ 중·홍콩·마카오 CEPA

- 2003년 중국 중앙정부는 홍콩 및 마카오 특별행정지역 정부와 각각 부속서 I, II, III, IV, V와 VII장을 각각 2004, 2005, 2006, 2007, 2008 및 2009년에 서명
- 일국양제(One country, Two systems) 체제하에 홍콩, 마카오 및 중국 간의 제도적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성공적인 요소로서, 1997년 이후 아시아 금융위기와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난 상황에서 중대한 돌파구로 작용함
- 중국정부가 홍콩, 마카오라는 분리된 관세영역과 서명한 FTA, 최초로 부분이 아닌 전체 협정이 시행된 FTA라는 의의를 가짐
- 2012년 수출입세칙 세목 8,194개 가운데 원산지가 홍콩인 1,734개의 품목, 원산지가 마카오인 1,259개 품목에 대해 관세 철폐

□ 중·ASEAN FTA

- 2004년 11월 상품무역협정에 서명, 2005년 7월 발효
 - 2002년 11월 6차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경제협력 기본협정에 서명
 - 2007년 1월 서비스협정에 서명, 같은 해 7월 발효
 - 2009년 8월 투자협정에 서명, 2010년 1월 발효

- 중·ASEAN은 인구 19억명으로 최대 단일 시장, GDP 규모는 약 6조달러로 EU 및 NAFTA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시장
- 천연자원의 확보, 시장다원화 전략 등 경제적 요소뿐만 아니라 ASEAN지역 선점 효과, 동아시아 통합의 주도적 위상 확보 등 정책적인 고려가 작용함

□ 중·칠레 FTA

- 2005년 11월 서명, 2006년 10월 발효
- 이 협정으로 양 당사국은 10년 이내 97%에 달하는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며 경제, 중소기업, 문화, 교육, 과학, 기술, 환경보호 등의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하게 됨
- 2008년 4월 서비스보충협정을 체결하여 중국은 컴퓨터, 경영자문, 부동산, 채굴, 환경, 체육, 항공운송 등 23개 분야에서 개방하고, 칠레는 법률,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컴퓨터, R&D, 부동산, 광고, 경영자문, 채굴 등 37개 분야에서 상대국에 확대 개방을 공조함

□ 중·파키스탄 FTA

- 2005년 4월 협상을 개시하여 2006년 11월 상품무역협정 서명, 2007년 7월 발효
- 2009년 2월 서비스 협정 서명, 2009년 10월 발효

□ 중·뉴질랜드 FTA

- 2008년 4월 서명, 2008년 10월 발효
- 중국이 OECD회원국인 선진국과 최초로 체결하고 서비스, 인력이동, 투자 규정이 협정문 본문에 최초로 모두 포함된 포괄적 FTA
- 중국과 뉴질랜드는 FTA 협상 이전에 2004년 5월 무역경제협력 기본협정(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을 체결하여 선진국 중 최초로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여 우호적 분위기를 형성하였음

□ 중·싱가포르 FTA

- 2008년 10월 서명, 2009년 1월 발효

- 이 협정으로 양 당사국은 중·ASEAN FTA 의 상품무역의 자유화를 촉진하고 서비스 무역을 보다 자율화하게 됨

□ 중·페루 FTA

- 2009년 4월 서명, 2010년 3월 발효
- 중남미국가와 체결한 최초로 체결, 중·뉴질랜드 FTA 이래 두 번째로 일괄타결 방식으로 채택된 포괄적 FTA 및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 라는 의의가 있음
 - 양 당사국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강화하고 경제 및 무역에 관한 협조체제를 보다 견고히 하고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보호주의 무역에 대응하는 개방무역에 일관된 자세를 입증하였음
- 상품무역 분야에서 중국은 즉시철폐 61%를 포함하여 최장 17년까지 단계별로 품목 수 95%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

□ 중·코스타리카 FTA

- 2010년 4월 서명, 2011년 8월 발효
- 코스타리카의 두 번째 최대교역국이 중국인 반면, 코스타리카는 중국의 중앙아메리카 국가 중 두 번째 최대 교역국임
- 최근에 양 당사국의 교역이 급증하면서 2007년 6월 외교적 우호관계를 확립하고 2008년 11월 FTA 논의를 공표함

□ 중·대만 ECFA

- 2010년 6월 서명, 2010년 9월 발효
- 석유화학, 기계 방직, 운송기구 등 대만의 539개 품목과 중국의 267개 품목에 대해 발효 후 2년 내 3단계에 걸쳐 관세를 인하하여 무관세화

〈표 IV-2〉 중국의 FTA 체결 현황(2012년 3월 기준)

FTA 체결 상대국	서명일	발효일
홍콩, 마카오 (CEPA)	(홍콩) 2003. 6. 29. (마카오) 2003. 10. 17.	2004. 1. 1.
ASEAN	(상품) 2004. 11. (서비스) 2007. 1. (투자) 2009. 8.	2005. 7. 2007. 7. 2010. 1.
칠레	(상품) 2005. 11. 18. (서비스) 2008. 4. (투자) (2009. 6. 협상개시)	2006. 10. 1.
파키스탄	(상품, 투자) 2006. 11. 24. (서비스) 2009. 2.	2007. 7. 1. 2009. 10.
뉴질랜드	2008. 4. 7.	2008. 10. 1.
싱가포르	2008. 10. 23.	2009. 1. 1.
페루	2009. 4. 28.	2010. 3. 1.
코스타리카	2010. 4. 8.	2011. 8. 1.
대만	2010. 6. 29.	2010. 9. 12.

자료: http://www.wto.org/english/thewto_e/countries_e/china_e.htm,
http://fta.mofcom.gov.cn/channel/fta_kfchaxun.shtml

2) 비교 대상 FTA

- 중국이 체결한 10건의 FTA 가운데 한국과 중국 양국이 공통으로 체결한 FTA, 선진국과 체결한 FTA 및 2012년에 발효된 최신 FTA로 나누어 비교대상을 한정함
 - 양국이 공통으로 체결한 FTA는 칠레, 싱가포르, ASEAN, 페루
 - 양국이 선진국과 체결한 FTA는 한국의 경우 한·EU FTA, 중국의 경우 중·뉴질랜드 FTA
 - 양국이 최근에 체결한 FTA는 한국의 경우 한·터키 FTA, 중국의 경우 중·코스타리카 FTA

〈표 IV-3〉 통관규정 비교 대상 FTA

구분	한국		중국	
공통	ASEAN (상품)	2006. 8. 서명, 2007. 6. 발효	ASEAN (상품)	2004. 11. 서명, 2005. 7. 발효
	칠레	2003. 2. 15. 서명, 2004. 4. 1. 발효	칠레(상품)	2005. 11. 18. 서명, 2006. 10. 1. 발효
	싱가포르	2005. 8. 4. 서명, 2006. 3. 2. 발효	싱가포르	2008. 10. 23. 서명, 2009. 1. 1. 발효
	페루	2011. 3. 21. 서명, 2011. 8. 1. 발효	페루	2009. 4. 28. 서명, 2010. 3. 1. 발효
선진국 상대	EU	2010. 10. 6. 서명, 2011. 7. 1. 발효	뉴질랜드	2008. 4. 7. 서명, 2008.10. 1. 발효
최근	터키 (상품, 투자)	2012. 03. 26. 가서명	코스타리카	2010. 4. 8. 서명, 2011. 8. 1. 발효

자료: http://www.wto.org/english/thewto_e/countries_e/china_e.htm,
<http://fta.mofcom.gov.cn/topic/chinaasean.shtml>,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나. FTA 통관 규정

1) 개요

- 크게 통관 및 원산지 절차와 사후관리에 관한 ‘원산지 절차’ 부문과 WTO 협상으로 점차 반영되고 있는 ‘통관 및 무역 원활화’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음⁹⁵⁾
- 원산지 절차는 원산지증명 절차, 원산지 검증, 행정협력 및 기타 규정으로 이루어짐
 - 원산지증명 절차: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소액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면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의무, 특혜관세의 신청, 특혜관세의 거부, 특혜관세의 수입 이후 신청(이하 ‘특혜관세 사후신청’이라 함), 원산지입증서류, 기록보관 요건
 - 원산지 검증: 검증, 전자증명 및 검증 시스템 개발, 벌칙, 비밀유지, 권한 있는 당국

95) 상품무역협정으로 한정지어 FTA별로 투명성, 협력 등의 기타 장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고려하지 않음

- 행정협력: 원산지위원회, 수정
 - 기타: 제3국 송장, 운송/보관 중 물품, 통일규칙, 인증수출자, 분할수입, 형식적 오류,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 자유지역
- 통관 및 무역 원활화는 국제표준, 통관 원활화, 권리구제, 행정지원 및 기타 규정으로 이루어짐
- 국제표준: 원활화, 관세평가, 품목분류
 - 통관 원활화: 전자서류자동화시스템, 공표 및 문의처, 위험관리, 특송화물, 상품의 반출
 - 권리구제: 사전심사, 재심 및 불복청구
 - 행정협력: 무역 원활화위원회, 세관 협력, 검토, 협의
 - 기타: 수수료 및 부과금, 선적 전 검사, 통관사후심사, 통관협력의 이행 등

3) FTA 통관규정 주요 내용⁹⁶⁾

가) 원산지증명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협정에서 규정하는 양식으로 한 consignment의 1개 이상의 물품에 대해 영문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은 FTA마다 달리 정함
- FTA 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수입자는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 원산지증명서, 상업 송장 및 기타 원산지 판정 필수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사본발급의 필요 문구, 소급발급, 제3국 송장 등은 각 FTA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원산지증명서의 면제(Exemption of Certificate of Origin):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거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

96) 본 보고서의 중국의 비교 대상 FTA 가운데 가장 구체적으로 규정을 세분화한 중·페루 FTA를 기준으로 함

지신고서를 원산지증명서로 갈음함

-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Authorized Bodies): 권한 있는 기관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으로, 당해 기관의 이름, 연락처 및 표준 인장(specimen of the stamp), 관련 서식 및 문서의 보안관련 특징의 세부사항을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시행 이전에 상대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 특혜관세의 신청(Claims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원산지 물품의 원산지를 표기한 수입신고서에 원산지증명서 및 직접운송원칙에 준수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특혜관세 적용 신청이 가능함
- 특혜관세대우의 거부(Denial of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의 정보에 오류가 있다고 믿을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원산지 검증이 시작되기 전 이를 정정한 원산지표기와 함께 그에 따라 발생하는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함
 - 이 협정에서 요구하는 원산지요건에 위반한 경우 특혜관세 적용은 거부될 수 있음
- 특혜관세대우의 사후신청(Refund of Import Customs Duties or Deposit):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이 유효한 원산지증명서 없이 수입된 경우 수입자는 초과하는 관세 등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각 FTA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당해 물품이 원산지 물품임을 신고하고, 환급 신청 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 및 수입 관세당국이 요구하는 기타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원산지 확인서류(Supporting Documents): 수출자 또는 공급자가 당해 물품을 획득한 절차를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회계장부기록, 사용된 원재료의 내국 법령에 따른 원산지 입증서류, 가공과정을 입증하는 서류 및 원재료의 원산지증명서
- 기록보관요건(Preservation of Certificate of Origin and Supporting Documents) :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수출자 및 관세당국은 발급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원산지 관

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함

나) 원산지 검증

- 검증(Verifications Process): 체결당사국 수입관세당국이 원산지 절차의 이 협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검증방법, 수출국 관세당국의 회신 기한 및 수입국 관세당국의 검증결과 통지 기한 등은 각 FTA마다 달리 정하고 있음
 - 회신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검증을 요청한 관세당국은 특혜관세 적용을 거부할 수 있음
 - 수입하는 때에 수입국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서의 대상 물품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가진 경우 관세 등을 납부한 후 물품을 반출하고 원산지 검증 결과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음
 - 권한 있는 당국이 동일 물품에 대해 이미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다고 판정한 물품에 대해서는 특혜관세 적용을 보류할 수 있음

- 전자증명 및 검증 시스템의 개발(Development of Electronic Certification and Verification System): 원산지 절차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한 전자증명 및 검증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하여야 함

- 벌칙(Penalties): 이 장 조항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양국 국내법령에 따름

- 비밀유지(Confidentiality): 상대국이 요청하는 경우 상대국이 제공하는 정보의 비밀유지를 준수하고 위반하는 경우 양국 국내법령에 따름
 - 사법절차의 사유로 공개되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기 정보를 제공한 당사자 또는 정부기관의 명시적인 허가 없이는 공개할 수 없음

- 권한 있는 당국(Competent Authorities): 원산지 검증을 수행하는 권한 있는 당국의 명칭을 규정

다) 행정협력(원산지 절차)

- 원산지위원회(Committee on Rules of Origin): 원산지 절차의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협력 촉진을 위하여 기타 위원회와 상호 협력함
- 수정(Modifications): 품목별 원산지규정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 양국은 특정 이유 및 연구결과와 함께 수정 제안을 제출할 수 있음

라) 국제표준

- 원활화(Facilitation): 통관절차와 관행이 WCO의 무역관련 합의문서,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교토협약 개정판) 및 개정 교토협약에 부합함
-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 1994년 GATT 제7조 및 관세평가협정 적용
- 품목분류(Tariff Classification):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적용

마) 통관 원활화

- 전자서류 자동화 시스템(Use of Automated Systems in the Paperless Trading Environment): 위험관리시스템, 도착 전 신고를 포함한 통관정보기술의 활용
- 공표 및 문의처(Publication and Inquiry Points): 통관사안의 문의처 지정 및 세부사항을 상대국 관세행정기관에 제공
 - 국내 관세법령 및 통관사안 문의절차를 공표(publish) 및 수정하는 경우 통지
- 위험관리(Use of Automated Systems in the Paperless Trading Environment): 고위험 물품 검사에 집중, 위험관리 응용기술 정보의 교환

- 특송화물(Express Consignments): 특송화물을 위한 별도의 신속한 통관절차를 도입 또는 유지
- 상품의 반출(Release of Goods): 물품 도착 48시간 이내에 반출 및 관세 등의 확정 이전에 반출

바) 납세자 권리

- 사전심사(Advance Rulings): 품목분류,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물품의 수입 전에 서면으로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 사전심사 결정을 공표할 수 있으며 잘못된 사실관계 및 정황에 근거한 결정의 경우 변경 및 취소 가능
- 재심 및 불복청구(Review and Appeal): 원산지 결정, 특혜관세대우, 통관절차에 관하여 독립된 사법기관의 행정 및 사법적 불복청구 권리를 보장

사) 행정협력(무역 원활화)

- 세관 협력(Customs Cooperation): 원산지 운영 및 세관문제에 관한 상호협약(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Agreement)에 따라 무역 원활화에 관한 장의 내용을 이행 및 운영
 - 양국은 관세법령 준수요건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
- 통관 절차의 검토(Review of Customs Procedures): 통관 절차의 간소화 및 무역 원활화를 위한 상호약정의 개발, 위험관리접근법의 성능, 효과를 주기적으로 검토
- 협의(Consultation): 양 관세당국은 언제든지 원산지 등의 사안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상품무역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음
 - 접촉 부서의 연락처를 교환

- 무역 원활화 위원회(Committee on Trade Facilitation): 국제 표준에 따른 관세 관행 및 표준을 도입하고 무역 원활화에 관한 장의 해석 및 운영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 및 미해결시 WCO에 회부함

〈표 IV-4〉 중국의 기체결 FTA 통관규정 유무 비교

		체결 상대국 (체결연도)	ASEAN : 상품 (2004)	칠레: 상품 (2005)	뉴질 랜드 (2008)	싱가 포르 (2008)	페루 (2009)	코스타 리카 (2010)
원산지증명	원산지증명서 발급		○	○	○	○	○	○
	원산지증명서의 면제			○		○	○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		○		○		○	○
	특혜관세의 신청		○	○	○	○	○	○
	특혜관세의 거부				○		○	○
	특혜관세 사후신청		○	○	○	○	○	○
	원산지확인서류			○			○	
	기록보관요건		○	○	○	○	○	○
원산지검증	원산지 검증		○	○		○	○	○
	전자증명/검증시스템			○			○	
	별칙		○	○		○	○	○
	비밀유지		○	○		○	○	
	권한 있는 당국				○		○	
원산지절차 행정협력	원산지위원회		○				○	○
	수정						○	○
국제표준	원활화				○		○	
	관세평가				○		○	
	품목분류				○		○	
통관원활화	전자서류자동화시스템				○		○	○
	공표 및 문의처				○		○	○
	위험관리				○		○	○
	특송화물				○		○	○
	상품의 반출				○		○	○
납세자권리	사전심사			○	○		○	○
	재심 및 불복청구			○	○		○	○
무역 원활화 행정협력	세관 협력			○	○		○	○
	검토				○		○	
	협약				○		○	
	무역 원활화위원회						○	

2. 한국과 중국의 기체결 FTA 통관규정 비교분석

가. 양국이 공통으로 체결한 FTA

1) 한·칠레 FTA, 중·칠레 FTA

- 원산지 절차 및 통관 및 무역 원활화는 한·칠레 FTA 제5장 통관절차(Customs Procedures), 중·칠레 FTA Chapter V Procedures Related to Rules of Origin에서 규정하고 있음
- 원산지 증명 방법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직접 발급하는 자율증명과 발급기관이 발급하는 기관증명으로 구분됨
 - 자율증명의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의 도입 여부에 따라 1)원산지증명서 또는 수출국 관세당국이 지정한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송장에 양 당사국이 동의한 원산지 문안을 기재하는 2)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할 수 있음
- 한·칠레 FTA는 자율증명방식으로 다른 FTA의 원산지확인서와 동일한 기능의 원산지통보서(Declaration of Origin)을 제출하여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음
 - 원산지통보서는 당해 물품의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가 작성하는 것으로 이를 기초로 하여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함
 - 자율증명 방식이지만 원산지 인증수출자제도는 적용하지 않음
- 중·칠레 FTA는 기관증명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 또는 소액물품에 대한 송장신고서를 제출하여 특혜관세를 적용받음
- 한·칠레 FTA는 원산지 검증과 사전심사절차를 중·칠레 FTA보다 매우 상세하게 규정함

가)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 원산지증명서는 협정문에 규정된 법정서식으로, 한 건의 consignment에 대해 영문으로 작성 및 서명하여야 하며, 한·칠레 FTA와 중·칠레 FTA는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한을 달리함
 - 한·칠레 FTA의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신고서는 서명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고 발효일 이전에 작성되고 서명된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을 인정함하며, 중·칠레 FTA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함
 - 중·칠레 FTA에서 중국은 사본을 인정하지 않고 'ORIGINAL'의 서명이 있는 원본만을 인정하며, 칠레의 경우 'ORIGINAL'서명이 있는 사본을 인정함

- 한·칠레 FTA는 수출자가 원산지 물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 작성할 수 있는 원산지 통보서의 발급 근거를 규정함
 - 수출자는 물품의 원산지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자신의 지식, 생산자의 서면진술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 및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통보서를 기초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할 수 있음

-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기관발급을 채택하고 있는 중·칠레 FTA만 규정함
 - 수출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수입국 관세당국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사용되는 표준 인장, 칠레의 'ORIGINAL' 표준 인장 및 권한 있는 당국의 주소를 제공하여야 함

나) 원산지증명서의 면제, 특혜관세의 신청 및 거부, 특혜관세 사후신청

- 중·칠레 FTA는 소액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 문안이 기재된 상업송장을 제출하여 원산지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한·칠레 FTA는 비상업용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면제함
 - 한·칠레 FTA는 미화 1,000달러 이하 또는 당사국 통화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업용 및 비상업용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면제하되 다만 상업용 물품에 대해서는 상업송장에 원산지증명 문안을 기재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 중·칠레 FTA에서는 미화 600달러 이하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업용 및 비상업용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증명 문안이 기재된 상업송장을 첨부하면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됨
- 수입자는 서면으로, 수입하는 때에 원본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특혜관세 사후신청은 중·칠레 FTA의 경우 관세납부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담보 제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칠레 FTA는 수입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함
- 중·칠레 FTA는 특혜관세 사후신청 제출서류로 원산지물품의 서면 신고서, 수출 전 또는 이후 30일 이내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원본 및 기타 상대국이 요구하는 관련 서류를 규정하나 한·칠레 FTA는 원산지증명서의 사본 및 기타 상대국이 요구하는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다) 원산지확인서류, 기록보관요건

- 양 FTA는 원산지확인서류를 다음과 같이 유사하게 규정함
 - 한·칠레 FTA: 수출된 당해 물품 및 기타비용에 대한 구매가격 및 지급자료,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간접재료를 포함한 모든 재료 및 기타비용에 대한 구매가격 및 지급자료 및 생산공정 설명서
 - 중·칠레 FTA: 원재료구매내역서, 예를 들어 내부 회계장부,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증빙서류, 원재료의 가공공정 설명서,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원산지증명서 등
- 양 FTA는 보관기간을 달리하여 한·칠레 FTA에서는 수출자 또는 제조자는 서명일로부터 수입자는 수입일로부터 최소 5년간 동안, 중·칠레 FTA에서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수출자 및 관세당국은 발급일로부터 최소 3년간 원산지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함

라) 원산지 검증, 전자증명 및 검증 시스템 개발, 벌칙, 비밀유지, 권한 있는 당국

- 중·칠레 FTA는 간접검증만을 채택하고 한·칠레 FTA는 간접검증, 직접검증 및 기타 합의하는 절차의 3가지 검증방법을 채택하여 양 FTA 모두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요청에 대한 회신기한은 명시하고 있으나, 검증결과의 통지기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음
 - 한·칠레 FTA의 검증절차는 1) 질의서 및 필수정보를 요청하는 간접검증과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을 방문하는 직접검증 및 3) 기타 양국이 합의하는 절차를 선택할 수 있음
 - 중·칠레 FTA의 수입국 관세당국은 검증요청과 함께 수입국 관세당국에 의심을 가진 이유를 표기하여 원산지증명서 사본 및 기타 입증서류를 송부함
 - 한·칠레 FTA의 검증방법 1)의 경우 질의서를 받은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신(1회 30일 이내의 기한 연장 허용), 2)의 경우 실사 계획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실사에 동의하거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60일 이내의 기간 또는 합의하는 기간 동안 실사를 연기할 수 있음
 - 중·칠레 FTA의 검증을 요청한 양 관세당국은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답변이 없거나 답변의 정보가 불충분하여 원산지정보의 진정성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 특혜관세 적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빠른 시일 안에(As soon as possible) 검증 결과를 통지받아야 함

- 한·칠레 FTA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의 적용, 검증의 효력 및 검증결과의 발효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상품의 수출당사국 영역 내에서 적용가능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을 적용하도록 함
 - 원산지 검증결과로 인한 원산지 판정의 효력은 수입자 및 수출자에 대한 통지를 함으로써 발생하고 판정의 유효일자 이전의 수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 각 당사자가 손해를 입증하는 경우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판정결과에 따른 조치를 연기함

- 직접검증의 경우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입회하는 참관인 2인을 지정하도록 허용
- 원산지 검증과 관련한 자료의 교환은 전자문서로 가능함
- 중·칠레 FTA는 양 당사국이 원산지증명서의 인증 및 검증 네트워크 시스템 (CVNSCO: Certification and Verification Networking System on the Certificate of Origin)을 본 협정 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실행하여야 하는 전자증명 및 검증시스템에 관한 의무를 명시함
- 중·칠레 FTA의 원산지 검증은 입증자료를 요구하고 수출자의 거래내역을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수출국의 관련 기관이 수행하고 한·칠레 FTA의 원산지검증 권한이 있는 기관은 관세행정기관으로 직접검증의 경우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입회하는 참관인 2인을 지정하도록 허용함
- 양 FTA의 당사국은 이 장 각 조항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양 당사국 국내 법령에 따라 벌칙을 부과함
- 양 FTA의 당사국은 이 장에 따른 영업비밀 유지를 준수하고 관련 위반은 내국 법령의 벌칙에 따름
 - 중·칠레 FTA의 영업비밀 공유 기관은 원산지결정, 관세 재정(revenue) 행정 및 이행기관으로 함
 - 한·칠레 FTA의 이 장에 따른 영업비밀은 세관 및 세수(revenue) 관련 기관 또는 사법 절차 중에 공유될 수 있음
- 마) 기타
 - 양 FTA는 제3국 송장을 인정하고 있으며 기재요건을 명시함
 - 한·칠레 FTA는 원산지국 원산지증명서의 'observations'란에 제3국에서 송장이

작성될 것임을 기재하고 최종적으로 송장을 작성하는 자의 성명, 회사명, 주소를 기재함

- 중·칠레 FTA는 원산지국 원산지증명서의 ‘remarks’란에 원산지국 제조자의 이름, 주소 및 국가를 기재하고 수하인은 중국 또는 칠레여야 함

- 중·칠레 FTA는 이 장의 각 조항을 준수하는 물품 및 이 협정의 발효일에 중국 또는 칠레에서 운송 중이거나 보세창고 또는 자유무역지역에서 일시적으로 보관 중인 물품에도 적용함

- 수입자는 수입 관세당국에 상기 일자로부터 4개월 이내에 원산지증명서와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입 관세당국은 이 일시적인 기간 동안 소급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

바) 공표 및 문의처

- 중·칠레 FTA는 국내 법령에 따른 원산지규정에 관한 관세법령 및 통관절차를 인터넷에 공표하고 원산지 관련 종사자로 하나 이상의 문의처를 지정하여 인터넷 또는 기타 수단으로 조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늦어도 2월 이전에 상대국의 수입통계를 최대한 빨리 교환함

- 이 협정 원산지 규정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관세당국 간에 연락처를 지정함

사) 사전심사, 재심 및 불복청구

- 양 관세당국은 품목분류 또는 이 협정에 따른 원산지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하여 서면으로 사전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관계와 정황에 근거하여 물품의 수입 전에 서면으로 원산지 사전심사결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한·칠레 FTA는 원산지 사전심사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조정가격 계산의 관세평가협약의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준수 여부, 비용계산 방식, 재반입 물품의 협정 요건 준수 여부 및 기타 사안을 그 대상으로 함

-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취한 경우 한·칠레 FTA는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칠레 FTA는 150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함
- 중·칠레 FTA는 각 국내법령의 비밀유지 조건에 따라 원산지 사전심사 결과의 공표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한·칠레 FTA는 협정문상 공표의무는 없고 다만, FTA특별법에 따라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함
- 중·칠레 FTA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의 발효기간은 명시하지 않고 원산지에 관한 사전판정 결과의 발효기간만을 명시함
 - 한·칠레 FTA는 원산지 사전심사 결정을 결정일 또는 결정에서 명시한 더 늦은 일자부터 적용하며 효력 기간에 대한 내용은 명시하지 않음
 - 중·칠레 FTA의 원산지 사전판정은 판정일 또는 판정에서 달리 규정한 날로부터 발효하며, 판정이 근거한 사실관계 또는 정황이 변경되지 않는 한 적어도 1년 이상 효력이 지속됨
- 한·칠레 FTA는 사전심사 결과를 변경 및 철회할 수 있는 경우를 중국보다 상세히 규정함
 - 원산지 사전판정의 대상이 되는 내용이 착오에 근거한 경우, 원산지 사전판정이 양국이 합의한 해석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판정이 근거한 사실관계 또는 정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이 협정 제3장, 제4장 및 제5장 또는 통일규칙의 수정 및 사법, 행정결정 또는 국내법상의 변경에 따르는 경우 원산지 사전판정의 변경 또는 취소가 가능함
 - 원산지 사전판정의 변경 또는 취소는 그러한 결정일 또는 그보다 늦은 일자에 효력이 발생하고 소급적용하지 아니하며 손해를 입증하는 경우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발효일자의 연기가 가능함
- 한·칠레 FTA는 허위자료 제시에 대한 처벌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 각 관세당국은 사전판정의 당사자가 판정이 근거한 사실관계 및 정황에 대한 정보

제공에 있어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고 선의로 행동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 및 각 관세당국의 사전판정이 부정확한 정보에 기초한 경우 처벌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

□ 양 FTA 당사국은 이 협정에 관련된 법령, 절차의 이행 및 행정결정에 관한 심사절차를 포함한 사법절차를 담당하는 사법적으로 독립된 재판소와 관련절차를 수립하고 확보하여야 함

○ 불복절차는 각국의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며 관련 행정기관은 그에 따른 결정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한·칠레 FTA는 원산지검증 대상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자 및 원산지 사전 심사를 받은 자에게 재심 및 불복청구에 관하여 수입자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함을 명시함

아) 세관협력, 검토

□ 한·칠레 FTA는 원산지 심사의 결정, 변경 및 철회의 통지의무 및 상호세관협력의무 이외에 국제기준에 따른 문서화 등의 의무를 규정함

○ 양 당사국은 원산지 판정 및 당해 결정의 변경 및 철회판정에 대해 통지하여야 하며 상호세관협력협정 및 그 밖의 통관관련협정에 따라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사안에 대해 협력함

○ 양국은 문서 및 자료의 국제기준 조화, 원산지검증, 불법 선적의 관리 및 방지, 훈련프로그램의 공동 조직을 협력하여 이행함

□ 중·칠레 FTA는 원산지 검증의 상호의무와 상호세관협력의무를 규정함

○ 이 장의 적절한 적용을 위해 양 당사국은 원산지증명서의 진정성 및 입증서류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호협력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전자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음

- 양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관세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Agreement'에 대해 협의하여야 함

〈표 IV-5〉 칠레 FTA 비교

항목	한·칠레	중·칠레	규정 차이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Article 5.2	Article 30	유효기간
원산지증명서의 면제	Article 5.5	Article 32	면제 기준, 비상업용물품에 대한 면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	Article 37 1	
특혜관세 신청	Article 5.3 1,2	Article 34	
특혜관세 거부			
특혜관세 사후신청	Article 5.3 3	Article 31	담보에 대한 신청기한(중칠레), 제출 서류
원산지확인서류	Article 5.4 5	Article 33	
기록보관요건	Article 5.3 4, Article 5.4 5	Article 36	보관기간
원산지 검증	Article 5.8	Article 38	검증방법, 요청의 회신기한
전자증명 및 검증시스템		Article 30 6	
별칙	Article 5.11	Article 39	
비밀유지	Article 5.7	Article 40	
권한 있는 당국			
원산지위원회			
수정			
제3국 송장	Article 5.6	Article 35	발급요건
운송/보관 중 물품		Article 43	
원활화	-	-	
관세평가	-	-	
품목분류	-	-	
전자서류자동화시스템			
공표 및 문의처		Article 42	
위험관리			
특송화물			
상품의 반출			
원산지 사전심사	Article 5.9	Article 41	심사대상, 결정기한, 결정의 유효기간, 처벌면제 요건(한칠레FTA)
재심 및 불복청구	Article 5.10	Article 76	
세관 협력	Article 5.13	Article 37 2,3	
검토	Article 5.14		
협약			
무역 원활화위원회			

- 한·칠레 FTA는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제2차 연도에 양 당사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장의 원산지 신고 또는 증명과 관련한 체제를 심사하고 개정함

2) 한·싱가포르 FTA, 중·싱가포르 FTA

- 한·싱가포르 FTA, 중·싱가포르 FTA는 원산지 절차 규정의 구분과 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세부적인 부분에서의 소소한 기간의 차이나 단순한 표현상의 차이만을 보이고 있음

가) 원산지증명서

- 원산지증명서와 관련하여, 한·싱가포르 FTA와 중·싱가포르 FTA 공히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당사국의 발급기관에서 발급되어야 하고,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는 12개월간 유효함⁹⁷⁾
- 양 FTA 당사국들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권한 있는 서명자의 성명 및 주소를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을 통하여 타방 당사국에게 통지하고, 그러한 서명자가 사용하는 서명 및 관인의 견본을 제공해야 함
 - 성명, 주소, 서명 또는 관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타방 당사국에 통보해야 함
- 양 FTA 모두 비자발적 실수, 누락 또는 그 밖의 타당한 원인으로 인하여 원산지증명서가 수출 시에 또는 직후에(한·싱가포르 FTA), 이전에(중·싱가포르 FTA) 발급되지 않은 경우, 원산지증명서는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하여 발행될 수 있음을 명시함

97) 한·싱가포르 FTA 협정문, 제5장, 제5.2조 & China·Singapore FTA Agreement, Article 27

나) 특혜관세 신청

- 특혜관세 신청에 관해서는 양 FTA가 특별히 다른 점이 없으며, 수입신고의 일부로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가지고 있거나 자국의 법령과 규정에 의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상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특혜관세적용을 받게 됨⁹⁸⁾
 -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제출 시, 요구가 있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또는 그 밖의 원산지 증빙서류를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함
 - 원산지증명서가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수입자에게 믿을만한 이유나 증거가 있는 경우, 즉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관세를 납부해야 함

- 수입 당사국은 수입자가 수입시 원산지증명서 또는 그 밖의 원산지 증빙서류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수입자가 특혜관세혜택을 받을 조건을 충족한다면 수입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에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⁹⁹⁾에 특별관세혜택을 신청해야만 특혜관세대우를 받거나 기납부한 일반관세와의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음

- 중·싱가포르 FTA에서는 특혜관세신청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원산지증명서가 의심할 여지가 없음에도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을 위해 제출한 서류상의 작은 불일치의 발견으로 인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무효화할 수 없음을 명시함¹⁰⁰⁾
 - 또한, 원산지증명서에 해당되는 다수의 물품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겼다고 하여 나머지 물품이 특혜관세혜택을 받는 것에 영향이 있어서는 안되고 지연되어서도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다) 특혜관세대우의 검증

- 양 FTA 모두 수입되는 상품이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98) 한·싱가포르 FTA 협정문, 제5장, 제5.3조 & China·Singapore FTA Agreement, Article 28

99) 한·싱가포르 FTA 협정문 상에서는 수입당사국의 국내 법률 및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100) China·Singapore FTA Agreement, Article 28

위한 목적으로, 수입당사국은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을 통하여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검증할 수 있도록 규정함¹⁰¹⁾

- 수입자에게 원산지 소명서 및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
- 타방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을 거쳐 타방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수출자 혹은 생산자에게 원산지 소명서 및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
- 양 당사국이 합의한 그 밖의 절차
-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추가적으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시설 또는 원료의 생산에 사용된 시설을 관찰하기 위하여 타방 당사국 영역에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을 방문하는 방법도 규정함
- 중·싱가포르 FTA에서는 수출당사국의 권위 있는 기관이 제품의 원산지를 검증하는 방법도 추가적으로 규정함

- 중·싱가포르 FTA에서는 수입당사국이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원산지 소명을 위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한 경우 회신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나,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한·싱가포르 FTA에서 자료 요청을 받은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회신 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할 1회의 기회를 갖게 됨

-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방문검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방문을 수행하려는 의사를 방문할 사업장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와 타방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동의를 얻어야 함¹⁰²⁾
 -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은 경우, 통보 당사국은 관련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음
 - 통보를 받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제안된 방문검증을 연기하여 줄 것을 통보 수령일로부터 15일 내에 검증수행 당사국에 요청

101) 한·싱가포르 FTA 협정문, 제5장, 제5.7조 & China·Singapore FTA Agreement, Article 29

102) 한·싱가포르 FTA 협정문, 제5장, 제5.7조

할 1회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함

- 양 FTA 공히 수행되어진 원산지 검증 결과에 대하여 상대국 관세행정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자국의 법과 규정 안에서 서로의 검증 절차에 대하여 협력할 것을 규정함

라)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상품의 총 관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 또는 당사국의 통화로 환산하여 이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이를 초과하지 않는 상품의 수입 또는 수입당사국이 자국의 국내법 및 관행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제출 요건을 면제한 경우, 원산지 증명서는 요구되지 않음¹⁰³⁾
 - 다만, 그 수입이 원산지 증명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주선되었다고 합리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일회 또는 그 이상의 수입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중·싱가포르 FTA에서는 상품의 총관세가격이 미화 600달러 또는 당사국의 통화로 환산하여 이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이를 초과하지 않는 상품의 수입이 원산지 증명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지지 않는다고 합리적으로 간주될 때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음¹⁰⁴⁾
 - 다만, 상업 목적의 수입인 경우, 송장상에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600달러 이하의 수입이라 할지라도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음

마) 기록유지의무

- 각 당사국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국 영역 안의 수출자 및 생산자, 자국의 영토로 수입된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원산지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5년간, 중·싱가포르

103) 한·싱가포르 FTA 협정문, 제5장, 제5.6조

104) China·Singapore FTA Agreement, Article 30

르 FTA에서는 3년간 보존하도록 명시하고 있음¹⁰⁵⁾

바) 검토후, 불복청구, 벌칙, 비밀유지

- 양 FTA 공히 각 당사국은 주어진 특혜관세혜택의 적합성에 관한 판정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 있는 수입자에게 행정적·사법적 재검토를 요청할 권리를 갖도록 규정함¹⁰⁶⁾
- 양 FTA 공히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률과 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형사적 또는 행정적 벌칙을 부과하는 조치를 유지하도록 규정함¹⁰⁷⁾

〈표 IV-6〉 양국의 싱가포르 FTA 원산지 절차 규정 비교

항목	한·싱가포르	중·싱가포르	규정 비교
정의	Article 5.1	Article 23,24	
원산지 증명서, 효력	Article 5.2	Article 27	재발급 요건 상이
원산지증명서의 면제	Article 5.6	Article 30	면제 기준 상이
권한 있는 기관			
특혜관세 신청 및 거부	Article 5.3, 5.9	Article 28	
특혜관세 사후신청		Article 28	
원산지 입증서류			
기록보관요건	Article 5.5	Article 31	
원산지 검증	Article 5.7	Article 29	추가 검증방법 상이
전자증명 및 검증시스템			
벌칙	Article 5.12	Article 33	
비밀유지	Article 5.16	Article 35	
원산지위원회	Article 5.15		
검토후 및 불복청구	Article 5.11	Article 34	
수정			
제3국 송장		Article 36	
운송/보관 중 물품			

105) 한·싱가포르 FTA 협정문, 제5장, 제5.5조 & China·Singapore FTA Agreement, Article 31

106) 한·싱가포르 FTA 협정문, 제5장, 제5.11조 & China·Singapore FTA Agreement, Article 34

107) 한·싱가포르 FTA 협정문, 제5장, 제5.12조 & China·Singapore FTA Agreement, Article 33

- 양 FTA 공히 협정상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공개 시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공익에 반하거나, 특정 공기업 또는 사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비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도록 규정함¹⁰⁸⁾
 - 또한, 규정에 의해 수집된 정보의 비밀성을 국내법에 따라 유지하고 이를 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경쟁적 지위를 저해할 수 있는 공개로부터 보호할 것을 규정함

3) 한 · ASEAN FTA, 중 · ASEAN FTA

가) 발급기관

- 각 당사국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명칭, 주소, 견본 서면 및 견본 관인을 ASEAN 사무국을 통하여 다른 모든 당사국에 제공해야 하며, 동 목록의 변경사항은 즉시 동일한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함을 양 FTA 공히 규정하고 있음¹⁰⁹⁾
- 원산지 지위의 결정 목적상, 발급기관은 당사국의 개별 국내법령에 따라 증빙서류를 요구하거나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검사를 수행할 권리가 있음
 - 중 · ASEAN FTA에서는 추가적으로 이와 같은 권리가 국내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FTA 규정에 내용을 삽입하도록 규정함¹¹⁰⁾

나) 원산지증명서

- 생산자 · 수출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받은 대리인은 당사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수출전 검사를 발급기관에 신청해야 함을 양 FTA에서 공히 규정하고 있음¹¹¹⁾
 - 검사결과는 정기적 또는 적당한 시기에 재검토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후 수출되

108) 한 · 싱가포르 FTA 협정문, 제5장, 제5.16조 & China · Singapore FTA Agreement, Article 35

109) 한 · ASEAN FTA 협정문, 부록1, 제2조 & China · ASEAN FTA Agreement, Attachment A, Rule 2,3

110) China · ASEAN FTA Agreement, Attachment A, Rule 3

111) 한 · ASEAN FTA 협정문, 부록1, 제4조 & China · ASEAN FTA Agreement, Attachment A, Rule 4

는 물품의 원산지 결정을 뒷받침하는 관련 증거로서 인정해야 함

- 수출전 검사는 그 성질상 원산지가 쉽게 결정될 수 있는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증명서의 매 신청시마다 당사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적절한 검사를 수행하여 다음의 세부사항을 보장해야 함¹¹²⁾

- 원산지증명서가 서명권자에 의하여 정당하게 작성되고 서명될 것
- 물품의 원산지가 FTA 협정문 원산지 규정에 합치할 것
- 원산지증명서에 있는 그 밖의 기재내용은 제출된 증빙서류와 일치할 것
- 물품의 품명, 수량 및 중량, 포장의 표시 및 번호, 포장의 수량 및 종류는 기재된 바와 같이 수출물품과 일치할 것

□ 원산지증명서는 A4용지의 별첨 양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고, 양 FTA 간 세부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음¹¹³⁾

- 한·ASEAN FTA에서는 원산지증명서는 1부의 원본과 2부의 부분으로 구성되며,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원본은 수입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전송하고, 제2부분은 수출당사국의 발급기관에서 보관하며,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제3부분을 보관하도록 규정함
- 중·ASEAN FTA에서는 원산지증명서는 1부의 원본과 3부의 부분으로 구성되며,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원본은 수입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전송하고, 제2부분은 수출당사국의 발급기관에서 보관하며,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제4부분을 보관하고, 제3부분은 수입 후에 증명서의 4번란에 표기하고 발급기관에 적절한 시간 안에 다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양 FTA 공히 원산지증명서는 각 발급장소 또는 발급사무소가 개별적으로 부여한 참조번호를 포함하도록 규정함
- 한·ASEAN FTA에서는 이에 추가적으로 발급기관이 발급번호 및 발급일자, 생산

112) 한·ASEAN FTA 협정문, 부록1, 제4조 & China·ASEAN FTA Agreement, Attachment A, Rule 6

113) 한·ASEAN FTA 협정문, 부록1, 제5조 & China·ASEAN FTA Agreement, Attachment A, Rule 7

자/수출자 및 품명을 포함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록을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함

- 원산지증명서상의 삭제 또는 덮어쓰기는 허용되지 않고, 변경시 잘못된 부분을 줄을 그어 지우고, 추가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이러한 변경사항은 발급기관이 지정한 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¹¹⁴⁾
- 양 FTA 공히 원산지증명서는 FTA 협정문상의 원산지 규정의 의미 내에서 수출물품이 수출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원산지로 인정될 수 있는 때에 수출 시 또는 수출 직후 발급해야 함을 규정함¹¹⁵⁾
 - 뜻하지 않은 실수, 누락 또는 기타 타당한 사유로 인해 원산지증명서가 수출 시 또는 수출 직후에 발급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 (ISSUED RETROACTIVELY)’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할 수 있음
 - 한·ASEAN FTA에서는 추가적으로 중간 경유 당사국의 발급기관이 물품이 그 영역을 통과하는 동안 생산자·수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원산지증명서가 도난, 분실 또는 멸실된 경우, 생산자·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상의 12번란에 ‘진정 등본(CERTIFIED TRUE COPY)’이라는 보증문구가 기재된 원본의 진정 등본을 발급기관이 보관중인 수출서류를 근거로 발급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을 양 FTA 공히 규정함¹¹⁶⁾
 - 원산지증명서의 진정 등본은 원산지증명서 원본의 발급일로부터 1년 내에 발급해야 함

114) 한·ASEAN FTA 협정문, 부록1, 제6조 & China·ASEAN FTA Agreement, Attachment A, Rule 9

115) 한·ASEAN FTA 협정문, 부록1, 제7조 & China·ASEAN FTA Agreement, Attachment A, Rule 10

116) 한·ASEAN FTA 협정문, 부록1, 제8조 & China·ASEAN FTA Agreement, Attachment A, Rule 11

다) 제출

- 수입자는 수입 시에 원산지증명서와 수출 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기타 서류를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해야 함¹¹⁷⁾ (중·ASEAN FTA에서는 제3부분과 함께 제출)

- 원산지증명서는 국내법령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이 발행한 날부터 한·ASEAN FTA에서는 6개월 이내에, 중·ASEAN FTA에서는 4개월 이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하도록 규정함
 - 중·ASEAN FTA에서는 물품이 중·ASEAN FTA 당사국이 아닌 하나 이상의 국가에서 환적 또는 일시보관했던 경우, 제출기한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제출기한 만료 이후에 수입국의 관세당국에 제출된 원산지증명서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통제를 벗어난 불가항력 또는 그 밖의 타당한 사유로 인해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때에는 수리되어야 함

- 양 FTA 공히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서 FOB 가격기준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과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우편으로 송부된 물품으로서 FOB 가격기준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면제함을 규정함¹¹⁸⁾

- 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수입 절차상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경미한 차이가 물품과 사실상 일치한다면, 그 경미한 차이로 인해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을 무효화해서는 안된다고 양 FTA에 똑같이 명시하고 있음¹¹⁹⁾
 - 동일한 원산지증명서상에 신고된 다수의 품목 중 일부 품목에 대해 발생한 문제로

117) 한·ASEAN FTA 협정문, 부록1, 제9조 & China·ASEAN FTA Agreement, Attachment A, Rule 12

118) 한·ASEAN FTA 협정문, 부록1, 제11조 & China·ASEAN FTA Agreement, Attachment A, Rule 14

119) 한·ASEAN FTA 협정문, 부록1, 제12조 & China·ASEAN FTA Agreement, Attachment A, Rule 15

나머지 품목의 특혜관세대우 적용 및 통관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지연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함

라) 기록보관 의무

-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생산자·수출자는 수출 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신청관련 기록을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로부터 한·ASEAN FTA에서는 3년 이상, 중·ASEAN FTA에서는 2년 이상 보관해야 함을 명시함¹²⁰⁾
- 관련 당사국 간에 통보된 정보는 비밀로 취급되며,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확인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함을 규정함

마) 원산지 검증

- 수입 당사국은 무작위로 또는 서류의 진정성 또는 당해 물품의 진정한 원산지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때에는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할 수 있음을 양 FTA 공히 규정함¹²¹⁾
 - 원산지 검증이 무작위로 요청된 것이 아니라면, 검증을 위한 수입 당사국의 요청 시 관련된 원산지증명서를 동봉하며 그 이유와 동 원산지증명서상의 특정 사항이 부정확하다는 추가정보를 명시해야 함
 -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검증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특혜관세대우의 부여를 보류할 수 있으며, 물품이 수입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이 아니고 부정한 행위의 의심이 없다면 필요한 행정조치를 조건으로 수입자에게 물품을 반출할 수 있음
 - 검증 요청을 받은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신속히 그 요청에 응해야 하며, 그 요청을 받은 후 한·ASEAN FTA에서는 2개월 이내에, 중·ASEAN FTA에서는 6개월 이내에 회신해야 함을 규정함

120) 한·ASEAN FTA 협정문, 부록1, 제13조 & China·ASEAN FTA Agreement, Attachment A, Rule 17

121) 한·ASEAN FTA 협정문, 부록1, 제14조 & China·ASEAN FTA Agreement, Attachment A, Rule 16

- 한·ASEAN FTA에서는 추가적으로 물품의 원산지 여부의 결정결과를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에 통보하는 절차를 포함한 검증의 모든 과정이 6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함을 규정함

- 중·ASEAN FTA와 달리, 한·ASEAN FTA에서는 추가적으로 수입 당사국이 검증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수출국에 현지검증을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¹²²⁾
 - 수입 당사국은 현지검증을 수행하려는 의사를 사업장을 방문하려고 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 현지검증이 이루어지는 영역의 당사국의 발급기관, 세관당국, 현지 검증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수입자에게 서면통보 해야 함
 - 서면통보는 가능한 한 포괄적이어야 하며, 통보서를 발급한 관세당국의 이름, 수출자·생산자의 이름, 현지 방문검증 예정일, 방문예정 현지검증의 범위, 현지검증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를 포함해야 함
 - 수입 당사국은 그의 사업장을 방문하려고 하는 수출자·생산자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출자·생산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통보한 당사국은 원산지증명서상의 현지검증 대상 물품의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음
 - 통보를 받은 발급기관은 예정된 현지검증을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60일까지 또는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이상의 기간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연기 의사가 있다면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연기 의사를 수입 당사국에 통보해야 함
 - 수출자·생산자는 서면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동안 물품의 특혜관세대우 자격 여부에 대한 의견 또는 추가정보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물품이 여전히 비원산지 물품인 것으로 판명되면, 수출자·생산자로부터 의견 및 추가정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서면결정서를 발급기관에 통보해야 함
 - 실제 방문과 검증대상 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결정 및 그 결과의 발급기관 통보를 포함한 현지검증 절차는 현지검증이 개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함

122) 한·ASEAN FTA 협정문, 부록1, 제15조

바) 특례

- 양 FTA 공히 특정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목적지가 그 당사국의 영역에 도착 전 또는 도착 후에 변경된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함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¹²³⁾
 - 물품이 특정 수입 당사국의 영역 내로 이미 수입된 경우에도,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 원본의 제출과 함께 특혜관세대우를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배서하여 양도해야 함 – 중·ASEAN FTA에서는 이 경우, 원본을 수입자에게 돌려주고, 제3부분은 발급 기관에 돌려줄 것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원산지증명서상에 기재된 수입 당사국의 영역으로의 운송 도중 목적지가 변경된 경우,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발급 원산지증명서와 함께 서면으로 신규 발급신청을 해야 함

-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의 영역이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간 경유국의 영역을 통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원본, 물품의 상업송장 원본의 부분, 그 밖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였다는 증거가 담긴 증빙서류를 수입 당사국의 관련 정부당국에 제출해야 함을 공통적으로 규정함¹²⁴⁾

- 제3국에서의 전시를 위해 수출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발송되고 전시기간 중 또는 전시 후에 일방 당사국으로의 수입을 위하여 판매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특혜관세대우를 부여함을 공통적으로 규정함¹²⁵⁾
 - 이를 위해서는 수출자가 그 물품을 수출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전시회가 개최된 국가로 발송하고, 그 물품을 그 국가에서 전시한 사실, 수출자가 수입 당사국의 화주에게 그 물품을 판매하거나 인도한 사실, 그리고 물품이 전시회 기간중 또는 전

123) 한·ASEAN FTA 협정문, 부록1, 제18조 & China·ASEAN FTA Agreement, Attachment A, Rule 18

124) 한·ASEAN FTA 협정문, 부록1, 제19조 & China·ASEAN FTA Agreement, Attachment A, Rule 19

125) 한·ASEAN FTA 협정문, 부록1, 제20조 & China·ASEAN FTA Agreement, Attachment A, Rule 20

시회 직후에 전시 목적으로 발송된 상태로 수입 당사국의 영역으로 발송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함

사)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 원산지증명서와 관련된 부정행위가 행하여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관련 정부당국은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당사국이 취할 조치에 관하여 협력하고, 각 당사국은 원산지증명서와 관련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법적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함을 양 FTA에서 공히 규정하고 있음¹²⁶⁾

〈표 IV-7〉 양국의 ASEAN FTA 원산지 절차 규정 비교

항목	한·ASEAN	중·ASEAN	규정 비교
정의	Rule 1		
원산지증명서, 효력	Rule 4, 5, 6, 7, 8	Rule 4, 5, 6, 7, 9, 10, 11	발급 규정, 제출 기한 상이
원산지증명서의 면제			
권한 있는 기관	Rule 2,3	Rule 1, 2, 3	
특혜관세 신청 및 거부	Rule 9, 10, 11, 12	Rule 12, 13, 14, 15, 17	
특혜관세 사후신청	Rule 18, 19	Rule 18, 19	
원산지 입증서류			
기록보관요건	Rule 13	Rule 17	기록보관 기한 상이
원산지 검증	Rule 14, 15, 16	Rule 16	추가검증 방법 상이
전자증명 및 검증시스템			
별칙	Rule 22	Rule 21	
비밀유지			
원산지위원회	Rule 23		
검토 및 불복청구		Rule 22	
수정			
제3국 송장			
운송/보관 중 물품			

126) 한·ASEAN FTA 협정문, 부록1, 제22조 & China·ASEAN FTA Agreement, Attachment A, Rule 21

4) 한·페루 FTA, 중·페루 FTA

- 원산지 절차는 한·페루 FTA 제4장 원산지절차(Origin Procedures), 중·페루 FTA 제3장 Rules Of Origin and Operational Procedures Related to Origin Section B: Operational Procedures Related to Origin(Article 38 내지 Article 50)에서 규정하고 있음
- 통관 및 무역 원활화는 한·페루 FTA 제5장 관세행정 및 무역 원활화(Customs Administration and Trade Facilitation), 중·페루 FTA 제4장 Customs Procedures and Trade Facilitation(Article 51 내지 Article 67)에서 규정하고 있음
 - 원산지 절차와 달리 통관 및 무역 원활화 규정은 동일 조항의 경우 한·페루 FTA 와 중·페루 FTA의 문구가 동일함
- 한·페루 FTA는 기관증명 및 자율증명방식으로 원산지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또는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Origin Declaration)를 제출하여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원산지증명서는 제4장 원산지 절차 부속서 4나의 서식으로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함
 -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은 기관증명방식에서 발효 후 5년 경과 이후 자율증명으로 전환함
 - 협정 발효 후 5년 동안은 기관증명을 원칙으로 하되, 인증수출자 및 미화 2천달러 이하 물품의 수출자에 대해 자율증명을 허용함¹²⁷⁾
 - 원산지 인증수출자제도를 적용함
- 중·페루 FTA는 기관증명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 또는 소액물품에 대한 원산지신고서(Declaration of Origin)를 제출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신고서는 부속서 5의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발급일로

127) 제4장 부속서 4가 규칙2, 제4장 부속서 4가 규칙 1 및 4

부터 1년간 유효함

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면제, 발급기관

- 양 FTA의 원산지증명서는 협정문에 규정된 법정서식으로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함
- 한·페루 FTA의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인증번호(authorization No.)를 기재한 원산지 신고서는 원산지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원산지신고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 또는 총액이 미화 2천달러 또는 수입국 통화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탁송화물에 대해 발급함
 - 해당 상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상품을 기술하는 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적 문서에 제4장 원산지 절차 부록 4가-2의 문안을 사용하여 수출자가 발급함¹²⁸⁾
- 한·페루 FTA의 원산지신고서는 모든 수출물품에 대해 발급이 가능한 반면, 중·페루 FTA의 원산지신고서는 소액물품에 대해서만 발급함
- 한·페루 FTA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특례로 포괄원산지증명서 및 전자본, 기간 연장을 인정함
 - 원산지증명서의 물품이 비당사국 관세당국 일시적으로 수용 또는 보관된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 연장될 수 있고, 수입국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일시적으로 수용 또는 보관된 경우 정지됨
- 중·페루 FTA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특례로 사본발급 및 소급발급을 인정함
 - 원산지증명서의 절도, 멸실 또는 소실의 경우 사본 발급이 가능하며, 사본에는 'CERTIFIED TRUE COPY of the original Certificate of Origin number_dated_'라는

128) 제4장 부속서 4가 규칙 1

문구를 표기하여야 함

- 수출하는 때에 오류, 의도치 않은 생략 또는 기타 사유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수출신고서와 기타 필수 상업서류를 제공하는 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원산지증명서의 소급 발급이 가능함
- 원산지증명서가 수출국에서 유효하게 발급되었으나 수입국에서 기술적인 사유로 수리되지 않은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최초 발급일로부터 기산함

□ 소액물품에 대해 한·페루 FTA는 원산지증명서를 면제하는 반면, 중·페루 FTA는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한·페루 FTA의 과세가격이 미화 1,000달러 또는 수입국 통화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의무가 면제됨
- 중·페루 FTA의 미화 600달러 이하의 수입물품에 대해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원산지신고서는 한 consignment 금액이 미화 60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발급함
 - 상업송장과 별도의 문서에 Exporter's Registration Number 또는 Tax Identification Number 및 부속서5 나의 원산지 문안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 한·페루 FTA도 기관증명방식을 일시적으로 채택하고 있어 양 FTA는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을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으로 명시함

- 권한 있는 기관은 당해 기관의 이름, 연락처 및 표준 인장(specimen of the stamp), 각 권한 있는 기관의 관련 서식 및 문서의 보안관련 특징의 세부사항을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시행 이전에 상대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 정보 및 원산지 판정결과의 정확성 보장에 책임이 있음
- 한·페루 FTA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으로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수입기관을 명시함(부속서4가 규칙2 및 규칙3)
 - 권한 있는 당국 및 수입기관은 원산지 발급 및 원산지 검증을 수행
 - 권한 있는 당국은 수입기관의 명칭 및 직인을 다른 쪽 당사국에 통지, 인증수출

자의 인증 및 인증번호 부여, 감독, 철회 등을 수행

- 특혜관세 신청 및 거부에 대해 양 FTA는 동일하게 규정함
 - 원산지 물품의 원산지를 표기한 수입신고서에 원산지증명서 및 직접운송원칙에 준수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특혜관세 적용 신청이 가능함
 -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의 정보에 오류가 있다고 믿을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원산지 검증이 시작되기 전 이를 정정한 원산지표기와 함께 그에 따라 발생하는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함
 - 이 협정에서 요구하는 원산지요건에 위반한 경우 특혜관세 적용은 거부될 수 있음

나) 특혜관세의 사후신청, 원산지확인서류, 기록보관요건

-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이 유효한 원산지증명서 없이 수입된 경우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당해 물품이 원산지 물품임을 신고하여 초과하는 관세 등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 한·페루 FTA는 당사국의 법령에 명시된 기간 또는 수입한 다음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중·페루 FTA는 관세 납부 1년 이내 또는 담보설정 후 3개월 내지 1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 환급 신청 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 및 수입 관세당국이 요구하는 기타 필요서류를 제출하며 한·페루 FTA는 원산지증명서의 사본 제출을 명시하고 있으나, 중·페루 FTA는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음(the valid Certificate of Origin)
- 양 FTA의 원산지 확인서류는 다음과 같이 유사함
 - 한·페루 FTA: 수출된 상품의 구매, 비용, 가치 및 그에 대한 지불, 생산에 사용된 간접재료를 포함한 모든 재료의 구매, 비용, 가치 및 그에 대한 지불, 생산과정 관련서류 및 기타 양국이 합의하는 서류

- 중·페루 FTA: 수출자 또는 공급자가 당해 물품을 획득한 절차를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회계장부 또는 내부기장기록, 내국법령에 따라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 상태를 입증하는 서류, 원재료에 수행된 가공 또는 공정과정을 입증하는 서류 및 원재료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원산지증명서

- 양 FTA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수출자의 원산지 관련서류 보관기간을 달리하며 한·페루 FTA는 전자매체로의 보관을 가능하게 규정함
 - 한·페루 FTA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발급일로부터 최소 5년간,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수입자는 당해 물품 수입일로부터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전자매체로 보관할 수 있음
 - 중·페루 FTA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수출자 및 관세당국은 발급일로부터 최소 3년간 원산지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함

다) 원산지 검증, 전자증명 및 검증시스템, 벌칙, 비밀유지, 권한 있는 당국

- 양 FTA는 검증방법 및 절차, 검증결과에 따른 환급 및 정지를 동일하게 규정함
 - 검증방법: 1) 수입자에게 추가 정보를 서면으로 요청, 2) 수출국 관세당국을 통하여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추가 정보를 서면으로 요청, 3) 수출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 지원 요청, 4) 수출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방문실사를 수행할 것을 요청
 - 요청의 회신기한: 수출국 관세당국이 1), 2)의 경우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4)의 경우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수입국 관세당국은 특혜관세 적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3)의 경우¹²⁹⁾ 요청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 판정을 진행함
 - 수입하는 때에 수입국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서의 대상 물품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가진 경우 관세 등을 납부한 후 물품을 반출하고 원산지 검증 결과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음

129) 수입국 관세당국은 상대국에 요청 사유 및 원산지증명서 및 관련서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하며, 수출국 관세당국은 원산지 물품에 관한 서면진술서, 생산공정명세서, 원산지 재료 및 비원산지 재료의 HS코드 및 원산지 물품의 구매내역서를 제공하여야 함

- 권한 있는 당국이 동일 물품에 대해 이미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다고 판정한 물품에 대해서는 특혜관세 적용을 보류할 수 있음
- 검증결과에 대한 통지기한은 약 1년으로 유사하며 한·페루 FTA는 전자적 정보의 제공이 가능함을 규정함
 - 한·페루 FTA의 수입국 관세당국은 검증 개시 다음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검증결과, 사실관계 및 법적근거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중·페루 FTA의 수입국 관세당국은 검증 시작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수출국에 원산지 물품의 검증결과, 사실관계 및 법적근거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양 FTA는 원산지 전자증명 시스템의 개발 착수일을 달리 규정하며, 한·페루 FTA는 본문에서 규정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원산지신고서의 동등한 효력을 명시하기 위해 부속서 4 가¹³⁰⁾의 효력을 이 조항에 규정함
 - 한·페루 FTA의 당사국은 이 협정 발효 다음 날로부터 1년 후에 전자증명시스템의 개발논의를 개시함
 - 중·페루 FTA의 당사국은 이 협정 발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행되도록 이 협정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발에 착수하여야 함
- 중·페루 FTA의 이 장 조항의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은 양국 국내법령에 따르나, 한·페루 FTA는 국내법령을 준수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음
 - 한·페루 FTA의 이 장 또는 제3장 원산지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모든 인에 대해서는 벌칙이 부과됨
- 양 FTA의 당사국은 상대국이 요청하는 경우 이 장에 따라 상대국이 제공하는 정보의 비밀유지를 준수하여 사법절차의 사유로 공개되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기 정보를 제공한 당사자 또는 정부기관의 명시적인 허가 없이는 공개할 수 없음

130) 부속서 4가 원산지증명: 규칙1 원산지증명, 규칙2 원산지증명서, 규칙3 수입기관, 규칙4 원산지신고서 작성 조건, 규칙5 인증수출자, 규칙6 기록보관요건

라) 원산지위원회, 수정

- 중·페루 FTA의 원산지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음
 - 이 장의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협력 촉진
 - 부속서 제4장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유지
 - 자유무역위원회에 이 장의 해석, 적용 및 운영, 부가가치비율의 계산 및 이 장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기타 문제들에 관한 해결방안을 통지
 - 자유무역위원회에 이 장 제50조에 따른 양국의 수정제안 동의에 관한 승인요청
 - 전자증명 및 검증시스템 개발
 - 원산지 결정에 관한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이슈를 무역 원활화위원회에 전달 및
 - 상품무역위원회에서 요청한 기타 원산지결정에 관한 연구를 포함함

- 한·페루 FTA는 합의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의 절차에 대해 규정함
 - 양 당사국이 합의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 어느 한 쪽 당사국은 그 사안을 제5.25조에 따라 설립된 관세·원산지 및 무역 원활화위원회에 심사를 회부할 수 있음

마) 기타

- 한·페루 FTA는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오류에 대한 수정본 제출을 명시함
 - 대상물품의 원산지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산지증명서상 형식적 오류를 발견한 경우 수입국 관세당국은 수입자에게 통지하여 통지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의 수정본을 제출하여야 함
 -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수입국 권한 있는 당국은 원산지 검증에 착수할 수 있음
 - 수정본은 수정사항, 수정한 날 및 원산지증명서 번호를 포함해야 하며, 원산지증명서의 원본을 발급한 인에 의해 서명

- 한·페루 FTA의 당사국은 이 장과 제3장의 해석, 적용 및 운영에 관한 공통 규정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으며 합의하는 기간 내에 공통 규정에 대한 수정 또는 추가를 이행함

〈표 IV-8〉 양국의 페루 FTA 원산지 절차 규정 비교

항목	한·페루	중·페루	규정 차이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Article 4.1, 4.3	Article 38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발급특례
원산지증명서의 면제	Article 4.2	Article 39	면제 기준
권한 있는 기관	Annex 4 a rule2,3	Article 40	
특혜관세 신청	Article 4.4	Article 41 1,2	
특혜관세 거부	Article 4.11	Article 41 3	
특혜관세 사후신청	Article 4.5	Article 42	환급신청 기한, 사본 제출 가능여부
원산지확인서류	Article 4.6 1	Article 44	
기록보관요건	Article 4.6 2~4	Article 44	보관기간, 전자보관 가능 여부
원산지 검증	Article 4.5	Article 45	
전자증명 및 검증시스템	Article 4.13	Article 46	개발착수일
별칭	Article 4.9	Article 47	국내법령 준수 여부
비밀유지	Article 4.10	Article 48	
권한 있는 당국	Article 5.2	Article 53	
원산지위원회		Article 49	
수정	Article 4.12	Article 50	

바) 원활화, 관세평가, 품목분류

- 양 FTA 모두 통관절차와 관행이 세계관세기구(이하 'WCO'라 함)의 무역관련 합의문서,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교토협약 개정판) 및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의정서(개정 교토협약)에 부합함
 - 한·페루 FTA는 통관절차의 최소한의 서류요건 및 전자시스템의 사용을 규정함

- 양 FTA 모두 1994년 GATT 제7조 및 관세평가협정과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을 적용함

사) 전자서류자동화시스템, 공표 및 문의처, 위험관리, 특송화물, 물품의 반출

- 양 FTA 모두 위험관리시스템, 도착 전 신고를 포함한 통관정보기술의 활용하는 전자서류자동화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하며, 한·페루 FTA는 물품의 반입 및 반출장소가 동일한 경우 단일검사를 보장함을 규정
 - 단일한 시간 및 장소(at a single time and place)에서 반입 및 반출되는 물품에 대해 단일한 물품검사(simultaneous inspection of goods)를 보장함
- 양 FTA 모두 통관사안의 문의처 지정 및 세부사항을 상대국 관세행정기관에 제공하여야 함
 - 국내 관세법령 및 통관사안 문의절차를 공표(publish) 및 수정하는 경우 통지하여야 함
- 양 FTA당사국은 고위험 물품 검사에 집중, 위험관리 응용기술 정보를 교환하여야 하며, 한·페루 FTA는 AEO 상호인정 의무를 규정함
 - AEO의 상호인정 노력을 이 협정 발효일 다음날로부터 3년 이내에 완전히 이행하여야 함
- 양 FTA당사국은 특송화물을 위한 별도의 신속한 통관절차를 도입 또는 유지하여야 함
- 양 FTA당사국은 물품 도착 48시간 이내에, 관세 등의 확정 이전에 물품을 반출하여야 하며, 한·페루 FTA는 도착 전 전자신고 및 수리 및 물품을 일시적으로 이동하지 않고 도착지점에서 물품을 반출하는 절차를 도입하거나 유지하도록 규정

아) 사전심사, 재심 및 불복청구

- 양 FTA 모두 품목분류 및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 물품의 수입 전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전심사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한·페루 FTA의 경우 이외에도 기타 양국이 합의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사전심사를 적용함
 - 중·페루 FTA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인은 중국 세관당국에 등록된 자여야 함

- 중·페루 FTA는 품목분류에 관한 사전심사의 결정기한은 규정하지 않고 원산지 결정에 관한 사전심사 결정기한만을 규정함
 - 한·페루 FTA의 사전심사결정서는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한 모든 요건이 충족된 날로부터 최대 120일 이내 또는 각 내국법령에 따라 정한 더 짧은 기간 이내에 발급하여야 함
 - 중·페루 FTA의 사전심사결정서는 원산지 결정에 관한 사전심사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함

- 양 FTA는 사전심사 시행시기를 달리 규정함
 - 중·페루 FTA의 사전심사제도는 이 협정 발효일 다음날로부터 3년 후에 발효함
 - 한·페루 FTA 당사국인 페루는 사전심사 절차의 도입 및 유지의무를 2012년 1월 1일부터 이행하여야 함

- 양 FTA 모두 원산지 결정, 특혜관세대우, 통관절차에 관하여 독립된 사법기관의 행정 및 사법적 불복청구 권리를 보장하며, 한·페루 FTA는 요청이 있는 경우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검토 당국에 직접 정보제공 및 비밀유지 요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자) 세관협력, 검토, 협의, 무역 원활화위원회

- 한·페루 FTA는 상호협력의무 이외에 통관기술의 교환, 국제기준에 따른 문서화 등의 의무를 규정함
 - 양국은 이 협정에 따라 통관기술 및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와 컴퓨터화된 시

스텝에 대한 전문지식을 교환하여야 함

- 양국은 문서 및 자료의 국제기준 조화, 관세분석소 간 협력, 통관전문가 교환, 훈련프로그램의 공동 조직, 무역업계 소통을 위한 매커니즘 개발, 지식재산권 관리 강화, 환적 및 통과물품의 물류망 관리 등을 이행하여야 함

□ 한·페루 FTA는 중·페루 FTA와 달리 한·중세관협정의 각 규정을 협정문 본문에 개별 조항으로 포함시킴

- 통관협력의 이행(Article 5.14)
 - 양국의 관세행정기관은 이 장에 따라 세부 이행규칙을 협의함
- 통관사안에 대한 상호 행정지원(Article 5.15)
 - 양국은 관세법령 준수요건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통관절차를 구체화함
 - 신청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및 관련 정보를 획득한 경우 국내법령의 범위 안에서 관세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지원하여야 함
- 지원 요청의 형식 및 내용(Article 5.16)
 - 지원 요청은 서면 및 영어로 제출하여야 하며 필수 정보는 신청당국, 요청하는 조치, 목적 및 근거 등을 포함하여야 함
- 요청의 실행(Article 5.17)
 - 지원 요청의 답변 기한은 접수한 다음날로부터 최대 120일 이내이며, 권한 있는 기관은 정보획득 활동 및 검증 또는 검증에 참여할 수 있음
- 지원제공 의무에 대한 예외(Article 5.18)
 - 지원제공 요청에 대해 일정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결정 및 이유에 대해 즉시 통지하여야 함
- 비밀유지(Article 5.19)
 - 이 장의 모든 정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밀을 준수하며, 개인의 신원자료는 정보보호 조건으로 교환할 수 있음
- 정보의 이용(Article 5.20)
 - 정보는 원칙적으로 이 장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예외적으로 사전 서면

동의하에 기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법 또는 행정적 절차 적용

- 전문가 및 증인(Article 5.21)
 - 요청받은 당국의 공무원은 사법 또는 행정적 절차의 전문가 또는 증인으로 출두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 지원 비용(Article 5.22)
 - 양국은 이 장에 따라 발생한 비용의 배상청구권을 포기함

- 양 FTA의 당사국은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무역 원활화를 위한 상호약정의 개발, 위험관리접근법의 성능, 효과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양 FTA의 당사국은 언제라도 원산지 등의 사안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접촉 부서의 연락처를 교환하여야 함
 -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 및 상품무역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음
- 중·페루 FTA의 무역원활화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으며, 한·페루 FTA의 통관, 원산지 및 무역원활화위원회는 이외에도 수정제안의 승인, 전자인증 및 검증 시스템의 개발 등을 수행함
 - 국제 표준에 따른 관세 관행 및 표준 도입
 - 이 장의 해석 및 운영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 및 미해결 시 WCO 회부
 - 기타 문제 해결
- 중국의 원산지위원회 및 무역원활화위원회의 기능이 한국의 통관, 원산지 및 무역원활화위원회의 기능과 동일함

〈표 IV-9〉 양국의 페루 FTA 통관 및 무역 원활화 규정 비교

항목	한·페루	중·페루	규정 차이
원활화	Article 5.3	Article 54	통관사용자의 전자 시스템 접근 및 정보 기술 활용허용 여부(한·페루 FTA)
관세평가	Article 5.4	Article 55	
품목분류	Article 5.5	Article 56	
전자서류자동화시스템	Article 5.8	Article 61	상품의 단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의 검사 시간 및 장소 동일규정(한·페루 FTA)
공표 및 문의처	Article 5.10	Article 63	
위험관리	Article 5.9	Article 62	MRA 체결의무(한·페루 FTA)
특송화물	Article 5.11	Article 64	
상품의 반출	Article 5.12	Article 65	시행일
사전심사	Article 5.7	Article 60	심사대상, 결정기한, 발효일
재심 및 불복청구	Article 5.6	Article 59	불복청구권자
세관 협력	Article 5.13	Article 58	
검토			
협의	Article 5.24, Article 5.22	Article 67	
무역 원활화위원회	Article 5.25	Article 57	

나. 양국이 선진국과 체결한 FTA

- 원산지 절차는 한·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절 원산지 절차(PROTOCOL CONCERNING THE DEFINITION OF ‘ORIGINATING PRODUCTS’ AND METHODS OF ADMINISTRATIVE COOPERATION SECTION B ORIGIN PROCEDURES), 중·뉴질랜드 FTA 제4장 RULES OF ORIGIN AND OPERATIONAL PROCEDURES Section 2: Operational Procedures에서 규정하고 있음
- 통관 및 무역 원활화는 한·EU FTA 제6장 관세 및 무역 원활화(CUSTOMS AND TRADE FACILITATION), 중·뉴질랜드 FTA 제5장 Customs procedures and

Cooperation에서 규정하고 있음

- 한·EU FTA는 자율증명방식으로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가 발급한 원산지 신고서(Origin Declaration)를 제출하여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원산지신고서¹³¹⁾는 인증수출자 또는 총액이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탁송화물에 대해 수출자가 발급함
 - 원산지 인증수출자만 원산지증명의 자격이 있음
- 중·뉴질랜드 FTA는 기관증명방식으로 기관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 신고서(Declaration of Origin)로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함
 -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신고서는 부속서 5의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함
- 사전심사 절차에 관하여 한·EU FTA는 상세한 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적용범위와 효력만 규정한 반면, 중·뉴질랜드 FTA는 절차를 상세히 규정함

1) 한·EU FTA와 중·뉴질랜드 FTA

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면제, 발급기관, 특혜관세의 신청, 거부 및 사후신청

-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특례로 한·EU FTA는 원산지신고서의 소급발급을, 중·뉴질랜드 FTA는 사본발급을 명시함
 - 한·EU FTA의 원산지신고서는 수입 후 2년 또는 수입국 법령에 명시된 기간 내에 제시되는 조건으로 수출 후 작성 가능함
 - 중·뉴질랜드 FTA의 원산지증명서가 절도, 멸실 또는 소실의 경우 사본 발급이 가능하며, 사본에는 'CERTIFIED TRUE COPY of the original Certificate of Origin

131) 해당 상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상품을 기술하는 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적 문서에 부속서3의 문안을 사용하여야 함

number_dated_’라는 문구를 표기하여야 함

- 중·뉴질랜드 FTA의 부속서6에 기재된 원산지증명서의 양식과 요건 및 부속서7의 원산지신고서 서식은 양 당사국의 서신교환에 의한 결정으로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소액물품에 대해 한·EU FTA의 관련 당사자는 원산지신고서 제출을 면제하는 반면, 중·뉴질랜드 FTA의 당사자는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한·EU FTA는 일정금액 이하의 비상업용 소포 및 여행자의 개인용품에 대해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원산지제품으로 인정함
 - EU로 수입되는 경우 500유로 이하의 비상업용 소포 및 1,200유로 이하의 여행자 개인용품
 - 한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미화 1,000달러 이하의 비상업용 소포 및 여행자의 개인용품 물품
 - 중·뉴질랜드 FTA는 소액물품 등에 대해 원산지신고서로 원산지증명을 갈음함
 - 과세가격이 미화 1,000달러 또는 수입국 통화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물품, 제52조에 의한 사전심사결정이 적용되는 물품 및 기타 원산지증명서가 요구되지 않는 물품
 - 원산지신고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임
-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기관증명방식인 중·뉴질랜드 FTA만 규정함
 -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만 발행되어야 함
 - 양 당사국은 권한 있는 기관의 명칭, 관련 연락처, 서식, 직인의 보안관련 특징 및 변경사항을 상대국 관세당국에 통지하여야 함
- 수입자는 수입하는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음
 - 한·EU FTA의 수입자는 수입관세당국에 원산지증명을 제출하며, 수입국 관세당

국은 번역 또는 원산지충족에 대한 수입자의 진술서를 요구할 수 있음

- 중·뉴질랜드 FTA의 수입자는 수입하는 때에 수입관세당국에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신고서 및 입증서류를 제출함

□ 중·뉴질랜드 FTA의 관세당국은 다음의 경우에 특혜관세 적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수출자, 수입자, 제조자 등에게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권한 있는 기관의 명칭, 서식의 보안관련 특징 등이 상대국 관세당국에 통지되지 않은 경우
- 수입자 등이 제41조에 의한 원산지 검증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수입국 관세당국의 자료요청 후 6개월 이내에 회신하지 않는 경우
- 물품이 원산지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특혜관세의 사후신청은 중·뉴질랜드 FTA만 규정함

- 수입하는 때에 당해 물품이 원산지요건을 충족했다는 서면신고서 또는 유효한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 이는 협정 발효 후 12개월 이후에 적용함

나) 원산지확인서류, 기록보관요건

□ 한·EU FTA의 원산지확인서류는 가공공정의 회계장부기록, 원재료의 내국법령에 따른 원산지입증서류, 재료의 가공공정입증서류 및 원재료의 원산지증명서 등이며 중·뉴질랜드 FTA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음

□ 중·뉴질랜드 FTA는 원산지입증서류의 보관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한·EU FTA는 전자매체로의 보관을 가능하게 규정함

- 한·EU FTA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수출자 및 수입관세당국은 5년간, 수입자는 내국 법령에 따라 원산지입증서류를 보관하여야 함

- 중·뉴질랜드 FTA의 수출자 등 원산지증명 관련 당사자는 원산지확인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의 사본 및 기타 원산지 관련서류를 각 내국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함

다) 원산지 검증, 전자증명 및 검증시스템, 벌칙, 비밀유지, 권한 있는 당국

- 한·EU FTA는 간접검증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반면 중·뉴질랜드 FTA는 직접검증 또는 간접검증을 선택할 수 있음
 - 한·EU FTA의 수입국 관세당국은 수출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할 수 있음
 - 중·뉴질랜드 FTA의 수입국 관세당국은 다음의 방법으로 원산지 검증을 수행함
 - 수입자에게 추가 정보를 서면으로 요청
 -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추가 정보를 서면으로 요청
 - 수출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 요청
 - 기타 양 당사국이 합의한 방법
- 중·뉴질랜드 FTA는 검증요청에 대한 회신기한 및 통지기한을 규정하지 않음
 - 한·EU FTA의 수입국 관세당국은 검증 요청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거나 그 회신의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 특혜관세 적용을 거부하며, 검증결과를 가능한 신속하게 통보받아야 함
- 중·뉴질랜드 FTA는 전자증명 및 검증시스템의 개발의무를 명시함
- 벌칙, 비밀유지: 중·뉴질랜드 FTA는 규정하지 않음

라) 기타

- 중·뉴질랜드 FTA의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amendment)방법을 명시함
 - 삭제나 중첩표기는 금지되며, 잘못된 정보는 지우고 추가로 기재하고 작성자의 배

서가 있어야 하며 빈 공간은 줄을 그어 추가 표기를 방지하여야 함

□ 기타 한·EU FTA는 중·뉴질랜드 FTA와 달리 다음의 규정을 두고 있음

- 인증수출자
 - 수출관세당국은 수출국 법령 요건에 따라 물품가격과 관계없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인증 및 인증을 취소할 권한을 가짐
- 분할수입
 - 특정 물품의 분해 또는 미조립 물품의 원산지신고서는 첫 번째 분할수입 때 제출하여야 함
- 관세의 환급 또는 면제
 - 협정 발효 후 1년 이내 관세환급 및 역내가공제도의 운용에 관한 통계를 교환하고 5년 후 공동으로 검토함
- 불일치 및 형식적 오류
 - 기재된 내용의 사소한 오류 및 오타와 같은 형식적 오류의 사유만으로 원산지 증거가 무효화되지 않음
-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
 - 송장이 유로화로 발급된 경우 EU 당사자가 통보한 금액의 적용방법 및 검토 절차를 규정함
- 자유지역
 - 운송 중 자유지역에서의 통상적 가공 외 추가공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원산지물품이 자유지역의 가공으로 원산지가 바뀌는 경우 다른 원산지증명이 작성될 수 있음
- 분쟁해결
 - 제27조의 원산지검증과 관련한 분쟁 및 이 의정서의 해석에 대한 사안은 관세 위원회에 제출하며, 수입자와 수입관세당국 간 분쟁해결은 내국법령에 따름

〈표 IV-10〉 양국의 선진국 FTA 원산지 절차 규정 비교

항목	한·EU	중·뉴질랜드	규정 차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Article 15, Article 16, Article 18	Article 36	소급발급(한·EU), 서식변경 (중·뉴)
원산지증명서의 면제	Article 21	Article 37	면제기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Article 40	
특혜관세 신청	Article 19	Article 34	
특혜관세 거부		Article 42	
특혜관세 사후신청		Article 35	
원산지확인서류	Article 22		
기록보관요건	Article 23	Article 39	전자보관, 보관기간(한·EU)
원산지 검증	Article 27	Article 41 1~3	검증방법, 회신기한 및 통지 기한(한·EU)
전자증명 및 검증시스템		Article 41 4	
벌칙	Article 29		
비밀유지	Article 6,8		
권한 있는 당국	Article 26	Article 46	
원산지위원회			
수정	Article 28		

마) 원할화, 관세평가, 품목분류

원할화와 품목분류 조항은 중·뉴질랜드 FTA만 규정하고 있으나, 한·EU FTA는 원할화 조항의 내용을 '적용범위 및 목적'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음

양 FTA 당사국은 관세평가 협약을 적용함

바) 전자서류자동화시스템, 공표 및 문의처, 위험관리, 특송화물, 상품의 반출

중·뉴질랜드 FTA의 당사국은 WCO범위 안에서 세관절차를 지원하는 정보기술을

적용하여 전자서류자동화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함

- 중·뉴질랜드 FTA는 이 장의 운영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물품 및 운송수단의 이동에 관한 관세법령 또는 절차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상대 관세당국에 시기적절한 통지(timely notice) 의무를 규정함
- 한·EU FTA는 위험관리에 관한 국제표준을 적용함
 - 위험관리 절차를 위해 1999년 개정교토협약 및 WCO위험관리지침(WCO Risk Management Guidelines)을 이용함
- 양 FTA는 아래와 같이 물품의 반출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EU FTA는 도착 전 전자 신고 및 수리, 과세확정 이전 물품의 반출 및 물품을 일시적으로 이동하지 않고 도착지점에서 물품을 반출하는 절차를 도입하거나 유지하도록 규정
 - 한·EU FTA 당사국은 관세 및 무역법령에 준수하는 기간 내에 물품을 반출하여야 함
 - 중·뉴질랜드 FTA의 당사국은 도착 48시간 이내에 물품을 반출하는 절차를 도입 또는 유지하여야 함
 - 단, 수입신고 시 수입자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물품이 검사대상 또는 검증대상이거나 불가항력에 의해 통관절차가 이행되지 못하는 경우를 배제함

사) 사전심사, 재심 및 불복청구

- 양 FTA는 사전심사 적용 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한·EU FTA는 결정의 공표의무를 규정함
 - 한·EU FTA의 당사국은 품목분류, 원산지 및 기타 양국이 결정하는 사안에 대해 사전심사를 적용하며 사전심사결정을 공표(예: 인터넷)하여야 함
 - 중·뉴질랜드 FTA의 당사국은 품목분류,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사전심사를 적용함

- 중·뉴질랜드 FTA에서 규정하는 사전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수출자, 수입자 또는 기타 관련당사자는 사전심사를 결정하는 관세당국의 언어로 수입하는 날로부터 적어도 3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경우 신청인은 중국 세관에 등록된 자여야 함
 - 관세당국이 요청하는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사전심사 결정을 거부할 수 있음
 - 관세당국은 자국 언어로 모든 필요한 자료를 접수하는 즉시 품목분류의 경우 60일 이내, 원산지의 경우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사전심사결정서를 발급하여야 함
 - 본 사전심사결정은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 또는 기타 내국법령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입항지를 불문하고 모든 수입건에 대해 적용함

- 양 FTA는 재심기관에 대해 유사하게 규정함
 - 한·EU FTA의 당사자는 관세 및 통관 절차의 결정(determinations)에 관하여 독립된 상위 사법기관 이전에 관세당국 및 그 감독기관 또는 사법권한이 있는 기관에 먼저 심리를 요구할 수 있음
 - 중·뉴질랜드 FTA의 당사국은 관세관련 결정(customs administrative rulings, determinations or decisions)에 대해 관세당국 또는 독립된 기관에 먼저 심리를 요구할 수 있음

- 한·EU FTA는 요청이 있는 경우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검토 당국에 직접 정보제공 및 비밀유지 요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 중·뉴질랜드 FTA는 재심 및 불복청구의 판정결과 및 사유는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함

- 세관 협력에 대하여 중·뉴질랜드 FTA는 개괄적으로 규정한 반면 한·EU FTA는 구체적인 의무를 규정함
 - 양국은 이 협정에 따라 통관기술 및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와 컴퓨터화된 시

시스템에 대한 전문지식을 교환하여야 함

- 양국은 문서 및 자료의 국제기준 조화, 관세분석소 간 협력, 통관전문가 교환, 훈련프로그램의 공동 조직, 무역업계 소통을 위한 매커니즘 개발, 지식재산권 관리 강화, 환적 및 통과물품의 물류망 관리 등을 이행하여야 함

- 중·뉴질랜드 FTA의 양 당사국은 무역 원활화를 위해 절차를 주기적으로 검토하며 위험관리절차는 시스템의 성과, 영향력 및 효율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함

- 중·뉴질랜드 FTA는 협의의 이행기한을 규정함

- 사안이 접촉선을 통한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한·EU FTA는 관세위원회(the Customs Committee)에, 중·뉴질랜드 FTA는 상품무역위원회(the Committee on Trade in Goods)에 회부함
- 협의는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되어야 함

- 중·뉴질랜드 FTA는 무역원활화위원회를 규정하지 않으며, 한·EU FTA의 관세위원회(Customs Committee)는 이 협정 제15.2조에 따라 무역위원회¹³²⁾의 산하기관으로 설치되는 전문위원회의 하나로 기능은 다음과 같음

- 관세위원회 한·EU FTA 제6장,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및 세관분야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 관련 문제해결 및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결정, 권고 또는 의견을 제정함
-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해 무역위원회에 보고함

- 한·EU FTA는 중·뉴질랜드 FTA와 달리 다음의 조항을 두고 있음

- 세관분야 상호 행정지원 이행
- 수수료 및 부과금

132) 무역위원회는 대한민국 통상교섭본부장과 무역을 담당하는 유럽 집행위원회 위원, 또는 그들 각각의 지명자들이 공동의장이 되어 매년 회합하며 이 협정에 규정된 모든 사안에 관하여 양 당사자를 구속하는 결정을 내리는 권한을 가짐

WTO 무역 원활화 그룹의 협상문 초안 제8조의 규정을 대부분 반영함

- 선적 전 검사 금지
- 통관 사후 심사

〈표 IV-11〉 양국의 선진국 FTA 통관 및 무역 원활화 규정 비교

항목	한-EU	중-뉴질랜드	
원활화	Article 6.3	Article 47	
관세평가	Article 6.12	Article 48	
품목분류		Article 49	
전자서류자동화시스템		Article 53	
공표 및 문의처	Article 6.5	Article 55	
위험관리	Article 6.4	Article 54	
특송화물		Article 56	
상품의 반출	Article 6.2	Article 57	
사전심사	Article 6.6	Article 52	사전심사 적용 범위, 결정의 공표의무(한·EU)
재심 및 불복청구	Article 6.7	Article 51	직접 자료제출 허용(한·EU)
세관 협력	Article 6.13, Article 6.14	Article 50	구체적인 의무(한·EU)
검토		Article 58	
협의	Article 6.15	Article 59	
무역 원활화위원회	Article 6.16		

다. 양국이 최근에 체결한 FTA

- 원산지 절차는 한·터키 FTA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N RULES OF ORIGIN AND ORIGIN PROCEDURES) 제2절 원산지 절차(SECTION B: ORIGIN PROCEDURES), 중·코스타리카 FTA 제4장 RULES OF ORIGIN AND OPERATIONAL PROCEDURES 제2절 원산지 절차(Section B: Related Operational Proce

dures)에서 규정하고 있음

- 통관 및 무역 원활화는 한·터키 FTA 제3장 관세 및 무역 원활화 (CUSTOMS AND TRADE FACILITATION), 중·코스타리카 FTA 제5장 Customs Procedures에서 규정하고 있음

1) 한·터키 FTA와 중·코스타리카 FTA

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제출 및 면제

-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특례로 한·터키 FTA는 원산지신고서의 소급발급을, 중·코스타리카 FTA는 소급발급 및 사본발급을 명시함
 - 한·터키 FTA의 원산지신고서는 수입후 2년 또는 수입국 법령에 명시된 기간 내에 제시되는 조건으로 수출 후 작성 가능함
 - 중·코스타리카 FTA에서는 뜻하지 않은 실수, 누락 또는 기타 타당한 사유로 인해 원산지증명서가 수출시 또는 수출 직후에 발급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ISSUED RETROACTIVELY)'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 발급할 수 있음
 - 중·코스타리카 FTA의 원산지증명서가 절도, 멸실 또는 소실의 경우 사본 발급이 가능하며, 사본에는 'CERTIFIED TRUE COPY of the original Certificate of Origin number_dated_'라는 문구를 표기하여야 함
- 원산지신고서는 수출 당사국에서 발급된 날로부터 12개월 동안 유효하며, 특혜관세 대우는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그 기간 내에 요청되어야 하고, 이는 한·터키 FTA, 중·코스타리카 FTA 공히 동일함
- 한·터키 FTA에서는 사인 간 소포로 송부되었거나 여행자의 개인 수하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제품은 원산지신고서의 제출 없이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되나, 이러한 제품

이 상업적으로 수입되지 않고, 협정서의 요건을 충족하며, 신고의 진실성에 의심이 없는 경우에 한함¹³³⁾

○ 터키로 수입되는 경우, 소포의 경우 500유로 또는 여행자의 개인 수하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제품의 경우 1,200유로의 가치를 초과할 수 없음

○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소포의 경우와 여행자 개인 수하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제품의 경우 모두 미화 1,000달러의 가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코스타리카 FTA에서는 상품의 총관세가격이 미화 600달러 또는 당사국의 통화로 환산하여 이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이를 초과하지 않는 상품의 수입이 원산지 증명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지지 않는다고 합리적으로 간주될 때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음¹³⁴⁾

○ 다만, 상업 목적의 수입인 경우, 송장상에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600달러 이하의 수입이라 할지라도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음

□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기관증명방식인 중·코스타리카 FTA만 규정함¹³⁵⁾

○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만 발행되어야 함

○ 양 당사국은 권한 있는 기관의 명칭, 관련 연락처, 서식, 직인의 보안관련 특징 및 변경사항을 상대국 관세당국에 통지하여야 함

나) 원산지 확인서류 및 기록보관요건

□ 한·터키 FTA와 중·코스타리카 FTA의 원산지확인서류는 가공공정의 회계장부기록, 원재료의 내국법령에 따른 원산지입증서류, 재료의 가공공정 입증서류 및 원재료의 원산지증명서 등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¹³⁶⁾

133) 한·터키 FTA 협정문,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관한 의정서, 제20조

134) China·Costarica FTA Agreement, Article 43

135) China·Costarica FTA Agreement, Article 38

136) 한·터키 FTA 협정문,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관한 의정서, 제21조 & China·Costarica FTA Agreement, Article 39

- 한·터키 FTA, 중·코스타리카 FTA는 원산지증명서 사본, 원산지입증서류 등의 보관기간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으며, 한·터키 FTA는 전자매체로의 보관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터키 FTA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수출자 및 수입관세당국은 5년간, 수입자는 내국 법령에 따라 원산지입증서류를 보관하여야 함¹³⁷⁾
 - 중·코스타리카 FTA의 수출자는 3년간 원산지 관련서류를, 수출관세당국은 3년간 원산지증명서의 사본을 보관하여야 함¹³⁸⁾

다) 원산지 검증 및 특혜관세대우의 배제

- 한·터키 FTA는 간접검증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반면 중·코스타리카 FTA는 직접검증 또는 간접검증을 선택할 수 있음
 - 한·터키 FTA의 수입국 관세당국은 수출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할 수 있음
 - 중·코스타리카 FTA의 수입국 관세당국은 다음의 방법으로 원산지검증을 수행함
 - 수입자에게 추가 정보를 서면으로 요청
 -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추가 정보를 서면으로 요청
 - 수출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 요청
 - 검증 방문을 포함하여 기타 양 당사국이 합의한 방법
- 한·터키 FTA와 중·코스타리카 FTA는 검증요청에 대한 회신기한 및 통지기한을 각각 별도로 상이하게 정하고 있음
 - 한·터키 FTA의 수입국 관세당국은 검증 요청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거나 그 회신의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 특혜관세 적용을 거부하며, 검증결과를 가능한 신속하게 통보받아야 함¹³⁹⁾
 - 중·코스타리카 FTA에서는 검증요청을 받은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검증

137) 한·터키 FTA 협정문,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관한 의정서, 제22조

138) China·Costarica FTA Agreement, Article 40

139) 한·터키 FTA 협정문,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관한 의정서, 제25조

결과를 검증요청 서면통지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검증요청을 한 관세당국에 보고해야 하고, 검증요청을 받은 관세당국은 검증결과를 6개월 이내에 상대국 관세당국에 보고해야 함을 규정함¹⁴⁰⁾

- 한·터키 FTA에서는 직접운송에 관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원산지증명이 초기에 부정으로 수입되었던 제품에 대해 그 이후에 작성되었을 경우, 원산지증명이 협정의 비당사국 수출자에 의해 발행되었을 경우, 수입자가 수입 당사국의 법령에 명시된 기간 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특혜대우가 원산지증명의 검증 없이 거절될 수 있음을 규정함

- 중·코스타리카 FTA의 관세당국은 다음의 경우에 특혜관세 적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수출자, 수입자, 제조자 등에게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을 규정함¹⁴¹⁾
 - 수입물품이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 수입물품이 직접운송에 관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의 명칭, 서식의 보안관련 특징이나 이런 정보의 변경내용 등이 상대국 관세당국에 통지되지 않은 경우
 - 수입자 등이 원산지 검증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원산지증명서가 원산지 규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규정대로 서명·날인되지 않은 경우
 -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원산지증명서상의 물품의 세부정보, 양과 무게, 포장의 표시와 숫자, 포장의 종류 등이 물품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140) China · Costa Rica FTA Agreement, Article 44

141) China · Costa Rica FTA Agreement, Article 45

라) 기타

- 기타 한·터키 FTA는 중·코스타리카 FTA와 달리 다음 규정을 두고 있음
 - 분할수입
 - 특정 물품의 분해 또는 미조립 물품의 원산지신고서는 첫 번째 분할수입 때 제출하여야 함
 - 불일치 및 형식적 오류
 - 기재된 내용의 사소한 오류 및 오타와 같은 형식적 오류의 사유만으로 원산지 증거가 무효화되지 않음

〈표 IV-12〉 양국의 최근 FTA 원산지 절차 규정 비교

항목	한·터키	중·코스타리카	규정 비교
원산지증명서, 효력	Article 16,17,18	Article 37	
원산지증명서의 면제	Article 20	Article 43	면제 요건 상이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Article 38	
특혜관세 신청 및 거부	Article 18,26	Article 45	
특혜관세 사후신청	Article 17		
원산지 확인서류	Article 21	Article 39	
기록보관요건	Article 22	Article 40	보관대상, 보관기간 상이
원산지 검증	Article 25	Article 44	검증방법, 회신기한 상이
전자증명 및 검증시스템			
벌칙	Article 29	Article 55	
비밀유지	Article 3,10		
원산지위원회	Article 31	Article 46	
검토 및 불복청구			
수정			
제3국 송장	Article 27		
운송/보관 중 물품			

○ 자유지역

- 운송 중 자유지역에서의 통상적 가공 외 추가공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원산지물품이 자유지역의 가공으로 원산지가 바뀌는 경우 다른 원산지증명이 작성될 수 있음

○ 분쟁해결

- 원산지검증과 관련한 분쟁 및 이 의정서의 해석에 대한 사안은 관세위원회에 제출하며, 수입자와 수입관세당국 간 분쟁해결은 내국법령에 따름

마) 전자서류 자동화시스템 및 위험관리

- 양 FTA 공히 세계관세기구 내 자동화 시스템의 진전상황을 고려하여 특히 종이 없는 무역의 맥락에서 비용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세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품의 반출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정보기술을 적용함을 규정함¹⁴²⁾
- 중·코스타리카 FTA에서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EO)제도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며, 한·터키 FTA에서도 AEO 안전 지위 인정은 국제무역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하고 관세안전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무역 원활화 혜택이 제공되어야 함을 원론적인 측면에서 간단히 언급하고 있음¹⁴³⁾
- 위험관리 부분에 있어서 양 FTA 공히 자국의 관세당국이 검사 활동을 고위험 상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저위험 상품의 통관 및 이동을 간소화하는 위험 분석과 선별을 위하여 위험관리 시스템을 채택하고 유지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¹⁴⁴⁾
 - 한·터키 FTA에서는 추가적으로 위험관리 절차를 위해 1999년도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판(개정 교토협약)과 세계관세기구 위험관리 지침(WCO Risk Management Guidelines)을 이용할 것을 규정함

142) 한·터키 FTA 협정문, 제3.4조 & China·Costarica FTA Agreement, Article 50

143) 한·터키 FTA 협정문, 제3.5조

144) 한·터키 FTA 협정문, 제3.6조 & China·Costarica FTA Agreement, Article 52

바) 상품의 반출

- 양 FTA는 아래와 같이 물품의 반출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터키 FTA는 도착 전 전자 신고 및 수리, 과세확정 이전 물품의 반출 및 물품을 일시적으로 이동하지 않고 도착지점에서 물품을 반출하는 절차를 도입하거나 유지하도록 규정함¹⁴⁵⁾
 - 한·터키 FTA 당사국은 관세 및 무역법령에 준수하는 기간 내에 물품을 반출하여야 함
 - 중·코스타리카 FTA의 당사국은 도착 48시간 이내에 물품을 반출하는 절차를 도입 또는 유지하여야 함

- 한·터키 FTA에서는 추가적으로 수입자 및 수출자가 모든 요청된 자료를 한 기관에 제출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각 관련기관의 자료 요건을 조화시키고 무역자료 제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함¹⁴⁶⁾
 - 또한, 수입 당사국의 법 또는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여 수입상품을 유치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수입자에게 자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유치이유를 즉시 통보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사) 사전심사, 재심 및 불복청구

- 양 FTA는 사전심사 적용 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한·터키 FTA에서는 추가적으로 결정의 공표의무를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음¹⁴⁷⁾
 - 한·터키 FTA의 당사국은 품목분류, 원산지 및 기타 양국이 결정하는 사안에 대해 사전심사를 적용하며 사전심사결정을 인터넷 등에 공표하여야 함
 - 중·코스타리카 FTA의 당사국은 품목분류,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사전심사를 적용함

145) 한·터키 FTA 협정문, 제3.2조 & China·Costarica FTA Agreement, Article 49

146) 한·터키 FTA 협정문, 제3.2조

147) 한·터키 FTA 협정문, 제3.8조 & China·Costarica FTA Agreement, Article 56

- 중·코스타리카 FTA에서 관세당국은 모든 필요한 자료를 접수한 후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사전심사 결정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이 결정서는 결정서에 기술된 사실이나 환경이 변하지 않는 한 공지된 날짜부터 효력이 발생함¹⁴⁸⁾

- 중·코스타리카 FTA는 무역원활화위원회를 규정하지 않으며, 한·터키 FTA의 관세위원회(Customs Committee)는 이 협정 제7.2조에 따라 무역위원회의 산하기관으로 설치되는 전문위원회의 하나로 기능은 다음과 같음¹⁴⁹⁾
 - 관세위원회는 한·터키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및 세관분야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 관련 문제해결 및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결정, 권고 또는 의견을 제정함
 -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해 무역위원회에 보고함

- 한·터키 FTA는 중·코스타리카 FTA와 달리 다음의 조항을 두고 있음
 - 간소화된 통관절차 (제3.3조)
 - 선적 전 검사 금지 (제3.11조)
 - 통관 사후 심사 (제3.12조)
 - 관세평가 (제3.13조)
 - 관세당국 연락처 (제3.16조)
 - 무역 원활화위원회 (제3.17조)

148) China · Costa Rica FTA Agreement, Article 56

149) 한·터키 FTA 협정문, 제3.17조

〈표 IV-13〉 양국의 최근 FTA 통관 및 무역 원활화 규정 비교

항목	한·터키	중·코스타리카	규정 비교
원활화			
관세평가	Article 3.13		
품목분류			
전자서류자동화시스템	Article 3.4	Article 50	
공표 및 문의처	Article 3.7	Article 48	
위험관리	Article 3.6	Article 52	
특송화물		Article 53	
상품의 반출	Article 3.2	Article 49	
사전심사	Article 3.8	Article 56	
재심 및 불복청구	Article 3.9	Article 54	
세관 협력	Article 3.14, 3.15	Article 51	
검토			
협약	Article 3.16		
무역 원활화위원회	Article 3.17		

3. 소결

가. 산관학 FTA 공동연구 권고의견

- 2010년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및 2011년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에
서 양 당사국의 통관절차 및 세관협력은 WTO규범과의 합치성을 기본 원칙으로 하
기로 협의함

1)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보고서(The Joint Study Report for Korea-China FTA, May 2010)

- 2006년 11월 APEC 정상회의 계기로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출범 합의 후 2010년 5월 산관학 보고서 문안을 최종 합의함
- 5개 원칙에 대한 공통 이해 도출: ① 포괄성, ② 실질적 자유화, ③ WTO 규범과의 합치성, ④ 민감부문 고려, ⑤ 지속가능한 개발
- 통관 및 무역 원활화 부문에 1994년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분야 협력 및 상호지원에 관한 협정¹⁵⁰⁾(이하 ‘한·중세관협정’이라 함)의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해외통관 애로사항의 해소, 밀수 및 부정무역 단속을 위한 정보교환, 수출업체 지원 및 관세행정 발전 도모를 위해 1994년 체결되어 1995년 4월 발효
- 한·중세관협정의 상호지원 범위는 관세 등의 산정, 관세법 집행에 필요한 정보제공, 세관 절차의 개발, 인력의 훈련 및 교류, 관세행정의 문제해결 등으로 함
 - 세관공무원 및 전문가의 교류, 세관공무원의 전문기술 개발을 위한 훈련 및 지원, 관세법 및 세관절차와 관련된 전문자료의 교환에 관련된 기술지원을 포함함
 - 범죄 예방 및 진압 기술, 통관절차, 통관절차의 전산관리, 관세 등의 징수, 수출입 금지 및 제한, 원산지 규정의 적용 등에 관한 정보를 상호 통보함
 - 질의·정보·문서·기타 의사 교환은 요청이 있는 경우 비밀로 취급되며 원칙적으로 협정에 명시된 목적에 제한적으로 사용됨
 - 지원 요청은 영어로 작성되며 서면통보를 원칙으로 함
 - 자국의 이익 또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세관당국의 재량으로 요청을 거부하

150)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oncerning Cooperation and Mutual Assistance in Customs Matters(<http://www.law.go.kr/trtyBInfoP.do?trtySeq=1267>)

- 는 경우 거부사유를 통보하여야 함
 - 지원은 양 세관당국(대한민국의 관세청, 중화인민공화국의 해관총서) 최고책임자가 지명한 공무원 간 직접적인 의사교환을 통해 제공됨
- 양 세관당국은 관세법을 위반하였거나 의심을 받는 운송수단, 물품 또는 사람에 대해 특별감시를 요청할 수 있음
- 품목분류, 원산지판정 관련 협력, 무서류 통관 촉진 등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함¹⁵¹⁾
 - 보고서 제3장 Impact of Trade Liberalization on Goods, 3.4 Customs Procedures and Trade Facilitation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향후 협정문 본문에 세관협력 분야에 대해 논의 중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당사국이 요청하는 경우 관세법을 제정, 시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
 - 새로운 통관 절차를 연구, 개발, 시험, 교육, 인력 지원에 대한 협력
 - 관련 기술과 검증 방법 등의 관세 관련 기술적인 정보를 교환
 - WCO, WTO규정과 관행과 같은 국제 표준에 따라 무역서류와 전자정보를 조화시키기 위한 노력
- 세관 협력 분야에 대해 다음의 내용을 추후 논의할 수 있음
 - 투명하고 국제표준을 반영하는 통관 절차의 보유
 - 무역 원활화에 적극적으로 협조
 - 당사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원산지 확인에 대한 사전심사 절차에 협조
 - 원산지 검증, 상업 사기, 마약 거래 추적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보다 공식적인 협력을 포함한 종이 없는 전자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
 - WCO의 규정 및 각국의 관세행정조치에 관한 공조
 - 특히 위조품 거래 및 수입, 수출, 재수출, 통과, 환적, 기타 제반 통관절차에 관한 강력하고 효율적인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 제정의 촉진

151)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한·중FTA 산관학 공동연구 보고서』 주요 내용, 2010. 6. 1

- 관세협력 및 무역 원활화에 관한 관세관련 법령, 관세당국의 결정 및 판례 등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표

2)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보고서(Joint Study Report for an FTA among China, Japan and Korea, December 16, 2011)

- 2009년 10월 10일 3국 정상회의에서 산관학 공동연구 개시에 합의한 후 2011년 12월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종료함
- 3국 FTA는 향후 협상 시 다음 기본 원칙에 유의하여야 한다는 데 공감함: ①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② WTO 규범과의 합치성, ③ 이익의 균형, ④ 민감부문에 대한 고려
- 통관절차 및 무역 원활화 부문에 3국 FTA내에서 1) 3국의 통관절차와 국제 기준간 조화의 중요성, 2) 관련 법령의 영문 공표 등 투명성 조치의 필요성, 3) 3국 관세당국 간 협력 강화 및 4) 이를 위한 문의처(inquiry point)지정의 필요성을 제시함¹⁵²⁾
 - 보고서의 상품무역협정 제4장 Customs Procedures and Trade Facilitation에서 권고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통관절차의 조화와 간소화: 3국은 통관절차에 관한 중대 국제표준인 개정교토협약에 가입하고 안전관리 표준(the SAFE Framework of Standards; SAFE)을 이행할 것을 동의함에 따라 향후 협상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각국의 일관된 통관 절차(Consistent Implementation Nationwide)
 - 3국 FTA의 통관절차와 무역 원활화에 관한 장(Chapter)에서는 3국간의 통관절차를 조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의 전제조건으로 각국의 통관절차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함
 - 정보기술의 적용(Applic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152)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보고서』 주요 내용, 2012. 3. 30

- 통관절차를 조화시키고 간소화함에 있어 정보기술의 적용은 필수적이며 단일 서류 접수 창구는 향후 논의될 고도의 발전된 시스템 중의 하나임
- 위험관리(Risk Management)
 - 3국은 세관감독이 영향력 있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개정교토협약과 SAFE Framework에 준수하는 위험관리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함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WCO의 SAFE Framework에서 도입된 AEO프로그램은 3국 간 물품이동이 안전하고 원활하도록 보장하는 세관의 관리감독 프로그램으로 3국 모두 시행 중이며 이들의 상호인정 가능성에 대해 논의 중임(2011년 5월 한·일 AEO 상호인정협약 체결)
- 투명성: 계약당사국의 제조자, 수출자를 위하여 관세 관련 법령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법 등으로 주기적으로 세부 통관절차를 공표하여야 함
 - 아울러 정보접근이 용이하도록 영어로 표기하는 것을 권고함
- 사전심사: 수입자, 수출자, 제조자인 무역거래당사자들에게 품목분류, 원산지확인 등에 관한 사전심사라는 단일화된 절차를 통해 향후 3국 FTA의 관세행정조치의 투명성을 보장해주어야 함
- 세관 협력: 3국 중 양국 간의 세관협력 이외에 향후 3국 FTA로 인한 세관협력은 마약, 무기,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등의 이동을 감독하기 위한 정보교환 및 관세행정 조치의 이행을 원활히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또한 정보문의처를 지정하여 3국 FTA의 향후 협상 및 발효 후에도 관세위원회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도록 해야 함
- 관세위원회는 3국의 관세당국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되어 향후 FTA의 효율적인 실행에 기여하도록 함

나. 시사점

1) 원산지증명 절차

- 양국은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소급, 정정, 재발급 등의 발급특례를 제외하고는 협정관세의 적용 및 거부요건, 사후 적용신청 절차를 유사하게 규정함
- 관세당국이 원산지 검증을 위해 요구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원산지 확인서류를 모든 FTA에서 규정하지는 않음
- 일정금액 이하의 비상업용물품에 대해 우리나라는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신고서의 제출의무가 면제되지만 중국은 한·싱가포르 FTA, 한·ASEAN FTA를 제외한 기타 FTA의 경우 각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 문구를 기재한 상업송장을 제출하여야 함
- 원산지증빙서류의 보관기간은 우리나라의 경우 5년, 중국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¹⁵³⁾
- 중국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인 세관(The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이 직접운송원칙 준수 여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및 기타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결정하여 수출화물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증명방식만을 채택하고 있음
- 따라서 원산지 자율증명 가운데 서류제출 요건을 간소화하기 위한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를 운영하지 않아 수출자의 원활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어려움
 -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란 수출자가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능력 등 인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

153) 아태무역협정의 경우 보관기간을 최소 2년으로 하고 있음(아태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검증 조작절차 제7조)

- 의 제출 생략 등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자율증명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지정요건에 따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구분하여 각 3년 및 2년 동안 인증이 유효함
 - 업체별 인증수출자의 경우 수출제품 및 원재료의 품목분류번호 및 원산지증빙서류관리능력,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원산지판정의 정확성, 원산지관리시스템 운영 등의 원산지증명능력을 심사함
 - 현재 우리나라는 한·EFTA FTA, 한·EU FTA, 한·페루 FTA에 적용하고 있음

〈표 IV-14〉 한국과 중국의 FTA 원산지증명 절차 비교

구분	한국	중국
발급방법	기관증명, 자율증명 ¹⁾	기관증명 ²⁾
원산지인증 수출자제도	운영	운영하지 않음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단, 칠레: 2년, ASEAN: 6개월)	발급일로부터 1년
원산지증명서 발급 특례	재발급, 소급발급, 정정발급 인정	재발급, 소급발급 인정
원산지증명서의 면제	미화 1,00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 면제	미화 600달러(칠레, 페루)또는 미화 1,00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 원산지신고서 제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세관	세관
원산지증빙서류 보관기간	최소 5년	최소 3년

주: 1) FTA특례법 고시

2) 중국 특혜원산지관리규정 제17조, 제18조

2) 원산지 검증

- 원산지 검증은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정확성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요청받은 경우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방문조사; verification visit)를 말함¹⁵⁴⁾

- 모든 FTA는 원산지 검증의 방법, 이행 절차를 규정하며 다만 전자증명 및 검증시스템을 규정한 FTA는 한·페루 FTA, 중국의 경우 칠레, 페루, 뉴질랜드와의 FTA에서 명문화함
- 중국 세관은 필요 시 수출회원국이나 지역의 주관기관에 수입화물의 원산지에 대한 실사를 요청하거나 수출화물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고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 방문실사를 실시할 수 있음¹⁵⁵⁾
- 검증 대상자는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계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및 원산지심사 대상자로 이에 따라 수입국 관세당국이 직접 대상자를 검증하는 직접검증과 수출국 관세당국에 검증을 요청하는 간접검증으로 구분됨
- 비교대상 FTA 가운데 한국은 싱가포르, 칠레 FTA는 직접검증을, ASEAN FTA는 예외적으로 직접검증을, EU FTA는 간접검증, 페루 FTA는 직접검증 또는 간접검증 절차를 선택할 수 있으며, 중국은 칠레 FTA는 간접검증만을, 기타 FTA는 간접검증 또는 직접검증절차를 선택할 수 있음
- 검증절차에서 발생하는 자료요청, 통지 등 결국 양 관세당국의 행정협력절차로 이어짐
- 한·페루 FTA만 검증결과의 전자적 정보의 제공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음
- 양국은 FTA의 원산지절차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각 내국법령에 따라 벌칙을 부과하고 있음

154) FTA특례법 제13조

155) 중국 특혜원산지관리규정 제22조, 제23조

- 한국은 원산지증빙서류를 부정한 발급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발급한 자, 원산지증빙서류 보관의무를 위반한 자 등에 대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 중국은 허위 자료를 제공하여 수출 화물의 원산지증명서를 취득하거나 수출화물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변조, 매매 또는 절도의 행위에 대해 5천위안 이상 1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표 IV-15〉 한국과 중국의 FTA 원산지 검증 비교

구분	한국	중국
검증방법	직접검증, 간접검증	직접검증, 간접검증
검증기관	세관	세관
사후검증	수리일로부터 5년 이내	통관일로부터 3년 이내
요청 회신기한	체약당사국별로 상이함 (칠레: 질의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페루: 요청일로부터 30/90/150일 이내)	체약당사국별로 상이함 (요청일로부터 칠레: 6개월 이내, 페루: 30/90/150일 이내, 뉴질랜드: 규정하지 않음)
검증결과 통지기한	- 검증대상자: 검증완료일로부터 30일 - 체약국 관세당국: 체약당사국별로 상이함 (ASEAN: 검증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 페루: 검증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 EU: 요청일로부터 10개월)	체약당사국별로 상이함 (칠레: 빠른 시일 안에, 페루: 검증시작일로부터 300일 이내, 뉴질랜드: 규정하지 않음)
벌칙	2천만원 이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¹⁾	5천위안 이상 10만위안 이하의 벌금 ²⁾

주: 1) FTA특례법 22조
2) 원산지조례 제23조

3) 사전심사

- 사전심사란 수입자 또는 수출자가 과세가격, 품목분류, 원산지 등에 대한 의문사항을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관세당국에 신청하는 제도를 말함
-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보고서의 내용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사전심사는 양국이 단일화된 절차로 관세행정조치의 투명성을 보장해주어야 하나 한국과 중국은 심사의 범위, 결정기한 및 효력범위 등을 달리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원산지사전심사의 범위를 품목분류, 원산지 이외에도 포괄적으로 규정
한 반면 중국은 칠레, 페루, 뉴질랜드 FTA에서 품목분류, 원산지 충족 여부로 제한하
고 있음
 - 한·칠레 FTA는 원산지사전심사의 범위로 조정가격, 비용계산방식 등을 포함
 - 우리나라 원산지사전심사의 범위는 FTA특례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물품 및 원재료의 원산지 이외에도 다음을 대상으로 함¹⁵⁶⁾
 - 당해물품 및 당해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품목분류, 가격 또는 원가결
정에 관한 사항
 - 부가가치의 산정
 - 당해물품에 대한 관세의 환급 및 감면에 관한 사항
 - 해당 물품의 원산지표시
 - 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사항
 - 기타 협정관세의 적용 또는 관세면제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

- 우리나라의 경우 FTA특례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사전심사결과를 인터넷을 포함
한 정보통신망에 공표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중국의 경우 사전심사 결정일로부터 3
년 이내의 기간 동안 반복 적용하도록 결과의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있음

156) FTA특례법 시행령 제19조

〈표 IV-16〉 한국과 중국의 FTA 사전심사제도 비교

구분	한국 ¹⁾	중국 ²⁾
판정기관	관세평가분류원	세관
신청인	의문이 있는 자(채약상대국의 수출자와 생산자, 그 대리인 포함)	수입자
신청시기	수입신고 전	수입신고 전 (뉴질랜드: 3개월 전)
판정대상	품목분류, 원산지, 기타	품목분류, 원산지
결정기한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칠레: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페루: 120일 이내, EU: 규정없음)	모든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150일 이내 (신청일로부터 칠레: 150일 이내, 페루: 원산지 90일, 뉴질랜드: 품목분류 60일, 원산지 90일)
유효기간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하여 사전심사서와 당해 수입물품이 동일한 경우 반복적용	판정을 내린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물품이 사전심사 대상 물품과 동일하고 원산지 규정에 변화가 없는 경우 반복적용

주: 1) FTA특례법 제14조, FTA특례법 고시 제5장
 2) 중국 세관법 제43조, 중국 원산지조례 제12조, 제13조

- 이에 대해 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¹⁵⁷⁾로는 사전심사의 대상은 잠정적으로 품목 분류, 과세가격, 환급, 쿼터적용 여부, 원산지, 수수료 및 부과금 및 기타 사안임
- 또한 사전심사 결정은 발급일로부터 합리적인 기간(a reasonable period) 동안 유효하며 사전심사 신청시 제공해야 하는 정보 및 서식 등의 요건, 사전심사 결정 기한 및 사전심사결정의 유효기간을 공표해야 함
- 특히, 중국에 소재한 우리나라 수출입기업의 무역 애로사항으로 품목분류의 일관성 부족이 크게 작용하고 있어 품목분류 사전심사결정의 구속성을 강화하는 장치가 필요함
 - 상해의 경우 품목분류 업무량 증가로 자격 있는 제3자 대리회사에 배부/외주를 선호하여 20개 통관업체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¹⁵⁸⁾
 - 특히 상하이 세관의 경우 품목분류 사전심사결정의 유효기간이 발급한 지역에서

157) 무역 원활화협상그룹 통합협상문 초안(TN/TF/W/165/Rev.11) 제3조

158) 관세청, 해외관세관 통관설명회, 2012

만 1년간 유효하여 수출입업자 및 생산자 등 관련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지 않음

- 따라서 양국은 사전심사의 범위, 요건, 사전심사의 결정기한, 관세당국이 공표해야 하는 내용 등 구체적인 절차를 일관성 있게 통일 또는 조정하여 이를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함
- 양국의 국내법령에 따른 과세가격,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음
 - 중국이 2012년 도입한 과세가격사전심사제도는 기업분류 A급 이상 업체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함

〈표 IV-17〉 한국과 중국의 사전심사제도 비교

구분		한국 ¹⁾	중국 ²⁾
과세 가격	신청인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기업분류 A급 이상 기업
	신청시기	가격신고 전	수입신고 15일 전
	판정기한	(일반)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특수관계자간거래)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품목 분류	판정기관	관세평가분류원	입항지 해관, 품목분류 분증심
	신청인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수출입기업
	신청시기	수출입신고 전	수출입신고 45일 전
	판정기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주: 1) 과세가격: 관세법 제37조,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7장, 품목분류: 관세법 제86조,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2) 품목분류: 중국 세관법 제43조, 세관수출입화물 상품분류 관리규정 제15조 내지 제20조

4) 주기적 공표

- 공표란 관세당국이 관세협력 및 무역 원활화에 관한 관세관련 법령, 관세당국의 결정 및 판례 등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일반인에게 공지하는 것을 말함
- 중국 관세당국은 최근 급격하게 법령을 제정 및 개정하고 있어 양국의 생산자, 수출입 이해관계인 등은 통관 및 관련 절차 이행의 일관성을 위해 정보공개 투명성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실정임
- 한국과 중국은 공표대상, 공표기한 등을 각 FTA마다 달리 규정하고 있음
 - 한·페루 FTA에서 관세법령 또는 절차의 수정을 ‘적절한 시간’내에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한·EU에서는 공식적으로 지정된 매체를 통해 가능한 경우 공식적인 웹사이트를 통해 공표할 것을 규정함
 - 중·칠레 FTA의 경우 국내 법령에 따른 원산지규정에 관한 관세법령 및 통관절차를 인터넷에 공표할 것을 규정, 중·페루 FTA에서는 한국과 동일하게 통지 기한을 명시하고 있으며, 중·뉴질랜드 FTA에서는 공표의무만을 명시함
-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보고서는 관세 관련 법령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법 등으로 ‘주기적으로’ 세부 통관절차를 공표하여야 하며 아울러 정보접근이 용이하도록 ‘영어로’ 표기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음
- 개정교토협약 일반부속서 제9장에서는 관세당국이 관세법령의 일반적인 적용에 관한 모든 정보 및 수정된 정보를 미리 이해관계인에게 제공해야 함을 규정함
 - 관세당국은 제공된 정보가 관세법령, 행정제도 또는 요건의 변경으로 인하여 수정되어야 할 경우 사전통보가 배제되어 있지 않는 한, 이해관계인이 이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당해 법령이 발효되기 전에 미리 수정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WTO 무역 원활화 협상그룹의 회원국은 통관절차와 관련한 다음의 내용을 즉시

(promptly) 공표해야 하며, 수출입절차(이는 WTO의 공식언어 중 하나로 공표), 통관 서류, 무역 관련 법령, 문의처의 연락방법은 인터넷에 공표해야 한다는 의견임

- 수출입, 환적 절차 및 관련 서류, 수출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및 제세, 수수료 및 부과금,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에 관한 법령, 원산지결정에 관한 법령 및 결정, 수출입 금지 및 제한사항, 벌칙, 불복절차, 수출입 관련 기타 국제협약, 관세할당에 관한 행정절차

□ 또한 새로운 법령 또는 개정된 법령은 공표 이후 합리적인 시간(a reasonable interval) 이후에 시행되어야 하며, 이해관계인에게 개정된 법령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 및 합리적인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임

□ 따라서 양국 관세당국은 관세 관련 법령 및 절차의 공표대상, 주기, 공표언어, 시행 전 합리적인 시간을 명시하여 무역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음

5) 세관협력

□ 상호행정지원(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이라 함은 관세당국이 관세법령의 적절한 적용과 관세범죄의 예방, 수사 및 억제를 위하여 다른 세관당국을 대신하거나 또는 다른 세관당국과 협력하여 취하는 행위를 말함

□ 한국은 칠레, 페루, EU, 터키 등 각 FTA에 상호세관지원협정의 내용을 개별 규정으로 반영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일관되게 한 개의 규정에 간략히 지원의무만을 명시함

- 각 FTA에서 한국은 문서 및 자료의 국제기준 조화, 관세분석소 간 협력, 통관전문가 교환, 훈련프로그램의 공동 조직, 무역업계 소통을 위한 매커니즘 개발, 지식재산권 관리 강화, 환적 및 통과물품의 물류망 관리 등의 이행의무를 개별 규정으로 명문화함

– 한·EU FTA는 원산지의정서 제16.6조에 따라 관세위원회가 세관 분야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the Protocol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Customs Matters)의 적절한 기능을 보장함

- SAFE Framework에서 권고하는 대로 앞으로 한·중세관협정을 2004년 WCO의 관세 행정지원에 관한 쌍무협약모델(Model Bilateral Agreement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customs matters; MAAA)과 비교하여 국제 표준에 상응하는 보충 및 개정이 사전에 이행되어야 할 것임

6) 위험관리

- WTO 및 WCO에서 말하는 위험관리란 위험 가능성이 있는 화물 또는 이동을 식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세관에 제공하기 위한 관리절차 및 이행을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함
 - 개정교토협약은 일반부속서 6.2 및 6.3 표준에서 세관통제는 필요한 정도로 한정하되 위험관리기법을 사용하여 적용해야 함을 규정함
- 양국은 페루, 한·EU, 중·뉴질랜드, 한·터키, 중·코스타리카 FTA에서 모두 이를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은 중국과 달리 위험관리에 관한 FTA 규정에 고위험물품에 대한 세관의 집중감독의무 이외에도 다음과 같이 국제표준에 따른 이행을 강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한·페루 FTA는 AEO 상호인정 의무를 협정 발효일 다음날로부터 3년 이내에 완전히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한·EU FTA는 위험관리절차를 위해 1999년 개정교토협약 및 WCO 위험관리지침(WCO Risk Management Guidelines)을 이용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보고서에는 3국은 세관감독이 영향력 있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개정교토협약과 SAFE Framework에 준수하는 위험관리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함

- 한국과 중국은 2012년 5월 현재 MRA체결의 2단계¹⁵⁹⁾인 합동심사를 시행하고 MRA 체결협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2011년 8월 한국과 중국은 AEO MRA체결에 합의한 이래 2009년부터 양국의 기준 비교 등을 검토해 왔음
 - 그러나 중국측 AEO 기준이 국제규범인 SAFE Framework와 다른 점이 있어 협상이 미뤄지다가 2011년 말 자국 기준을 국제규범에 맞게 개정하여 협상이 재개됨

- 우리나라 AEO기업의 수출물품에 대한 비관세장벽의 상당한 부분이 제거되어 FTA로 인한 관세장벽 철폐와 함께 명목적인 시너지 효과가 예상됨
 - 앞으로 우리나라의 제 1교역국인 중국과 MRA를 체결할 경우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규모 가운데 MRA체결국과의 무역 규모가 절반에 가까운 45% 이상을 차지함

- 그러나 한국과 중국은 MRA 인정대상자를 달리 규정하고 있어 MRA로 인한 실질적인 비관세장벽 철폐 효과는 미지수임
 - WCO는 모든 수출입공급망 당사자를 대상으로 MRA를 체결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¹⁶⁰⁾
 - SAFE Framework에 따른 AEO의 수출입운영인은 제조업자, 수출자, 수입자, 포워더, 관세사, 국내운송인(보세운송), 보세구역, 항만/공항운영인(하역업자 포함), 선박회사, 항공회사임
 - 우리나라는 모든 당사자를 MRA 체결의 인정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중국은 수출자, 수입자 및 관세사만을 인정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

- 중국에서의 AEO공인심사 기준의 영토별 지역별 인프라에 따른 차이의 균등화 등 일관성이 적용되는 시행을 위한 검토가 체결단계에서 요구될 것으로 보임

159) 1단계 기준비교(평가절차), 2단계 합동방문심사(운영계획 및 시험), 3단계 MRA체결, 4단계 운영절차 개발

160) 나희경, 『AEO 상호인정협정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12

〈표 IV-18〉 한국과 중국의 AEO 비교

구분	한국 AEO제도	중국 기업분류관리방법
적용 범위	수출입업체, 관세사, 물류업체 등 8개업체	수출입업체, 관세사(통관대행기업), 가공기업 3개업체
목적	기업의 의무와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명확하게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기업이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법규준수도를 높이기 위함	기업의 자율적인 법규준수를 촉진하고, 세관관리의 효과적인 시행과 수출입화물의 안전과 편리를 목적으로 함
평가 등급	3등급(AAA, AA, A)	5등급(AA, A, B, C, D)
심사 내용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과 안정성 등	법규준수현황, 경영관리상황, 통관실적, 하위 등급 1년 경과여부 등
유효 기간	3년후 갱신 심사	최초 신청업체는 C,D등급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면 B등급으로 분류하고, 매 1년 경과시 상위등급 신청가능 (법규위반 적발시 바로 하위 등급으로 분류)

자료: 주상하이총영사관, 2011. 9. 26일자 보고
 (http://www.mofat.go.kr/webmodule/htsboard/hbd/hbdread.jsp?typeID=6&boardid=182&seqno=335825&c=&t=&pagenum=1&tableName=TYPE_DATABOARD&pc=&dc=&wc=&lu=&vu=&iu=&du)

V. 결 론

- 우리나라의 중국수출기업 및 중국소재 우리나라 기업에 비관세장벽으로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부분은 물품에 대한 각종 제한으로 인한 절차의 복잡성 및 통관절차의 예측가능성 부족임
 - 국가 안전이나 공익보호, 자원 보존, 특정산업 육성 등의 목적으로 대외무역법상 수출입을 제한하는 쿼터관리, 허가증관리 및 국영무역 및 지정경영대상 화물관리 등의 복잡한 요건확인이 요구됨
 - 지리적 광대함 및 관세행정의 통일성 미비로 인하여 관세당국과 민간 사이의 관세정보 공유가 어려움

- 통관절차 및 무역 원활화와 관련된 국제표준으로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수출입물품 위험관리를 위한 개정교토협약 및 SAFE Framework는 한국과 중국 양국 모두 도입하여 이행하고 있는 규범임
 - 중국은 개정교토협약에 가입하면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일반부속서 이외에 특별부속서를 매우 제한적으로 수용하였음
 - 한국이 가입한 장은 14개인 반면, 중국은 보세구역 및 일시수입의 2개의 장임
 - SAFE Framework는 중국 세관이 위험관리를 관세행정의 최대 변혁 기조로 삼으면서 매우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이행하고 있음
 - WTO 무역 원활화 협상에서도 중국은 세관의 위험관리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였음

- 중국의 FTA 통관환경은 수출물품의 특혜원산지증명서를 관세당국이 발급하고 수입신고 또한 세관의 심사를 거쳐 사실상 부과지 방식으로 관세가 확정되므로 관세당국의 통관절차에 대한 개입 영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상태임

- FTA체결의 확산으로 인한 관세철폐는 관세행정이 무역의 최혜국대우원칙에 기초하기보다는 세관에 의해 관리되는 복잡한 특혜원산지제도에 따르게 됨을 의미함
 - 특혜원산지의 적용은 생산지로부터 전공급망에 세관의 개입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한·중 FTA체결로 인한 수출입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중국 세관행정의 국제표준 이행을 통한 한국과 중국 관세당국의 행정협력이 원활할 수 있는 강제적인 수단이 필요함
 - WTO 규범을 준수하는 기본 원칙을 지향하고 무역원활화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강행적 행정협력을 도모하여야 함

- FTA 통관규정에서 관세당국의 행정협력이 요구되는 부분은 원산지 등에 관한 사전심사, 원산지검증 및 불복청구 등 협력의 방법, 통지기한, 공표방법, 대상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임
 - 양 당사국 관세행정조치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사전심사 등 체결당사국의 단일화된 조치의 실효성을 강구해야 함
 - 또한 우리나라 수출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AEO, FTA 인증수출자, 사전심사제도 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규정을 두어 제도의 순기능을 강화해야 함

- 관세당국 간 협력 및 관세당국과 민간부문 협력의 공통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FTA규정으로 명문화하여야 하되, 국제적 논의 및 권고의견을 검토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함

- 둘째, AEO의 MRA 체결로 인한 관세당국과 민간 부문의 협력으로 비관세장벽을 제거할 수 있음

- 단, 한국과 중국은 MRA 인정대상자를 달리 규정하고 있어 중국의 AEO공인업체에 대하여 우리나라 수입통관 혜택을 부여할 경우 따를 위험을 고려하는 등 양국 제도

의 차이를 조정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MRA 체결 과정에서 지역별로 상이한 세관행정 및 위험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합동심사 및 공인기준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중국의 AEO공인업체의 수입물품에 검사생략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만큼 증가가 예상되는 지식재산권 등 수출입관련 비관세부문 관련 조치들이 사전에 검토되어야 함

〈표 V-1〉 중국의 기체결 FTA 통관규정 비교표

항목	체결 상대국	체결 상대국					
		한·칠레	중·칠레	한·싱가포르	중·싱가포르	한·ASEAN	중·ASEAN
원산지 증명	원산지증명서 발급	5.2	30	5.2	27	4~8	4~7, 9~11
	원산지증명서의 면제	5.5	32	5.6	30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37			2,3	1,2,3
	특혜관세 신청	5.3	34	5.3	28	9~12	12~15,17
	특혜관세 거부			5.9			
	특혜관세 사후신청	5.3	31		28	18,19	18,19
	원산지확인서류	5.4	33				
원산지 검증	기록보관요건	5.3,5.4	36	5.5	31	13	17
	원산지 검증	5.8	38	5.7	29	14~16	16
	전자증명/검증시스템		30				
	별칙	5.11	39	5.12	33	22	21
	비밀유지	5.7	40	5.16	35		
행정협력 (원산지)	권한 있는 당국						
	원산지위원회			5.15		23	
기타	수정						
	제3국 송장	5.6	35		36		
	운송/보관중 물품		43				
	통일규정	5.12					
	형식적 오류						
	인증수출자						
	분할수입						
국제표준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						
	자유지역						
통관 원활화	전자서류자동화시스템						
	공표 및 문의처		42				
	위험관리						
	특송화물						
납세자 권리	상품의 반출						
	원산지 사전심사	5.9	41	5.8	32		
행정협력 (원활화)	재심 및 불복청구	5.10		5.11	34		22
	세관 협력	5.13	37				
	검토	5.14					
기타	협약						
	무역 원활화위원회						

〈표 V-1〉의 계속

항목	체결 상대국	한·페루	중·페루	한·EU	중·뉴질랜드	한·터키	중·코스타리카
원산지 증명	원산지증명서 발급	4.1, 4.3	38	15,16,18	36	16,17	37
	원산지증명서의 면제	4.2	39	21	37	20	43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rule2,3	40		40		38
	특혜관세 신청	4.4	41	19	34	18	45
	특혜관세 거부	4.11	41		42	26	
	특혜관세 사후신청	4.5	42		35	17	
	원산지확인서류	4.6	43	22		21	39
	기록보관요건	4.6	44	23	39	22	40
원산지 검증	원산지 검증	4.8	45	27	41	25	44
	전자증명/검증시스템	4.13	46		41		
	별칙	4.9	47	29		29	55
	비밀유지	4.10	48	6.8		3.10	
	권한 있는 당국	5.2	53	26	46		
행정협력 (원산지)	원산지위원회		49			31	46
	수정	4.12	50	28			
기타	제3국 송장					27	
	운송/보관중 물품						
	통일규정	4.14					
	형식적 오류	4.7		24	38	23	
	인증수출자	Rule 5		17		3.5	
	분할수입			20		19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			25			
국제 표준	자유지역			30		30	
	원활화	5.3	54	6.3	47		
	관세평가	5.4	55	6.12	48	3.13	
	품목분류	5.5	56		49		
통관 원활화	전자서류자동화시스템	5.8	61		53	3.4	50
	공표 및 문의처	5.10	63	6.5	55		48
	위험관리	5.9	62	6.4	54	3.6	52
	특송화물	5.11	64		56		53
	상품의 반출	5.12	65	6.2	57	3.2	49
납세자 권리	원산지 사전심사	5.7	60	6.6	52	3.8	56
	재심 및 불복청구	5.6	59	6.7	51	3.9	54
행정협력 (원활화)	세관 협력	5.13	58	6.13,6.14	50	3.14,3.15	51
	검토	5.23	66		58		
	협의	5.24	67	6.15	59	3.15	
	무역 원활화위원회	5.25	57	6.16		3.17	
기타	수수료 및 부과금			6.9			
	선적전검사			6.10		3.11	
	사후심사			6.11		3.12	

참고문헌

- 관세청, 「2011년 수출기업 해외통관업무 협의회 발표자료」, 2011
- 관세청, 「2012년 관세관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자료」, 2012
- 관세청, 「AEO공인업체간담회 발표자료」, 2011. 6
- 관세청·중국관세무역연구회, 『중국관세무역신보』, 1호-20호, 2011
- 외교통상부, 『외국의 통상환경(중국)』, 2010
- 외교통상부, 『2011 외국의 통상환경: 아시아대양주』, 2012
- 중국해관, 「감면세 방안 발표 자료」, 2009. 1.
- 한국조세연구원,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연구: 중국』, 2011
- 한국조세연구원, 『주요국의통관제도및개정교도협약유보사항검증』, 2009
- KOTRA, 『최신 중국 통관제도 해설』, 2010
- KOTRA, 『국가정보(중국)』, 2010
- KOTRA, 『주요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사례 검증(미국, 인도, 중국)』, 2011
-
- 김석민, 「WTO무역 원활화 논의에 따른 중국의 통관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 2007
- 김원석, 『중국의 관세감면제도에 관한 연구』, 2009
- 나희경, 「AEO 상호인정협정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12
- 박경매, 「중국의 수출입관세정책에 관한 연구」, 송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0
- 삼성전자, 『중국 관세제도』, 2009
- 서백현, 「자유무역지대내 무역 원활화를 위한 전자무역의 역할과 과제」, 『관세학회지』 제6권 제3호, 2006
- 송기찬, 「중국의 FTA 추진전략과 우리의 대응방안」, 2010. 6
- 송선욱, 「국제공급망 안전을 위한 세관간 협력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2권 제5

호, 2007. 11

양천호 · 김영춘, 『중국통관실무』,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5. 12

이일재, 『AEO제도 확립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2010. 6

이준건, 「중국 전자통관시스템 활용과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제11권 제3호, 2010

이호열, 『무역 원활화 협상』, 2009

전군중, 「한·중 FTA 협상의 주요 이슈와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비관세장벽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0

정환우, 「중국의 비관세 수입장벽 현황과 한·중 협력방안」,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10

정환우, 「한·중 FTA 비관세장벽 분야 쟁점과 시사점」, 국제무역연구원 지역연구실, 2012

종 염, 「WTO 가입 이후 중국 관세정책의 변화」, 군산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0

중국관세무역연구회, 「중국 FTA 추진현황 및 시사점」, 2010. 6. 11

최병일 외, 「한·중 FTA 협상, 정교하고 치밀하게 접근해야」, KERI 정책제언, 2012

WTO, 「Trade Policy Review Report by China(WT/TPR/G/230)」, 2010. 4. 26

WTO, 「Trade Policy Review Report by China」, 26 April 2010(WT/TPR/G/230)

The Joint Study Report for Korea-China FTA, 2010

The Joint Study Report for an FTA among China, Japan and Korea, 2011. 12. 16

Zhang Shujie and Zhao Shilu, 『The implication of customs modernization on export competitiveness in China』, 2008

WTO, www.wto.org

대한민국 관세청, www.customs.go.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베이징, 상하이|KBC), www.kotra.or.kr

외교통상부 도하개발아젠다, www.wtodda.net

중국 비즈니스 포탈, www.kita.net/chinaportal/lawinfo

중화인민공화국중앙인민정부(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 The Central People's

-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ww.gov.cn
- 중국상무부(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Ministry of Commer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ww.mofcom.gov.cn
- 중국통계국(中华人民共和国国家统计局/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www.stats.gov.cn
- 중국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The People's Bank of China), www.pbc.gov.cn
-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 /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ww.customs.gov.cn
- 중국재정부(中华人民共和国财政部/Ministry of Finance People's Republic of China), www.mof.gov.cn
- 중국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中国自有贸易服务网/China FTA Network), fta.mofcom.gov.cn
- 해외진출 정보시스템, www.ois.go.kr
- Invest In China(中国投资指南), www.fdi.gov.cn

관세연구 12-02
**무역 원활화를 위한 중국의 FTA
통관규정 연구**

2012년 8월 23일 인쇄

2012년 8월 31일 발행

저 자 정재호 · 김미영 · 류태현

발행인 조원동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TEL: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인쇄 고려문화사

© 한국조세연구원 2012

ISBN 978-89-8191-589-6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